마음을 따뜻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 제3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제5차 본회의 회의자료

서 산 시 의 회

목 차

의사일정	안 건 명	쪽번호
1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	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3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4	서산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37
5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6	서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4
7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6
8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8
9	서산시 효 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3
10	서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6
11	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9
12	서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9
13	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5
14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202

의사일정	안 건 명	쪽번호
15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220
16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31
17	장애인 일자리센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36
18	서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7
19	서산시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62
20	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73
21	서산생활문화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286
22	문화교류플랫폼 공공위탁 동의안	296
23	서산문화재단 출연동의안	305
24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12
25	서산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325
26	한서대 글로컬대학 사업 투자협약 체결 동의안	345
27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58
28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단독주택 단지 집단개발 사유도로 기부채납	366
29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서산시 희망공원 주차장 및 쉼터 조성을 위한 연접 토지매입 - 농업기계 안전 교육장 조성 - 수소충전소 구축(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	386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2026. 10. 29.(목)
제 5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10. 20.
의 회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6. 10. 2.

나. 발 의 자 : **김애란 의원 외 13명**

다. 회부일자 : 2026. 10. 13.

라. 심사일자 : 2026. 10. 20.

2. 제안설명 요지

○ 상위 법령·규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및 자기성찰휴가(장기재직휴가) 사용 분할 수 증가 등 특별휴가 조항 정비를 통한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 도모

3. 주요 내용

가.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 사용범위 자녀1인당 기존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안 제13조제2항)

나. 자기성찰 특별휴가(장기재직휴가) 사용 분할 수 증가(안 제13조제5항)

- 5년 이상 10년 미만 : 3회까지 분할 가능
- 10년 이상 : 8회까지 분할 가능

다.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 동행을 위한 10일 이내 임신검진동행휴가 부여 신설(안 제13조제11항)

라. 특별휴가 중 재해구호 휴가 자원봉사 활동 공무원 5일 이내,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 10일 이내 재해구호 휴가 부여 신설(안 제13조제12항)

마. 특별휴가 규정 중 경조사 휴가(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개정사항 반영 (안 제13조제1항, 별표4)

- 휴가일수 : (현행) 10일 → (개정) 2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4. 검토의견 요지

○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 법령·규정 개정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 자기성찰휴가(장기재직휴가) 사용 분할 수 증가 등 특별휴가 조항 정비를 통한 직원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 도모를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제 81 호
의결연월일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애란 의원 외 13명
발의연월일	2026. 10. 2.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애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 81 호

발의연월일 : 2026. 10. 2.
발 의 자 : 김애란, 송치윤, 이경화, 이 만, 조동식, 이국찬, 안원기, 김혜림, 가충순, 김기욱, 기양순, 장갑순, 강석환, 이정수 의원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규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 자기성찰휴가(장기재직휴가) 사용 분할 수 증가 등 특별휴가 조항 정비를 통한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 도모

2. 주요내용

가.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 사용 범위 자녀 1인당 기존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안 제13조제2항)

나. 자기성찰 특별휴가(장기재직휴가) 사용 분할 수 증가(안 제13조제5항)

- 5년 이상 10년 미만 : 3회까지 분할 가능
- 10년 이상 : 8회까지 분할 가능

다.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 동행을 위한 10일 이내 임신검진동행휴가 부여 신설(안 제13조제11항)

라. 특별휴가 중 재해구호 휴가 자원봉사 활동 공무원 5일 이내,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 10일 이내 재해구호 휴가 부여 신설(안 제13조제12항)

마. 특별휴가 규정 중 경조사휴가(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개정사항 반영(안 제13조제1항, 별표4)

- 휴가일수 : (현행) 10일 → (개정)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9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산시의회 조례 제 호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4개월”을 “36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2회”를 “3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4회”를 각각 “8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최대 10일의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⑫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재해로 인해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은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 인	5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갑	본인 및 배우자	1
출산	배우자(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20(25)
입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 외증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비고: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생략)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3조(특별휴가) ① (생 략)	제13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② ---------- 36개월----------.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의장은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각 호 간의 사용은 1년 이상이 경과하여야 하며, 그 재직기간을 지나 소급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⑤ ----------.

1. 5년 이상 10년 미만 : 10일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2.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일 (4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3. 20년 이상 30년 미만 : 25일 (4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4. 30년 이상 : 30일 (4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⑥ ~ ⑩ (생 략) <신 설> <신 설>	1. ----------3회---------- 2. ----------8회---------- 3. ----------8회---------- 4. ----------8회---------- ⑥ ~ ⑩ (현행과 같음) ⑪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최대 10일의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⑫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재해로 인해 장기간 피해수습이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은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⑮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개정안에 수반되는 비용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3. 결론

○ 「지방자치법」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및 「서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정수반요인이 없어 미첨부

4. 작성자 : 의회사무국 운영위원회전문위원 신 광 수

의사일정 제2항

마음을 따뜻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제3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2026. 10. 29.(목)
제 5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 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10. 21.
행정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6. 10. 2.
나. 발 의 자 : **이국찬 의원 외 13명**
다. 회부일자 : 2026. 10. 13.
라. 심사일자 : 2026. 10. 21.

2. 제안설명 요지

○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때 관할 경찰서장과 설치 장소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CCTV가 범죄 취약지역에 실질적으로 설치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과 범죄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CCTV 설치 시 경찰서장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검토의견 요지

가. 본 개정안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장소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나. 지역의 범죄 취약지역 및 치안수요 등을 CCTV설치과정에서 부터 반영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사항임

다. 현행 조례에서 CCTV 설치시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고 CCTV운영위원회에 관할 경찰서 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제도를 폐지나 변경이 아닌 CCTV설치 장소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경찰의 치안과 관련된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라. 현재 타 시·군 관련 조례에서도 범죄예방 목적을 위해 cctv설치시 '경찰 협의' 등과 같이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참고자료 1】

마.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범죄예방 목적의 CCTV설치장소에 대해 선정과정에서부터 관할 경찰서의 현장 치안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제 82 호
의결연월일	

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국찬 의원 외 13명
발의연월일	2026. 10. 2.

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국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 82 호

발의연월일 : 2026. 10. 2.

발 의 자 : 이국찬, 조동식, 이 만, 이경화, 송치윤, 김애란, 강석환, 기양순, 장갑순, 김기욱, 이정수, 가충순, 김혜림, 안원기 의원

1. 개정이유

○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때 관할 경찰서장과 설치 장소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CCTV가 범죄 취약지역에 실질적으로 설치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과 범죄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개정 사항)

○ CCTV 설치 시 경찰서장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4 및 제74조의5
-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나. 예산조치

서산시 조례 제 호

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설치장소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견수렴) (생 략) <신 설>	제7조(의견수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시장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설치장소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할 수 있다.

《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가 설치 · 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 · 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 ·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 · 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 · 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5.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6. 제27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조치
7.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7의2.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7의3.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운영

8.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4조의5(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관제센터는 통합관제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기준) 법 제74조의5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5조의4제1

항에 따라 같은 항 제7호의3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도입할 때에는 보안 성능·품질 인증 등을 확인할 것

2.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할 것

가. 설치 장소 선정의 적정성(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만 해당한다)

나. 촬영 범위, 해상도, 제품의 특성 등의 기술적 사항

다. 설치·운영하려는 관제시스템이 일반 관제시스템인지 인공지능 기반 관제시스템인지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선정의 적정성

3.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할 때에는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한 사용 연한을 지킬 것. 다만, 사용 연한이 지난 경우에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3. 미첨부 사유
 - 해당 개정을 통해 별도의 예산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 자치행정국 스마트정보과장 김 명 기

의사일정 제3항



제3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2026. 10. 29.(목)
제 5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10. 21.
행정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6. 10. 2.
나. 발 의 자 : **이정수 의원 외 13명**
다. 회부일자 : 2026. 10. 13.
라. 심사일자 : 2026. 10. 21.

2. 제안설명 요지

○ 고물가 및 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배달플랫폼 가맹 사업자에 대한 배달수수료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공공배달플랫폼”, “공공배달플랫폼 가맹 사업자”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공공배달플랫폼 가맹 사업자 배달비 지원사업”, “공공배달플랫폼 가맹 사업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한 장려금 지원사업” 조항 신설(안 제6조)

4. 검토의견 요지

가. 본 개정안은 고물가와 민간 배달 플랫폼의 높은 중개수수료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에게 공공배달플랫폼 이용 활성화 지원과 배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안의 내용과 부합함

다. 최근 민간 배달 플랫폼의 이용 증가로 소상공인의 플랫폼 이용 수수료와 배달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공공배달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배달비 지원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됨

라. 다만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지원방식등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제 83 호
의결연월일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정수 의원 외 13명
발의연월일	2026. 10. 2.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 83 호

발의연월일 : 2026. 10. 2.

발 의 자 : 이정수, 가충순, 안원기, 김혜림, 조동식, 이 만, 이경화, 송치윤, 김애란, 강석환, 기양순, 장갑순, 김기욱, 이국찬 의원

1. 개정이유

○ 고물가 및 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배달플랫폼 가맹 사업자에 대한 배달수수료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배달플랫폼”, “공공배달플랫폼 가맹 사업자”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공공배달플랫폼 가맹 사업자 배달비 지원사업”, “공공배달플랫폼 가맹 사업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한 장려금 지원사업” 조항 신설(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소상공인기본법」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나. 예산조치

서산시 조례 제 호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공배달플랫폼이란 서산시가 공공성을 바탕으로 구축하거나 협력하는 배달 주문 중개시스템을 말한다.
7. 공공배달플랫폼 가맹 사업자란 공공배달플랫폼을 매개로 식품과 상품 등을 판매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으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플랫폼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말한다.

제6조제1항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공공배달플랫폼 가맹 사업자 배달비 지원사업
10. 공공배달플랫폼 가맹 사업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한 장려금 지원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공공배달플랫폼이란 서산시가 공공성을 바탕으로 구축하거나 협력하는 배달 주문 중개 시스템을 말한다.
<신 설>	7. 공공배달플랫폼 가맹 사업자란 공공배달플랫폼을 매개로 식품과 상품 등을 판매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으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플랫폼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말한다.
제6조(경영안정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경영안정 지원)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공공배달플랫폼 가맹 사업자 배달비 지원사업
<신 설>	10. 공공배달플랫폼 가맹 사업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한 장려금 지원사업
9. (생 략)	11.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소상공인기본법」제3조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배달비 및 플랫폼 활성화 인센티브 일부 지원 비용

○ 관련조문: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제2항

>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서산시 플랫폼 가맹 사업자 대상으로 배달수수료 및 인센티브 지원에 필요한 비용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계	2026년도	2027년도	2028년도	2029년도	2030년도
843,200	0	135,800	235,800	235,800	235,800

⇨ 기존 또는 신규가맹 플랫폼 가맹 사업자 배달비 지원(2027년 500개소, 2028년부터 1000개소)과 소비자 쿠폰 지원(2027년~2030년 선착순 쿠폰 월 200명)에 대한 반영

※ (배달비) 2027년: 200천원 × 500개소 = 100,000천원

2028년~2030년: 200천원 × 1000개소 = 200,000천원

※ (소비자 쿠폰) 50천원 × 500개소 = 25,000천원

※ (앱전용 쿠폰) 4,500원 × 200명 × 12월 = 10,800천원

다. 재원 조달 방안

- 배달비 : 도비 30%, 시비 70%
- 소비자 쿠폰 및 앱전용 쿠폰 : 시비 100%

3. 연도별 비용추계표: (붙임) 참고

4. 작성자: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붙임〕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계
세 출		0	135,800	235,800	235,800	235,800	843,200
발생 비용*		0	135,800	235,800	235,800	235,800	843,200
소상공인 (개소)		0	500	1,000	1,000	1,000	3,500
재원조달		0	135,800	235,800	235,800	235,800	843,200
자체수입	소계 (100%)	0	135,800	235,800	235,800	235,800	843,200
	도비	0	30,000	60,000	60,000	60,000	210,000
	시비	0	105,800	175,800	175,800	175,800	633,200

* 발생 비용 = (기존 또는 신규 가맹 플랫폼 가맹 사업자 수) × 200천원
+ (기존 또는 신규 가맹 플랫폼 가맹 사업자 수) × 50천원
+ (배달플랫폼 이용자 수) × 4,500원 × 12월

의사일정 제4항



제3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2026. 10. 29.(목)
제 5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서산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서산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10. 21.
행정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6. 10. 2.
나. 발 의 자 : **이정수 의원 외 13명**
다. 회부일자 : 2026. 10. 13.
라. 심사일자 : 2026. 10. 21.

2. 제안설명 요지

○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의 지원대상인 건강보험료 하위 20퍼센트 이하에서 서산시는 하위 50퍼센트 이하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간병이 필요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제4조)
나. 사업시행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
다. 간병비 지원 및 간병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8조)
라. 간병인의 자격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4. 검토의견 요지

가. 본 조례안은 보호자가 없는 입원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여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임

나. 충청남도 조례가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본 조례안은 건강보험료 하위 21% ~50%까지 확대하여 서산시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현재 충청남도 및 도내 타 시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음 (당진, 공주는 건보료 하위 21% ~ 40%까지 지원)【참고자료 1, 2】

라. 본 조례안은 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지원에 관한 자치사무로써 조례에 직접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제 84 호
의결연월일	

서산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이정수 의원 외 13명
발의연월일	2026. 10. 2.

서산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이정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 84 호

발의연월일 : 2026. 10. 2.

발 의 자 : 이정수, 가충순, 김혜림, 안원기, 조동식, 이 만, 이경화, 송치윤, 김애란, 강석환, 기양순, 장갑순, 김기욱, 이국찬 의원

1. 제정이유

○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의 지원대상인 건강보험료 하위 20퍼센트 이하에서 서산시는 하위 50퍼센트 이하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간병이 필요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제4조)

나. 사업시행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

다. 간병비 지원 및 간병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8조)

라. 간병인의 자격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역보건법」 제3조, 제11조
- 「지방자치법」 제13조
-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실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서산시 조례 제 호

서산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자와 그 가족의 간병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환자의 안전 및 간병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입원환자가 보호자 없이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계획 수립·시행)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절차 및 방향
2. 사업 세부추진계획
3. 사업시행 의료기관의 지정
4. 사업 간병인 근무형태, 인원 및 인건비 지원 기준
5.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행려환자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4.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하위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5.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6. 그 밖에 가정 형편 등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진료의사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사업 지원을 받으려는 지원 대상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간병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를 제5조에 따른 지정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정 의료기관은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대상자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시행 의료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서산시 내 의료기관 중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을 사업시행 의료기관(이하 “지정 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의 지정 의료기관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을 제외한다.

③ 지정의료기관은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된 간병서비스의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사업시행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시장은 지정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간병인이 복무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지정 의료기관이 폐업·휴업 등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고의로 사업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간병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예산 지원) ① 시장은 지정 의료기관에 입원한 지원대상자의 간병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간병서비스의 제공 등) ① 지정 의료기관은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1. 복약 및 식사 보조
2. 위생·청결과 안전관리
3. 운동 및 활동 보조
4. 그 밖에 환자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② 간병서비스 기간은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및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의 해당 연도 사업지침 등 규정에 따른 지원 기간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③ 도비 보조사업과 시비 사업에 따른 간병비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간병서비스의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⑤ 지정 의료기관과 간병업체는 간병인의 관리에 책임을 지며, 간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⑥ 지정 의료기관은 불성실한 간병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병인의 자격) 간병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2. 요양보호사
3. 간병교육을 수료한 사람(수료증 소지자로 한정함)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정 의료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지정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시장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

간병서비스 신청서

○ 환 자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 기존 지원일수(0000년) :　일

위와 같이 귀 병원의 『보호자 없는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지원받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 화 번 호 :
환자와의 관계 :　환자의

붙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 ○ 의료기관장(병원장) 귀하

구비 서류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인자 :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일 기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신청일 전월 기준** - 행려환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등 : 행려환자 등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공문 등) 구비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에 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 동의서

(앞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동의자 성명 :	☐ 생년월일 :

○○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뒷면 참조)에 의거하여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상담, 간병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지정병원에 동 개인정보가 제공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제공 항목

- ○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연령
- ○ 관련사항 : 간병서비스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목적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제공합니다.

- ○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관련 상담 및 간병 서비스 제공
- ○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대상자 확인 및 시군 간병비 청구
- ○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만족도 및 통계자료 작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 상기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기준으로 함
- ○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소멸 시까지 보유

☐ 개인정보 제공기관 및 제공방법

- ○ 충남도청,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 보건소, 사업시행 의료기관
- ○ 상기 기관으로 업무 담당자가 관련 자료 송부

※ 상기 내용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 시 각종 서비스 제공이 제한됩니다.

상기 명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사유 기재

개인정보 보호법

(뒷면)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 지역보건법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 · 연구, 정보의 수집 · 관리 · 활용 · 보호, 인력의 양성 · 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 ·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 · 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 · 관리 · 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 · 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 · 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 · 구강건강 · 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 · 증진

라. **여성 · 노인 ·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 · 증진**

마. ~ 아. (생략)

❒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 차. (생략)

3.~7.(생략)

❒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실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자와 그 가족의 간병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입원환자가 보호자 없이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계획 수립·시행)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마다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사업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절차 및 방향
2. 세부계획
3. 제5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정
4. 간병인 근무형태, 인원 및 인건비 지원 기준
5.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5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 그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사업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행려환자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4.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하위 20퍼센트 이하인 사람
5.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개정 2023. 8. 10.>

6. 그 밖에 도지사가 가정 형편 등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진료의사의 동의를 받아 인정하는 사람

② 사업지원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제5조에 따른 지정의료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정 의료기관에서는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5조(사업시행 의료기관 지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도내 의료기관 중 관할 시장·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요양병원은 간병서비스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의사 및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등을 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③ 지정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제공된 간병서비스의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지정의료기관 지정취소) 도지사는 지정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간병인의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때
2.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등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때
3. 고의로 사업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수행한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간병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제7조(보조금 등 지원) 도지사는 지정의료기관에 입원한 지원대상자 간병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간병서비스의 제공 등) ① 지정의료기관은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1. 복약 및 식사 보조
2. 위생·청결과 안전관리
3. 운동 및 활동 보조
4. 그 밖에 환자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② 간병서비스 기간은 30일까지로 하고, 회복이 지연되거나 재입원이 필요할 경우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붙여 한 차례만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간병서비스의 비용은 해당 환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지정의료기관은 지원대상자를 담당하는 간병인의 관리에 책임을 지며, 환자에게 간병서비스 제공에 따른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⑤ 지정의료기관은 불성실한 간병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제5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시장·군수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9조(간병인의 자격) 간병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간호사, 간호조무사
2. 요양보호사
3. 간병교육을 수료한 사람(해당 수료증 소지자로 한정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정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지정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제11조(협의·협조사항) 도지사는 사업수행에 관하여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예산조치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제4조 제1항(지원대상)

1.~3. 생략

4.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하위 50% 이하인 사람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하위 21%~50% 이하 대상 지원 확대(신설)**

※ 충청남도 도비지원사업 중복자(건강보험료 납부금액 하위 20% 이하자) 제외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대상자 수

- 2025년 건강보험료 하위 20% 간병비 지원 실적: 35명/422일

※ 2023년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인구수: 30,328명/
하위 50% 이하 인구수: 63,264명(21~50% 인구수 32,936명)

- 2025년 하위 20% 이용자 수 대비 하위(21%~50%)예상 이용자수 산출: 약45명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45명	50명	55명	60명	60명

○ 간병비 지원 일수: 1인당 연 30일범위(소견서 첨부시 최대 45일까지)

○ 간병비 지원 단가: 6인실 기준 1인당 (74,000원/1일)

※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규정에 따른 간병비 단가 적용

나. 추계 결과

○ 2027년: 45명(지원자)*30일(지원일수)*74,000원(지원단가) = 약100,000,000원

다. 재원조달방안: 시비

-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도비보조사업은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확보하고, **(신설)지원 대상자 확대는 자체 재원으로 예산 편성**

3.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서산시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계
세 출		263,300	274,300	286,300	297,300	297,300	1,418,500
도비 보조금(30%)		48,990	48,990	48,990	48,990	48,990	244,950
자체 재원	보조금 매칭 시비 (70%)	114,310	114,310	114,310	114,310	114,310	571,550
	시비추가 (100%)	**100,000**	**111,000**	**123,000**	**134,000**	**134,000**	**602,000**
재원 조달		263,300	274,300	286,300	297,300	297,300	1,418,500
의존 재원	보조금	48,990	48,990	48,990	48,990	48,990	244,950
자체 수입	시 비	214,310	225,310	237,310	248,310	248,310	1,173,550

의사일정 제5항

마음을 따뜻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제3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2026. 10. 29.(목)
제 5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10. 21.
행정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10. 8.

나. 제 출 자 : 서산시장(자치행정과)

다. 회부일자 : 2026. 10. 13.

라. 심사일자 : 2026. 10. 21.

2. 제안설명 요지

○ 맞춤법에 맞는 용어 교정을 통한 조례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행정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이·통장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이·통장 처우 개선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용어 수정 : 리·통장 → 이·통장

나. 건강검진비 지원 조항 신설

❍ 대　　상 : 이통장 본인(380명) / 격년(ex. 짝수연도 → 짝수연도 출생자 지원)

❍ 방　　식 : 건강검진 실비지원(30만원 한도)

❍ 소요예산 : 매년 6천만원 * 300,000원 × 200명(예비분 포함) = 60,000천원

- 1마을 1인 원칙
- 개인 사정 등으로 검진을 미실시한 경우, 익년도 추가지원 불가
- 지원 금액 1인 최대 300천원 초과시, 추가 금액 본인 자부담
- 건강검진 외 개인 치료 목적의 비용은 지원 불가

4. 검토의견 요지

가. 본 개정안은 리·통장에서 이·통장으로 맞춤법에 맞는 표준어 사용과,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기관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통장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리·통장을 이·통장으로 용어를 수정하려는 사항임

다.「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의해 이·통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통장 개인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목적과 지원근거가 조례에 명확하게 마련되어야 함

라. 마을의 대표자로 지역의 봉사자로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이·통장은 주민 의견 수렴, 각종 행정 시책 홍보,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이들의 건강관리와 사기진작을 위해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마. 충남 도내 타 시·군 중 보령, 논산, 계룡, 당진, 청양, 태안 등 6개 시·군에서도 이미 시행중에 있음【참고자료 1】

바.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수정안 붙임

서산시 리 · 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복무) 제4항 “이·통 담당공무원이”을 “리·통 담당공무원이”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복무) ① ~ ③ (생 략) ④ 리·통장이 바뀌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리·통 담당공무원 참석한 가운데 후임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동장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5조(복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통장---------- ---------- ---------- ---------- 이·통 담당공무원이 ---------- ---------- --------. --------- ---------- 읍·면·동장, 인계자, ---------- ----------.	제3조(복무)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이·통장---------- ---------- ---------- ---------- 리·통 담당공무원이 ---------- ---------- --------. --------- ---------- 읍·면·동장, 인계자, ---------- ----------.

의 안 번 호	제58호
의결연월일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6. 10. 6.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58호

제출연월일 : 2026. 10. 6.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개정이유

○ 맞춤법에 맞는 용어 교정을 통한 조례의 신뢰성 확보

○ 행정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이·통장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이·통장 처우 개선 및 사기진작을 도모

2. 주요내용

○ 용어 수정 : 리·통장 → 이·통장

○ 건강검진비 지원 조항 신설

❍ 대 상 : 이통장 본인(380명) / 격년(ex. 짝수연도 → 짝수연도 출생자 지원)

❍ 방 식 : 건강검진 실비지원(30만원 한도)

대상자(이·통장)		읍·면·동		자치행정과
① 건강검진 실시 ② 검진비용 결제 ③ 검진비용 청구	➠	① 청구서류 접수·확인 ② 자치행정과 공문제출	➠	① 청구서류 검토 ② 건강검진비 지급

❍ 소요예산 : 매년 6천만원 * 300,000원 × 200명(예비분 포함) = 60,000천원

- 1마을 1인 원칙
- 개인 사정 등으로 검진을 미실시한 경우, 익년도 추가지원 불가
- 지원 금액 1인 최대 300천원 초과시, 추가 금액 본인 자부담
- 건강검진 외 개인 치료 목적의 비용은 지원 불가

3. 단계별 추진사항

가. 입법계획 결재 : 2026. 8월 중

나. 성별영향평가 : 2026. 8월 중

다. 입법예고 : 2026. 8월 중

라. 법제심사 : 2026. 9월 중

마. 조례 · 규칙심의회 : 2026. 9월 중

바. 시의회 의결 : 2026. 10월 중

사. 공포 및 시행 : 2026. 11월 중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나.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 법제심사 결과

서산시 조례 제 호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서산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리·통장”을 “이·통장”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리·통장의 임무)”를 “(이·통장의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중 “리·통장”을 각각 “이·통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리·통장”을 각각 “이·통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전단 중 “리·통 담당공무원”을 “이·통 담당공무원이”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읍·면·동장 인계자와”를 “읍·면·동장, 인계자,”로 한다.

제4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리·통장”을 각각 “이·통장”으로 한다.

제5조 중 “리·통장”을 “이·통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 중 “리·통장”을 각각 “이·통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리·통장”을 “이·통장”으로 한다.

7. 이·통장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서산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통장의 임무 및 복무와 이에 따른 실비변상 및 사기진작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이·통장----------.
제2조(리·통장의 임무) ① 리·통장은 리·통 구역안에서의 읍·면·동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 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제2조(이·통장의 임무) ① 이·통장----------.
② 리·통장은 리·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② 이·통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리·통장 역할 수행	5. ---------- 이·통장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3조(복무) ① 리·통장은 법규를 지키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제3조(복무) ① 이·통장----------.
② 삭 제	
③ 리·통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외출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③ 이·통장----------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 ---------- ---------- --.
④ 리·통장이 바뀌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리·통 담당공무원 참석한 가운데 후임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동장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④ 이·통장---------- ---------- ---------- 이·통 담당공무원이 ---------- ----------. ------ ---------- 읍·면·동장, 인계자, ---------- ------.
제4조(실비 변상) ① 리·통장에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으로 지급하며,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계좌이체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실비 변상) ① 이·통장--- ---------- ---------- ---------- ---------- ----------.
② 리·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이·통장---------- ----------.
③ 리·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월정수당과 지급일 및 지급방법을 같게 한다.	③ 이·통장---------- ---------- ---------- ---------- ----------.
제5조(편의 제공) 리·통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	제5조(편의 제공) 이·통장----- ---------- ----------

·면·동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 ---------- ---.
제6조(지원) ① 시장은 리·통장의 복무활동 지원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① ----- 이·통장-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모범 리·통장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연수 실시	4. --- 이·통장----------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리·통장 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정시책 지역 홍보활동 지원	6. 이·통장 ---------- ----------
<신 설>	7. 이·통장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
② 시장은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리·통장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② ---------- 이·통장---------- ----------.

《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이통장 건강검진비 지원

○ 관련조문 : 본 조례 제6조

> **제6조(지원)** ① 시장은 리·통장의 복무활동 지원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이통장 건강검진비 지원에 필요한 비용
- 격년제 운영(ex. 짝수년도 출생 → 짝수년도 검진)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계	2027년도	2028년도	2029년도	2030년도	2031년도
30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 건강검진비 300,000원 × 200명 = 60,000,000원

다. 재원조달방안: 시비 100%

3.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계
세 출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발생 비용*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건강검진 대상 (명)	200	200	200	200	200	1,000
재원조달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자체 수입 시비 (1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나. 성별영향평가 결과

<table>
<tr><th colspan="5">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th></tr>
<tr><td>관리번호</td><td colspan="4">2026A충남서산035</td></tr>
<tr><td>정 책 명</td><td colspan="4">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td></tr>
<tr><td rowspan="3">소관부서</td><td>기관명</td><td colspan="3">충청남도 서산시</td></tr>
<tr><td>부서명</td><td colspan="3">자치행정과</td></tr>
<tr><td>담당자명</td><td>이승빈</td><td>전화번호</td><td>041-660-2362</td></tr>
<tr><td>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td><td colspan="4">2026년 8월 6일</td></tr>
<tr><td>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자치행정과)</td><td colspan="4">○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이·통장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 진작
- 이·통장의 건강검진비 지원 근거 신설 마련(제6조)</td></tr>
<tr><td rowspan="2">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
임관)</td><td colspan="4">■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td></tr>
<tr><td colspan="4">'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td></tr>
<tr><td>검토의견
반영계획서</td><td colspan="4">해당 없음</td></tr>
<tr><td colspan="5">「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8월 10일

서산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영/041-660-3021)

자치행정과장 귀하</td></tr>
</table>

다. 법제심사 결과

자치입법안 심사조서

□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사항	심사항목	심 사 세 부 내 용	심 사 결 과
선행 절차	사전협의	관련기관, 단체, 부서와 사전협의 여부	적 정
	소비자 정책심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여부	해당없음
	성별영향 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 및 관련부서 검토	적 정
	비용추계	예산비용 수반시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적 정
	규 제	규제 해당 여부	해당없음
입법 내용	필 요 성	①새로운 자치입법 제·개정의 필요성 ②시행에 따른 문제점 여부	적 정
	적 법 성	①상위법령 위배 또는 타 자치법규와 모순 여부 ②주민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제정 시 상위법령의 근거 여부	적 정
	타 당 성	①다른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중복규정 여부 ②조 또는 항간 상치되는 부분의 존재 여부 ③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위임근거 규정 여부	적 정
입법 형식	표현방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이행 여부	적 정
	조문배열	전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의 배열 여부	적 정
	작성형식	제・개정이유, 조례안 및 관련법령 첨부 여부	적 정
부칙 규정	시 행 일	소급적용 규정 여부	해당없음
	표기요령	①권리제한, 의무부과 시 30일 이상 유예기간 규정 여부 ②경과조치규정으로 기득의 권리, 지위침해 방지 여부	해당없음
기타	행정규칙 예산관련	①관련 하위법규, 행정규칙 등을 함께 검토 여부 ②예산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재원문제 고려 여부	적 정
종합검토의견		- 이·통장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학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문제점 없음.	

심사를마침	심사일	2026. 9. 2.(제1321호)
	심사자	지방행정서기 최 욱
	확인자	지방행정사무관 신현우

의사일정 제6항

마음을 따뜻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제3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2026. 10. 29.(목)
제 5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서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서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10. 21.
행정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10. 8.

나. 제 출 자 : 서산시장(일자리경제과)

다. 회부일자 : 2026. 10. 13.

라. 심사일자 : 2026. 10. 21.

2. 제안설명 요지

○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 및 유도하기 위함

○ 일자리박람회·채용행사·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의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조례 신설

3. 주요 내용

가. 홍보물품 또는 기념품 등 제공 추가 (안 제6조제2항, 안 제7조제2항)

나.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 추가
(안 제6조제1항제5조)

4. 검토의견 요지

가. 본 개정안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의 참여자에게 홍보물품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나. 대체 인력 근로자 지원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대체인력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단기 고용 및 불안정한 근로 여건 개선 등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다.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념품의 제공은 사업 참여자의 관심과 참여율을 높여 사업에 대한 홍보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판단됨

라. 현재 타 시·군에서도 홍보물품 지원에 관한 유사 조례를 시행중에 있음

마. 다만 제6조 제2항과 제7조 제2항의 규정 내용이 동일하므로, 두 조항의 적용 대상이 각각 일자리 창출 지원과 취업 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므로 사업별 집행 과정에서 중복 제공 여부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제 59 호
의결연월일	

서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6. 10. 6.

서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59 호

제출연월일 : 2026. 10. 6.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개정이유

○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 및 유도하기 위함

○ 일자리박람회・채용행사・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의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조례 신설

2. 주요내용

○ 홍보물품 또는 기념품 등 제공 추가
- 안 제6조제2항, 안 제7조제2항

○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 추가
- 안 제6조제1항제5조

3. 단계별 추진사항

○ 입법계획 수립: 2026. 8. 13. (일자리경제과-53635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6. 8. 20. (가족지원과 - 26583호)
- 결 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 입법예고: 2026. 8. 20. ~ 9. 10.(서산시 공고 제2026-2167호)
- 결 과: 의견 없음

○ 법제심사: 2026. 9. 15.(기획예산담당관-13589호)
- 검토의견: 법적 문제점 없음

○ 조례・규칙심의회: 2026. 9. 21.
○ 시의회 의결: 2026. 10월말
○ 공포・시행 : 2026. 11. 10.

4. 참고사항

○ 관련근거

○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법제심사 결과서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1. 예고대상: 서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8. 20. ~ 9. 10(21일간) 3.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고결과: 제출의견 없음

서산시 조례 제　　호

서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홍보물품 또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홍보물품 또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①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홍보물품 또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취업 지원 사업) (생 략)	제7조(취업 지원 사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홍보물품 또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비용발생 요인

-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금 지급
-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 시 홍보물품 구입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시장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 추계결과

-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 홍보물품 구입] 연평균 5,000천원(시비)
-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금 지급] 연평균 22,000천원(시비)

※ 2026년 기준 사업예산 **44,000천원**(도비 22,000천원, 시비 22,000천원), 대체인력 지원금 적용중인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인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직접 100만원 지원금 지급

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

해뜨는서산

서 산 시



수신 일자리경제과장

(경유)

제목 「서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1. 일자리경제과-54110(2026. 8. 18.)호와 관련됩니다.

2. 「서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가 족 지 원 과 장

주무관	김지형	여성정책팀장	김명석	가족지원과장	2026. 8. 20. 심은주

협조자

시행 가족지원과-26583 (2026. 8. 20.) 접수 일자리경제과-54751 (2026. 8. 20.)

우 31974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 1, 가족지원과 (읍내동) / https://www.seosan.go.kr

전화번호 041-660-3021 팩스번호 041-660-2055 / coconu1700@korea.kr / 비공개(5)

비전있는 희망 도시, 서산

라. 법제심사 결과서

자치입법안 심사조서

□ 서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사항	심사항목	심 사 세 부 내 용	심 사 결 과
선행 절차	사전협의	관련기관, 단체, 부서와 사전협의 여부	적 정
	소비자 정책심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여부	해당없음
	성별영향 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 및 관련부서 검토	적 정
	비용추계	예산비용 수반시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해당없음
	규 제	규제 해당 여부	해당없음
입법 내용	필 요 성	①새로운 자치입법 제·개정의 필요성 ②시행에 따른 문제점 여부	적 정
	적 법 성	①상위법령 위배 또는 타 자치법규와 모순 여부 ②주민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제정 시 상위법령의 근거 여부	적 정
	타 당 성	①다른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중복규정 여부 ②조 또는 항간 상치되는 부분의 존재 여부 ③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위임근거 규정 여부	적 정
입법 형식	표현방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이행 여부	적 정
	조문배열	전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의 배열 여부	적 정
	작성형식	제・개정이유, 조례안 및 관련법령 첨부 여부	적 정
부칙 규정	시 행 일	소급적용 규정 여부	해당없음
	표기요령	①권리제한, 의무부과 시 30일 이상 유예기간 규정 여부 ②경과조치규정으로 기득의 권리, 지위침해 방지 여부	해당없음
기타	행정규칙 예산관련	①관련 하위법규, 행정규칙 등을 함께 검토 여부 ②예산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재원문제 고려 여부	적 정
종합검토의견		- 홍보물품, 기념품 등 제공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가·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문제점 없음.	

심사를 마침	심사일	2026. 9. 15.(제1327호)
	심사자	지방행정서기 최 욱
	확인자	지방행정사무관 신현우

의사일정 제7항



제3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2026. 10. 29.(목)
제 5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10. 21.
행정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10. 8.

나. 제 출 자 : 서산시장(사회복지과)

다. 회부일자 : 2026. 10. 13.

라. 심사일자 : 2026. 10. 21.

2. 제안설명 요지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사용 중인 용어를 현행 법령 및 행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보훈단체의 회원 관리 및 보훈복지 활성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각 보훈단체장의 회원관리 지원비를 인상 지급하여 책임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변경
(안 제3조 및 제7조제4항)

나. 제7조 성격에 맞게 각 호 외의 부분 변경(안 제7조)
- (현행) 보조금을 교부 → (개정) 지원

다. 서산시 보훈단체 지회장의 회원관리 지원비 인상 (안 제7조제4항)
- (현행) 월10만원 → (개정) 월20만원

4. 검토의견 요지

가.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면서 개편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보훈단체 지회장의 회원관리 지원비를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우 및 지원은「국가보훈 기본법」제18조, 제19조에서도 명시하고 있고 보훈단체 지회장 개인에게 회원관리 지원비를 상향지원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목적과 지원근거가 조례에 명확하게 마련되어야 하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또한 충남 도내 타 시·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천안, 계룡, 서천, 청양 홍성 등 5개 시·군에서는 20만원부터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음【참고자료 2】

라.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제 60 호
의결연월일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6. 10. 06.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60 호

제출연월일 : 2026. 10. 06.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사용 중인 용어를 현행 법령 및 행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보훈단체의 회원 관리 및 보훈복지 활성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각 보훈단체장의 회원관리 지원비를 인상 지급하여 책임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변경
(안 제3조 및 제7조제4항)

○ 제7조 성격에 맞게 각 호 외의 부분 변경(안 제7조)
- (현행) 보조금을 교부 → (개정) 지원

○ 서산시 보훈단체 지회장의 회원관리 지원비 인상 (안 제7조제4항)
- (현행) 월10만원 → (개정) 월20만원

3. 단계별 추진사항

가. 입법계획 결재 : 2026. 7. 15.

나. 성별영향평가 : 2026. 7. 20.

다. 입법예고 : 2026. 7. 22. ~ 8. 11.

라. 법제심사 : 2026. 8. 18.

마. 조례·규칙심의회 : 2026. 9월 중

바. 시의회 의결 : 2026. 10월 중

사. 공포 및 시행 : 2026. 11월 중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서산시 조례 제 호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금을 교부”를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자) ---------- ---------- ---------- ---------- --- 국가보훈부 장관--------- ----------.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 ---------- ---------- - 지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서산시 보훈단체 지회장에 대한 회원관리 지원비 가. 지 원 액 : 월 10만원 나. (생 략)	4. 국가보훈부---------- ---------- -- 가. ---------- 20만원 나.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소요예산

▶ 활동비 : 20만원 × 서산시 보훈단체 지회장 9명 × 12개월 = 21,600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예상 5천만원 미만

4. 작성자 :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김 영 식

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table>
<tr><td colspan="5">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td></tr>
<tr><td>관리번호</td><td colspan="4">2026A충남서산031</td></tr>
<tr><td>정 책 명</td><td colspan="4">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td></tr>
<tr><td rowspan="3">소관부서</td><td>기관명</td><td colspan="3">충청남도 서산시</td></tr>
<tr><td>부서명</td><td colspan="3">사회복지과</td></tr>
<tr><td>담당자명</td><td>최명진</td><td>전화번호</td><td>041-660-2674</td></tr>
<tr><td>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td><td colspan="4">2026년 7월 16일</td></tr>
<tr><td>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사회복지과)</td><td colspan="4">○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명칭 변경 (제3조 및 제7조제4항)
- 성격에 맞게 각 호 외의 부분 변경(제7조)
- 서산시 보훈단체 지회장의 회원관리 지원비 인상(제7조제4항)</td></tr>
<tr><td rowspan="2">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td><td colspan="4">■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td></tr>
<tr><td colspan="4">’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td></tr>
<tr><td>검토의견
반영계획서</td><td colspan="4">해당 없음</td></tr>
</table>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7월 20일

서산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영/041-660-3021)

사회복지과장 귀하

라. 법제심사 결과

자치입법안 심사조서

□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사항	심사항목	심 사 세 부 내 용	심 사 결 과
선행 절차	사전협의	관련기관, 단체, 부서와 사전협의 여부	적 정
	소 비 자 정책심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여부	해당없음
	성별영향 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 및 관련부서 검토	적 정
	비용추계	예산비용 수반시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해당없음
	규 제	규제 해당 여부	해당없음
입법 내용	필 요 성	①새로운 자치입법 제·개정의 필요성 ②시행에 따른 문제점 여부	적 정
	적 법 성	①상위법령 위배 또는 타 자치법규와 모순 여부 ②주민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제정 시 상위법령의 근거 여부	적 정
	타 당 성	①다른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중복규정 여부 ②조 또는 항간 상치되는 부분의 존재 여부 ③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위임근거 규정 여부	적 정
입법 형식	표현방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이행 여부	적 정
	조문배열	전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의 배열 여부	적 정
	작성형식	제・개정이유, 조례안 및 관련법령 첨부 여부	적 정
부칙 규정	시 행 일	소급적용 규정 여부	해당없음
	표기요령	①권리제한, 의무부과 시 30일 이상 유예기간 규정 여부 ②경과조치규정으로 기득의 권리, 지위침해 방지 여부	해당없음
기타	행정규칙 예산관련	①관련 하위법규, 행정규칙 등을 함께 검토 여부 ②예산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재원문제 고려 여부	적 정
종합검토의견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명 정비 및 보훈단체 지회장의 회원 관리 지원비 인상을 위한 것으로, 법적 문제점 없음.	

심사를 마침	심사일	2026. 8. 18.(제1318호)
	심사자	지방행정서기 최 욱
	확인자	지방행정사무관 신현우

의사일정 제8항



제3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2026. 10. 29.(목)
제 5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10. 21.
행정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10. 8.

나. 제 출 자 : 서산시장(경로장애인과)

다. 회부일자 : 2026. 10. 13.

라. 심사일자 : 2026. 10. 21.

2. 제안설명 요지

○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로당의 기본적인 운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경로당 지원 운영비를 현행 월 25만원에서 월 37.5만원으로 현실화하여 어르신의 여가복지 공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경로당 운영비 지원액 인상(제18조제2항제2호):

월 25만원→월 37.5만원

4. 검토의견 요지

가. 본 개정안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로당의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여가 복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비 지원액을 월 375,0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나.「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므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인상하려는 본 개정안은 관계 법령의 취지와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 특히 경로당은 지역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여가활동과 사회적 교류를 지원하는 생활 밀착형 복지시설이라는 점에서 운영비 확대는 경로당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라.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제 61 호
의결연월일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6. 10. 6.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61 호

제출연월일 : 2026. 10. 6.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개정이유

○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로당의 기본적인 운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경로당 지원 운영비를 현행 월 25만원에서 월 37.5만원으로 현실화하여 어르신의 여가복지 공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로당 운영비 지원액 인상(제18조제2항제2호):

월 25만원→월 37.5만원

3. 단계별 추진사항

가. 기본방침 결재: 2026. 8. 10.(경로장애인과-35903호)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2026. 8. 19.(가족지원과-26582호)

☞ 종합 검토 의견: 개선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2026. 8. 14. ~ 9. 4.(21일간)
- 공고번호: 서산시 공고 제2026-2133호
- 결 과: 의견 없음

라. 법제심사: 2026. 9. 7.

마. 조례 · 규칙심의회: 2026. 9. ~ 10.

바. 의회 상정: 2026. 10. ~ 11.

사. 공포·시행: 2026. 11. ~ 1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노인복지법」제4조, 제47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라. 법제심사 결과

서산시 조례 제 호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250,000원”을 “375,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시설 등 지원) ①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지원액: 월 250,000원	제18조(시설 등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지원액: 월 375,000원

《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 발생 요인: 경로당 운영비 인상(개소별 월25만원→월37.5만원)

❍ 관련조문: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개정안)

- 제18조(시설 등 지원) ② 경로당 운영비 지원시기와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시기: 연 2회(1월, 7월)
2. 지원액: 월 375,000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증액지원 범위 : 관내 등록 경로당(393개소/'26. 7. 1. 기준)

❍ 증액지원 금액 : 경로당 운영비 월 375,000원(연 4,500,000원)

나. 추계 결과

❍ 경로당 운영비 연차별 지급액

(단위 : 천원)

지급연도	2027	2028	2029	2030	2031	비 고
지원개소	393	393	393	393	393	
지원액(월)	375	375	375	375	375	개소당
소요예산	1,768,500	1,768,500	1,768,500	1,768,500	1,768,500	

다. 재원조달방안 : 지방세(전액 시비)

3.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계
세 입							
세 출		1,768,500	1,768,500	1,768,500	1,768,500	1,768,500	8,842,500
경로당 운영비		1,768,500	1,768,500	1,768,500	1,768,500	1,768,500	8,842,500
재원 조달		1,768,500	1,768,500	1,768,500	1,768,500	1,768,500	8,842,5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768,500	1,768,500	1,768,500	1,768,500	1,768,500	8,842,500
	지방세	1,768,500	1,768,500	1,768,500	1,768,500	1,768,500	8,842,5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4. 작성자

복지문화국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

해뜨는 서산

서 산 시



수신 경로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1. 경로장애인과-36905(2026. 8. 18.)호와 관련됩니다.

2.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가 족 지 원 과 장

주무관	김지영	여성정책팀장	김영석	가족지원과장	2026. 8. 20. 심은주

협조자

시행 가족지원과-26582 (2026. 8. 20.) 접수 경로장애인과-37466 (2026. 8. 21.)

우 31974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 1, 가족지원과 (읍내동) / https://www.seosan.go.kr
전화번호 041-660-3021 팩스번호 041-660-2055 / coconut700@korea.kr / 비공개(5)

비전있는 희망 도시, 서산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table>
<tr><td>관리번호</td><td colspan="4">2026A충남서산039</td></tr>
<tr><td>정 책 명</td><td colspan="4">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td></tr>
<tr><td rowspan="3">소관부서</td><td>기관명</td><td colspan="3">충청남도 서산시</td></tr>
<tr><td>부서명</td><td colspan="3">경로장애인과</td></tr>
<tr><td>담당자명</td><td>김철기</td><td>전화번호</td><td>041-660-2058</td></tr>
<tr><td>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td><td colspan="4">2026년 8월 18일</td></tr>
<tr><td>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경로장애인과)</td><td colspan="4">○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경로당 운영비 지원 기준 현실화
- 경로당 운영비 지원액을 당초 월 25만원에서 월 37.5만원으로 인상(안 제18조제2항제2호)</td></tr>
<tr><td rowspan="2">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td><td colspan="4">■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td></tr>
<tr><td colspan="4">‘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td></tr>
<tr><td>검토의견
반영계획서</td><td colspan="4">해당 없음</td></tr>
</table>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8월 19일

서산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영/041-660-3021)

경로장애인과장 귀하

라. 법제심사 결과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

해뜨는서산

서 산 시



수신 경로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법제심사 결과 통보「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로장애인과-39766(2026. 9. 7.)호 관련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법제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붙임 법제심사 결과 1부. 끝.

기획예산담당관

주무관 **최록** 의회법무팀장 **이인수** 기획예산담당관 **신범우** 전결 2026. 9. 8.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담당관-13092 (2026. 9. 8.) 접수 경로장애인과-40031 (2026. 9. 8.)

우 31974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운길 1, (읍내동) / http://www.seosan.go.kr

전화번호 041-660-3039 팩스번호 041-660-2249 / childnr0205@korea.kr / 대국민 공개

비전있는 희망 도시, 서산

자치입법안 심사조서

□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사항	심사항목	심 사 세 부 내 용	심 사 결 과
선행 절차	사전협의	관련기관, 단체, 부서와 사전협의 여부	적 정
	소 비 자 정책심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여부	해당없음
	성별영향 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 및 관련부서 검토	적 정
	비용추계	예산비용 수반시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적 정
	규 제	규제 해당 여부	해당없음
입법 내용	필 요 성	①새로운 자치입법 제·개정의 필요성 ②시행에 따른 문제점 여부	적 정
	적 법 성	①상위법령 위배 또는 타 자치법규와 모순 여부 ②주민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제정 시 상위법령의 근거 여부	적 정
	타 당 성	①다른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중복규정 여부 ②조 또는 항간 상치되는 부분의 존재 여부 ③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위임근거 규정 여부	적 정
입법 형식	표현방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이행 여부	적 정
	조문배열	전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의 배열 여부	적 정
	작성형식	제·개정이유, 조례안 및 관련법령 첨부 여부	적 정
부칙 규정	시 행 일	소급적용 규정 여부	해당없음
	표기요령	①권리제한, 의무부과 시 30일 이상 유예기간 규정 여부 ②경과조치규정으로 기득의 권리, 지위침해 방지 여부	해당없음
기타	행정규칙 예산관련	①관련 하위법규, 행정규칙 등을 함께 검토 여부 ②예산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재원문제 고려 여부	적 정
종합검토의견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 운영비 지원액 향상을 통해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법적 문제점 없음.	

심사를 마침	심사일	2026. 9. 7.(제1323호)
	심사자	지방행정서기 최 욱
	확인자	지방행정사무관 신현우

의사일정 제9항

마음을 따뜻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제3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2026. 10. 29.(목)
제 5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서산시 효 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서산시 효 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10. 21.
행정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10. 8.

나. 제 출 자 : 서산시장(경로장애인과)

다. 회부일자 : 2026. 10. 13.

라. 심사일자 : 2026. 10. 21.

2. 제안설명 요지

○ 어르신을 모시고 봉양하는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체감형 노인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이에 효행장려금의 지급 기준, 신청 절차 및 지급 중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제도 운영과 건전한 효 문화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효 가정”의 정의 (안 제2조 제6호)

-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 거주 가구

나. 효행장려금 지급 (안 제11조)

- 설·추석 명절에 예산 범위 내에서 각 20만원 효행장려금 지급

다. 효행장려금 지급대상 (안 제12조)

- 세대원 모두 서산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효 가정”

라. 지급신청 방법, 중지 및 환수 (안 제13조, 제14조)

- 각 명절 당일 기준 14일 전까지 신청, 지급사유 소멸 시 지급 중지

4. 검토의견 요지

가. 본 개정안은 8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며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 대상과 신청·지급 절차 및 지급 중지·환수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사항임

나.「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효행장려금 지원제도가 마련됨으로써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경로효친의 가치가 확산될 것으로 판단됨

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효 문화 관련 조례에서도 어르신을 공경하고 모시는 효행을 장려하고 효 문화 확산 및 발전을 위해 효행 장려금 지원을 위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참고자료 1】

라. 다만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서 효행장려금이 지급됨에 따라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햐 할 것으로 사료됨

마. 상위법 및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수정안 붙임

「서산시 효 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산시 효 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3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제1항 “지급 받고자 하는”을 “지급받으려는”으로 한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 근무일)”을

“이 경우 신청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면「민법」제161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2항 “신청서가 접수되면”을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으로 한다

“확인하여야 하며”을 “심사하고”로 한다

제3항 “제2항에 따라 제출된”이란 문구를 추가한다

제4항에 “효행장려금의”이란 문구를 추가한다로 수정하고자 발의합니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13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제13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신 설>	① 효행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설날 및 추석 당일을 기준으로 14일 전(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 근무일)까지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효행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설날 및 추석 당일을 기준으로 각각 14일 전까지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면 「민법」 제161조에 따른다
<신 설>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민등록 및 거주 사실 등을 확인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확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주민등록 및 거주 사실 등을 확인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심사하고 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확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
<신 설>	④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효행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의 안 번 호	제 62 호
의결연월일	

서산시 효 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6. 10. 6.

서산시 효 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62 호

제출연월일 : 2026. 10. 6.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개정이유

○ 어르신을 모시고 봉양하는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체감형 노인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이에 효행장려금의 지급 기준, 신청 절차 및 지급 중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제도 운영과 건전한 효 문화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효 가정”의 정의 (안 제2조 제6호)

-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 거주 가구

나. 효행장려금 지급 (안 제11조)

- 설·추석 명절에 예산 범위 내에서 각 20만원 효행장려금 지급

다. 효행장려금 지급대상 (안 제12조)

- 세대원 모두 서산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효 가정”

라. 지급신청 방법, 중지 및 환수 (안 제13조, 제14조)

- 각 명절 당일 기준 14일 전까지 신청, 지급사유 소멸 시 지급 중지

3. 단계별 추진사항

가. 입법계획 결재: 2026. 8월 중

나. 성별영향평가: 2026. 8월 중

다. 입법예고: 2026. 8월 ~ 9월

라. 법제심사: 2026. 9월 중

마. 조례・규칙심의회: 2026. 9. ~ 10

바. 의회 상정: 2026. 11월 중

사. 공포·시행: 2027. 1월 중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다. 협의사항: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

서산시 조례 제 호

서산시 효 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효 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효 가정”이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11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효행장려금 지급) ① 시장은 “효 가정”에 대하여 매년 설·추석명절에 예산범위 내에서 각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효행장려금은 “효 가정”에 설명절과 추석명절 전날까지 지급한다.

③ 효행장려금은 제13조에 따른 신청으로 지급하되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2조(효행장려금 지급대상) ① 지급대상은 “효 가정”을 이루고 부양하는 세대주로서(단,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 부양하는 자) 신청일 현재 3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모두 서산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출생등록자(「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아동도 포함한다)의 경우 1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지급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 소지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제13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효행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설날 및 추석 당일을 기준으로 14일 전(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 근무일)까지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민등록 및 거주 사실 등을 확인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확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④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 제12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효행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급기준일 현재 직계존속, 직계비속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그 밖에 “효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효행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

② 효행장려금을 부당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날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산시 효 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서(제13조제1항관련)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연락처		
지급 방법	예 금 주					
	계좌번호 (은행명)					

가 족 구 성 현 황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입일

위와 같이 효 가정에 대한 효행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본인은 효행장려금 신청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민원처리시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의 여 / 부 세대원 (서명 또는 인) 동의 여 / 부

세대원 (서명 또는 인) 동의 여 / 부 세대원 (서명 또는 인) 동의 여 / 부

세대원 (서명 또는 인) 동의 여 / 부 세대원 (서명 또는 인) 동의 여 / 부

위 가정에 대하여 관계 공부 및 현지 사실조사 결과 효행장려금 지급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직 성명 : (서명 또는 인)

■ 서산시 효 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효행장려금 지급대상자 접수대장(제13조제2항 관련)

연번	신청자					신청일	예금주 (연락처)	은행 및 계좌번호	비고
	성 명 (연락처)	성별	생년월일	주 소	효행대상자 성명 및 관계				

서산시 효행장려금 관련 위임장(제12조제2항관련)

위 임 **받은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관 계	
	위임사유			

「서산시 효 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서산시 효행장려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서산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위임자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효 가정”이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을 말한다.
<신 설>	제11조(효행장려금 지급) ① 시장은 “효 가정”에 대하여 매년 설·추석명절에 예산범위 내에서 각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효행장려금은 “효 가정”에 설명절과 추석명절 전날까지 지급한다. ③ 효행장려금은 제13조에 따른 신청으로 지급하되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 설>	제12조(효행장려금 지급대상) ① 지급대상은 “효 가정”을 이루고 부양하는 세대주로서(단,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 부양하

		는 자) 신청일 현재 3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모두 서산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출생등록자(「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아동도 포함한다)의 경우 1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지급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 소지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신 설>		제13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효행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설날 및 추석 당일을 기준으로 14일 전(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 근무일)까지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민등록 및 거주 사실 등을 확인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확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

	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④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 제12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효행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급기준일 현재 직계존속, 직계비속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그 밖에 “효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효행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 ② 효행장려금을 부당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날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 발생 요인: 효행장려금 신설

❍ 관련조문: 서산시 효 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 제11조(효행장려금 지급) ① 시장은 “효 가정”에 대하여 매년 설·추석명절에 예산범위 내에서 각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원 범위: 80세 이상 직계존비속을 모시고 함께 사는 3대 이상의 가구 (280가구/‘26. 7. 31. 기준)

❍ 지원 금액: 가구당 20만원

나. 추계 결과

❍ 서산시 80세 이상 직계존비속 3대 이상의 가구수

- 2025년 기준 80세 이상 포함된 3인 이상 세대수: 759가구
- 최종 수혜 가구수 추산: 280가구

※ 1년 거주 요건 및 요양원 입소 인원 고려

❍ 산출내용

- 280가구 × 20만원 × 2회(설·추석 명절) = 112,000,000원

다. 재원조달방안: 지방세(전액 시비)

3. 연도별 비용추계표: 붙임

4. 작성자: 복지문화국 경로장애인과장 권 범 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계
세 입							
세 출		112,000	120,000	124,000	128,000	132,000	616,000
효행장려금		112,000	120,000	124,000	128,000	132,000	616,000
재원 조달		112,000	120,000	124,000	128,000	132,000	616,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12,000	120,000	124,000	128,000	132,000	616,000
	지방세	112,000	120,000	124,000	128,000	132,000	616,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다. 협의사항: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결과

청렴형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충남 서산시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협의결과 송부

1. 관련근거: 충청남도 서산시 경로장애인과, 협의시스템(요청일: 2026.7.30.)

2. 귀 기관에서 우리 부로 협의요청한 "**서산시 효행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붙임과 같이 "**협의완료**"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협의 내용을 준수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협의결과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인

수신자 충청남도지사(복지보훈정책과장),서산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서산시장(경로장애인과장)

보건사무관 **신은순** 사회보장조정과 전결 2026. 8. 4.
장 **신지영**
협조자
시행 사회보장조정과-2923 (2026. 8. 4.) 접수 경로장애인과-35208 (2026. 8. 4.)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3731 팩스번호 044-202-3970 / esesblue@korea.kr / 무분공개

[신설] 서산시 효행장려금 지원사업

안건번호	1042374-00	협의요청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경로장애인과
협의요청일	2026. 7. 30.	사업명	서산시 효행장려금 지원사업

구분	내용
검토결과	☑ 협의완료
검토의견	□ 종합검토 결과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근거, 협의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 **'협의완료(성과관리군)'** ○ (**후속 행정사항**) 해당 사업은 **'성과관리군' 사업 유형**으로, 연차별 사업실적 결과를 행복e음에 정기적으로 현행화(입력) 필수 - (성과지표 2개 작성) ➔ **필수지표(대상자 수) + 선택지표*** * 선택지표: 「**2026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협의 운용지침**」의 [부록5: 사후관리군 유형 및 정책영역별 성과지표 목록] 또는 행복e음 '사회보장제도협의-사회보장제도설계지원-협의서식'에서 성과지표 목록(엑셀파일) 참고 **① 성과지표 1(대상자 수): 실제 수혜자 수** **② 성과지표 2(지원 실적률): (지원 건수/목표 대상자 수) × 100**

라. 법제심사 결과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

해뜨는서산

서 산 시

수신 경로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법제심사 결과 통보「서산시 효 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로장애인과-39967(2026. 9. 8.)호 관련 「서산시 효 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법제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붙임 법제심사 결과 1부. 끝.

서 산 시 장

주무관	최옥	의회법무팀장	이만수	기획예산담당관	전결 2026. 9. 15. 신범무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담당관-13591 (2026. 9. 15.) 접수 경로장애인과-41028 (2026. 9. 15.)

우 31974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 1. (읍내동) / http://www.seosan.go.kr
전화번호 041-660-3039 팩스번호 041-660-2249 / childnr0205@korea.kr / 대국민 공개

비전있는 희망 도시, 서산

자치입법안 심사조서

□ 서산시 효 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사항	심사항목	심 사 세 부 내 용	심 사 결 과
선행 절차	사전협의	관련기관, 단체, 부서와 사전협의 여부	적 정
	소비자 정책심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여부	해당없음
	성별영향 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 및 관련부서 검토	적 정
	비용추계	예산비용 수반시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적 정
	규 제	규제 해당 여부	해당없음
입법 내용	필 요 성	①새로운 자치입법 제·개정의 필요성 ②시행에 따른 문제점 여부	적 정
	적 법 성	①상위법령 위배 또는 타 자치법규와 모순 여부 ②주민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제정 시 상위법령의 근거 여부	적 정
	타 당 성	①다른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중복규정 여부 ②조 또는 항간 상치되는 부분의 존재 여부 ③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위임근거 규정 여부	적 정
입법 형식	표현방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이행 여부	적 정
	조문배열	전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의 배열 여부	적 정
	작성형식	제·개정이유, 조례안 및 관련법령 첨부 여부	적 정
부칙 규정	시 행 일	소급적용 규정 여부	해당없음
	표기요령	①권리제한, 의무부과 시 30일 이상 유예기간 규정 여부 ②경과조치규정으로 기득의 권리, 지위침해 방지 여부	해당없음
기타	행정규칙 예산관련	①관련 하위법규, 행정규칙 등을 함께 검토 여부 ②예산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재원문제 고려 여부	적 정
종합검토의견		- 어르신을 모시고 봉양하는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는 등 법적 문제점 없음.	

심사를 마침	심사일	2026. 9. 15.(제1325호)
	심사자	지방행정서기 최 욱
	확인자	지방행정사무관 신현우

의사일정 제10항



제3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2026. 10. 29.(목)
제 5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서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서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10. 21.
행정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10. 8.

나. 제 출 자 : 서산시장(경로장애인과)

다. 회부일자 : 2026. 10. 13.

라. 심사일자 : 2026. 10. 21.

2. 제안설명 요지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

○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주요 내용

가. 통합지원협의체에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 추가(제11조)

나. 협의체의 구성에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 단체(조직)에 소속된 자 추가(제12조)

4. 검토의견 요지

가. 본 개정안은「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근거를 정비하고, 협의체 위원 구성에 사회연대경제조직 및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추가하려는 사항으로

나.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서비스 제공기관 간 협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조직과 주민 주체의 참여가 중요하므로, 위촉직 위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지역의 돌봄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 자원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다. 또한 서산시 지역 돌봄통합지원 조례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조례 개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권고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개정하였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라.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제 63 호
의결연월일	

서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6. 10. 6.

서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63 호

제출연월일 : 2026. 10. 6.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개정(제정)이유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

○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 통합지원협의체에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 추가(제11조)

○ 협의체의 구성에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자 추가(제12조)

3. 단계별 추진사항

○ 입법계획 결재: 2026. 8. 21.(경로장애인과-37520)호

○ 성별영향평가: 2026. 8. 31.(가족지원과-27642)호

○ 입법예고

- 기 간: 2026. 8. 25. ~ 9. 13.(20일간)
- 공고번호: 서산시 공고 제2026-2188호
- 결 과: 의견 없음

○ 법제심사: 2026. 9. 15.

○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 2026. 9. 21.

○ 의회 의결: 2026. 10월 중

○ 공포 및 시행: 2026. 11 ~ 12월 중

4. 참고사항

○ 관련법령:「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성별영향평가 결과

○ 법제심사 결과

신·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 시 必)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산시 지역돌봄 통합지원협의체 (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 ③ (생 략)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자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의료 ·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 ·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 · 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 ·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안에 그 사유를 명시하거나 미첨부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해당 개정안에 수반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복지문화국 경로장애인과장 권 범 진

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

해뜨는 서산

서 산 시



수신 경로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서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1. 경로장애인과-38273(2026. 8. 27)호와 관련됩니다.

2. 「서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가 족 지 원 과 장

주무관	김지영	여성정책팀장	대체휴무	가족지원과장	2026. 8. 31. 심은주

협조자

시행 가족지원과-27642 (2026. 8. 31.) 접수 경로장애인과-38712 (2026. 8. 31.)

우 31974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 1, 가족지원과 (음내동) / https://www.seosan.go.kr
전화번호 041-660-3021 팩스번호 041-660-2055 / coconu1700@korea.kr / 비공개(5)

비전있는 희망 도시, 서산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6A충남서산044			
정 책 명	**서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부서명	경로장애인과		
	담당자명	김미아	전화번호	041-660-2167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6년 8월 2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경로장애인과)	○ 상위법률에 따라 서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에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규정 - 통합지원협의체에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추가(안 제11조) - 협의체의 구성에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자 추가(안 제12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서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8월 30일

서산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영/041-660-3021)

경로장애인과장 귀하

라. 법제심사 결과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

해뜨는서산

서 산 시

수신 경로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법제심사 결과 통보「서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로장애인과-40654(2026. 9. 14.)호 관련 「서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법제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붙임 법제심사 결과 1부. 끝.

서 산 시 장 서산시장인

주무관	최옥	의회법무팀장	이인수	기획예산담당관	전결 2026. 9. 15. 신현우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담당관-13581 (2026. 9. 15.) 접수 경로장애인과-41010 (2026. 9. 15.)

우 31974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 1, (읍내동) / http://www.seosan.go.kr
전화번호 041-660-3039 팩스번호 041-660-2249 / chldnr0205@korea.kr / 대국민 공개

비전있는 희망 도시, 서산

자치입법안 심사조서

□ 서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사항	심사항목	심 사 세 부 내 용	심 사 결 과
선행 절차	사전협의	관련기관, 단체, 부서와 사전협의 여부	적 정
	소비자 정책심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여부	해당없음
	성별영향 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 및 관련부서 검토	적 정
	비용추계	예산비용 수반시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해당없음
	규 제	규제 해당 여부	해당없음
입법 내용	필 요 성	①새로운 자치입법 제·개정의 필요성 ②시행에 따른 문제점 여부	적 정
	적 법 성	①상위법령 위배 또는 타 자치법규와 모순 여부 ②주민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제정 시 상위법령의 근거 여부	적 정
	타 당 성	①다른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중복규정 여부 ②조 또는 항간 상치되는 부분의 존재 여부 ③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위임근거 규정 여부	적 정
입법 형식	표현방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이행 여부	적 정
	조문배열	전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의 배열 여부	적 정
	작성형식	제·개정이유, 조례안 및 관련법령 첨부 여부	적 정
부칙 규정	시 행 일	소급적용 규정 여부	해당없음
	표기요령	①권리제한, 의무부과 시 30일 이상 유예기간 규정 여부 ②경과조치규정으로 기득의 권리, 지위침해 방지 여부	해당없음
기타	행정규칙 예산관련	①관련 하위법규, 행정규칙 등을 함께 검토 여부 ②예산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재원문제 고려 여부	적 정
종합검토의견		- 관련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점 없음.	

심사를마침	심사일	2026. 9. 15.(제1328호)
	심사자	지방행정서기 최 욱
	확인자	지방행정사무관 신현우

의사일정 제11항



제3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2026. 10. 29.(목)
제 5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10. 21.
행정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10. 8.

나. 제 출 자 : 서산시장(감염병관리과)

다. 회부일자 : 2026. 10. 13.

라. 심사일자 : 2026. 10. 21.

2. 제안설명 요지

○ 서산 시민 대상 예방접종 사업의 확대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접종 종류 및 횟수를 정확히 제시하여 사업 운영에 일관성을 확보하며, 서산 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명 변경

- 현행 : 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변경 : 서산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나. 목적 및 지원 대상자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다. 접종 종류와 횟수 추가 및 변경 (안 제3조)

라. 비용 지원 및 지원 절차 변경(안 제4조, 안 제6조)

마. 부칙(시행일, 지원 대상자, 접종 횟수 등) 신설

4. 검토의견 요지

가. 본 조례안은 기존의「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에만 국한된 지원 체계를 인플루엔자 및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까지 확대하여, 서산 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나. 상위법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자체가 예방접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 또한 예방접종별 지원 기준에 연령별, 접종횟수, 비용지원, 접종기관 및 지원 절차등을 명확히 하고 있어 조례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있음

라. 다만 27년부터 5년간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총 소요액이 89억300만원으로 추계되어 있고 전액 시비로 재원을 조달하는 만큼 향후 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과 실제 접종률 등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제 64 호
의결연월일	

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6. 10. 6.

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64 호

제출연월일 : 2026. 10. 6.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개정이유

○ 서산 시민 대상 예방접종 사업의 확대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접종 종류 및 횟수를 정확히 제시하여 사업 운영에 일관성을 확보하며, 서산 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 현행 : 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변경 : 서산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나. 목적 및 지원 대상자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다. 접종 종류와 횟수 추가 및 변경 (안 제3조)

라. 비용 지원 및 지원 절차 변경(안 제4조, 안 제6조)

마. 부칙(시행일, 지원 대상자, 접종 횟수 등) 신설

3. 단계별 추진사항

가. 입법계획 결재 : 2026. 8. 4. (감염병관리과-6834호)

나. 성별영향평가 : 2026. 8. 20. (가족지원과-26581호)

- 결　　과 : 별도 개선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2026. 8. 7. (감염병관리과-6892호)

- 기　　간 : 2026. 8. 7. ~ 8. 27. (20일간)

- 공고번호 : 서산시보건소 공고 제2026-27호

- 결　　과 : 의견 없음

라. 법제심사 : 2026. 9. 2. (기획예산담당관-12603호)

마. 조례 · 규칙심의회 : 2026. 9월 중

바. 시의회 의결 : 2026. 10월 중

사. 공포·시행 : 2026 11월 중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나. 예산조치

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라. 법제심사 결과

서산시 조례 제 호

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산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산시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인플루엔자 : 접종일 기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4세 이상 서산 시민으로 한다.
2. 대상포진 : 접종일 기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 서산 시민으로 한다.
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 접종일 기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3세 이상 17세 이하 남성 청소년으로 한다.
4.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 및 시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접종종류 및 횟수) 서산시장은 질병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고, 예방접종의 종류와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 매년 1회

2. 대상포진 : 평생 1회(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 생애 최초 3회.

4.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 및 시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제4조(비용지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시장은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관내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해야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4. 그 밖에 예방접종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시장 또는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접종 기관은 신청자가 지원 대상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③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④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지원 대상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7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지원한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①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 또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9조(준용)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인플루엔자 접종은 절기를 고려하여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2027년도 : 70세 이상인 사람.
2. 2028년도 : 65세 이상인 사람
3. 2029년도 이후 : 60세 이상인 사람.

제3조(접종횟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지원 대상자 중 14세 이하자는 면역획득률을 고려하여 생애 최초 2회 접종한다.

《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 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임시예방접종”이라한다)을 하여야 한다.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제 30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대상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 6조(피해구제급여의 지급 제외 대상)

제 7조(피해구제급여의 지급 기준 및 범위)

제 8조(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

나. 예산 조치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서산 시민 대상 예방접종 확대 추진

○ 관련조문

제4조(비용지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접종 대상 확대에 따르는 비용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계	2027년도	2028년도	2029년도	2030년도	2031년도
8,903,000	3,262,000	1,811,000	1,840,000	995,000	995,000

다. 재원조달방안: 시비 100%

3.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4. 작 성 자: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최 유 호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계
세 입							
세 출		3,262	1,811	1,840	995	995	8,903
전 시민 독감 접종		829	829	829	829	829	4,145
60세 이상 대상포진 접종		1,971	962	991	146	146	4,216
남성 청소년 HPV 접종		462	20	20	20	20	542
자체 수입	소 계	3,262	1,811	1,840	995	995	8,903
	지방세	3,262	1,811	1,840	995	995	8,903
	세외수입	-	-	-	-	-	-

참고

❑ 서산 시민 대상 예방접종 확대 추진 비용 산출

(단위 : 명/백만원)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Ⅰ 사업량</th><th>Ⅱ 인당 소요액</th><th>Ⅲ 산출식</th><th>산출액</th></tr>
<tr><td>전시민
독감
접종</td><td colspan="2">※ 해당인구의 40%
: 28,000명 (27~31년 동일)</td><td>백신비 : 10,000원
시행비 : 19,610원
인당 소요액
: 29,610원</td><td>28,000명×29,610원×5년</td><td>4,145</td></tr>
<tr><td rowspan="6">60세이상
대상포진
접종</td><td colspan="2">※ 대상 인구의 50%</td><td rowspan="6">인당 지원액
:140,000원</td><td></td><td rowspan="6">4,216</td></tr>
<tr><td>27년</td><td>70세이상 : 14,081명</td><td>14,081명×14만원=1,971백만원</td></tr>
<tr><td>28년</td><td>65세 이상 : 6,876명</td><td>6,876명×14만원=962백만원</td></tr>
<tr><td>29년</td><td>60세 이상 : 7,085명</td><td>7,085명×14만원=991백만원</td></tr>
<tr><td>30년</td><td>60세 도래자 : 1,045명</td><td>1,045명×14만원=146백만원</td></tr>
<tr><td>31년</td><td>60세 도래자 : 1,045명</td><td>1,045명×14만원=146백만원</td></tr>
<tr><td rowspan="6">남성
청소년
HPV
접종</td><td colspan="2">※ 대상 인구의 40%</td><td rowspan="6">백신비 : 72,470
시행비 : 19,610
인당소요액
: 92,080원
14세이상 3회
14세이하 2회</td><td></td><td rowspan="6">542</td></tr>
<tr><td rowspan="2">27년</td><td>14세 : 348명</td><td>348명×92,080원×2회=64백만원</td></tr>
<tr><td>15세~17세 : 1,442명</td><td>1,442명×92,080명×3회=398백만원</td></tr>
<tr><td>28년</td><td rowspan="4">13~17세
미접종자 예비비</td><td rowspan="4">20백만원</td></tr>
<tr><td>29년</td></tr>
<tr><td>30년</td></tr>
<tr><td>31년</td></tr>
<tr><td colspan="5">예방접종 확대 추진 비용 총계(5개년)</td><td>8,903</td></tr>
</table>

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

해뜨는 서산

서 산 시



수신 서산시보건소장(감염병관리과장)
(경유)
제목 「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1. 감염병관리과-6973(2026. 8. 11.)호와 관련됩니다.

2. 「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가 족 지 원 과 장



주무관	김지영	여성정책팀장	김영석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2026. 8. 20.

협조자
시행 가족지원과-26581 (2026. 8. 20.) 접수 감염병관리과-7185 (2026. 8. 20.)
우 31974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 1, 가족지원과 (읍내동) / https://www.seosan.go.kr
전화번호 041-660-3021 팩스번호 041-660-2055 / coconut700@korea.kr / 비공개(5)

비전있는 희망 도시, 서산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table>
<tr><td>관리번호</td><td colspan="4">2026A충남서산038</td></tr>
<tr><td>정 책 명</td><td colspan="4">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td></tr>
<tr><td rowspan="3">소관부서</td><td>기관명</td><td colspan="3">충청남도 서산시</td></tr>
<tr><td>부서명</td><td colspan="3">감염병관리과</td></tr>
<tr><td>담당자명</td><td>신해인</td><td>전화번호</td><td>041-661-8285</td></tr>
<tr><td>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td><td colspan="4">2026년 8월 11일</td></tr>
<tr><td>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감염병관리과)</td><td colspan="4">○ 서산시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
- 예방접종 지원대상자(제2조)
- 접종종류 및 횟수(제3조)
- 비용지원, 예방접종 실시기관, 지원절차(제4조~제6조)
- 환수조치,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제7조~제8조)</td></tr>
<tr><td rowspan="2">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td><td colspan="4">■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td></tr>
<tr><td colspan="4">’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td></tr>
<tr><td>검토의견
반영계획서</td><td colspan="4">해당 없음</td></tr>
</table>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8월 19일

서산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영/041-660-3021)

감염병관리과장 귀하

라. 법제심사 결과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

해뜨는서산

서 산 시

수신 서산시보건소장(감염병관리과장)
(경유)
제목 법제심사 결과 통보「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감염병관리과-7420(2026. 8. 28.)호 관련 「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법제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붙임 법제심사 결과 1부. 끝.

서 산 시 장

주무관	최옥	의회법무팀장	이인수	기획예산담당관	전결 2026. 9. 2. 신현우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담당관-12603 (2026. 9. 2.) 접수 감염병관리과-7572 (2026. 9. 2.)

우 31974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 1, (읍내동) / http://www.seosan.go.kr
전화번호 041-660-3039 팩스번호 041-660-2249 / chldnr0205@korea.kr / 대국민 공개

비전있는 희망 도시, 서산

자치입법안 심사조서

□ 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사항	심사항목	심 사 세 부 내 용	심 사 결 과
선행 절차	사전협의	관련기관, 단체, 부서와 사전협의 여부	적 정
	소 비 자 정책심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여부	해당없음
	성별영향 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 및 관련부서 검토	적 정
	비용추계	예산비용 수반시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적 정
	규 제	규제 해당 여부	해당없음
입법 내용	필 요 성	①새로운 자치입법 제·개정의 필요성 ②시행에 따른 문제점 여부	적 정
	적 법 성	①상위법령 위배 또는 타 자치법규와 모순 여부 ②주민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제정 시 상위법령의 근거 여부	적 정
	타 당 성	①다른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중복규정 여부 ②조 또는 항간 상치되는 부분의 존재 여부 ③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위임근거 규정 여부	적 정
입법 형식	표현방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이행 여부	적 정
	조문배열	전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의 배열 여부	적 정
	작성형식	제·개정이유, 조례안 및 관련법령 첨부 여부	적 정
부칙 규정	시 행 일	소급적용 규정 여부	해당없음
	표기요령	①권리제한, 의무부과 시 30일 이상 유예기간 규정 여부 ②경과조치규정으로 기득의 권리, 지위침해 방지 여부	해당없음
기타	행정규칙 예산관련	①관련 하위법규, 행정규칙 등을 함께 검토 여부 ②예산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재원문제 고려 여부	적 정
종합검토의견		- 예방접종 사업 확대로 지원 대상을 명확히하여 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제고하고 위한 것으로, 법적 문제점 없음.	

심사를마침	심사일	2026. 9. 2.(제1320호)
	심사자	지방행정서기 최 욱
	확인자	지방행정사무관 신현우

의사일정 제12항



제3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2026. 10. 29.(목)
제 5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서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서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10. 21.
행정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10. 8.

나. 제 출 자 : 서산시장(시립도서관)

다. 회부일자 : 2026. 10. 13.

라. 심사일자 : 2026. 10. 21.

2. 제안설명 요지

○ 민간단체 및 독서동아리 등의 독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경비 지원방식에서 도서 등 물품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방식을 통해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민간단체 및 독서동아리 등의 독서활동 지원 범위를 경비 및 물품지원으로 확대 (안 제5조)

4. 검토의견 요지

가. 본 개정안은 민간단체 및 독서동아리 등의 독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경비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경비 및 물품 지원방식으로 확대코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 같은법 제9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해 독서 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단체 및 독서동아리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취지와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라. 특히 도서 등의 물품은 독서동아리 및 민간단체의 독서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현행의 경비 지원에 물품 지원을 추가하는 것은 지원방식을 현실화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마.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제 65 호
의결연월일	

서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6. 10. 7.

서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65 호

제출연월일 : 2026. 10. 7.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개정이유

○ 민간단체 및 독서동아리 등의 독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경비 지원방식에서 도서 등 물품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방식을 통해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단체 및 독서동아리 등의 독서활동 지원 범위를 경비 및 물품지원으로 확대 (안 제5조)

3. 단계별 추진사항

가. 입법계획 결재 : 2026. 8. 20. (시립도서관-4693호).

나. 성별영향평가 : 2026. 8. 27. (가족지원과-27398호)

- 결 과: 별도 개선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2026. 8. 25.(시립도서관-4783호)

- 기 간 : 2026. 8. 26. ~ 9. 15. (20일간)
- 공고번호 : 서산시 시립도서관 공고 제2026-14호
- 결 과 : 의견없음

라. 법제심사 : 2026. 9. 15. (기획예산담당관-13580호)

마. 조례·규칙심의회 : 2026. 9. 22.(원안가결)

바. 시의회 의결 : 2026. 10월 중

사. 공포·시행 : 2026. 11월 중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라. 법제심사 결과

서산시 조례 제 호

서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비를 지원한다”를 “경비 및 물품의 지원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 시 必)

현 행	개 정 안
제5조(독서 문화 진흥) ①·② (생략) ③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또는 동아리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④ (생 략)	제5조(독서 문화 진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경비 및 물품의 지원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 「독서문화진흥법」

제11조(직장의 독서 문화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내의 독서활동을 활성화 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에 독서동아리를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독서동아리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서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 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 · 연속 간행물 등 인쇄 자료,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 환경”이란 독서 문화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유·무형의 물리적·사회적 조건이나 상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추진 계획) 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매년 독서문화진흥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추진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사항
4.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5.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독서 문화 진흥)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 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을 마련하는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독서문화진흥법」제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③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또는 동아리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④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 도서관 홍보물품, 기념품, 경품, 상품권, 재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1. 지역의 독서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
2.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학술행사, 강연회, 독서교육, 경진대회 등
3. 직장의 독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5. 독서의 달 및 도서관주간 행사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6.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서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은 기존 사업의 지원방식의 다각화를 재정의 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사업·인력·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과 직적접인 예산 지출 및 수입 변동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 또한 이미 편성된 예산과 기존 인력·시설 범위에서 추진 가능

4. 작성자 : 서산시립도서관장 박 성 삼

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

서 산 시

수신 시립도서관장
(경유)
제목 「서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1. 시립도서관-4723(2026. 8. 25.)호와 관련됩니다.

2. 「서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가 족 지 원 과 장

주무관 김지영 여성정책팀장 대결 2026. 8. 27. 김영대

협조자

시행 가족지원과-27396 (2026. 8. 27.) 접수 시립도서관-4820 (2026. 8. 27.)

주 31974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 1, 가족지원과 (읍내동) / https://www.seosan.go.kr

전화번호 041-660-3021 팩스번호 041-660-2055 / coconut700@korea.kr / 비공개(5)

비전있는 희망 도시, 서산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6A충남서산043			
정 책 명	**서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부서명	시립도서관		
	담당자명	안효준	전화번호	041-661-806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6년 8월 2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시립도서관)	○ 독서 문화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규정 정비 - 민간단체 및 독서동아리 등의 독서활동 지원 범위를 경비 및 물품지원으로 확대(안 제5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서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8월 27일

서산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영/041-660-3021)

시립도서관장 귀하

라. 법제심사 결과(자치입법안 심사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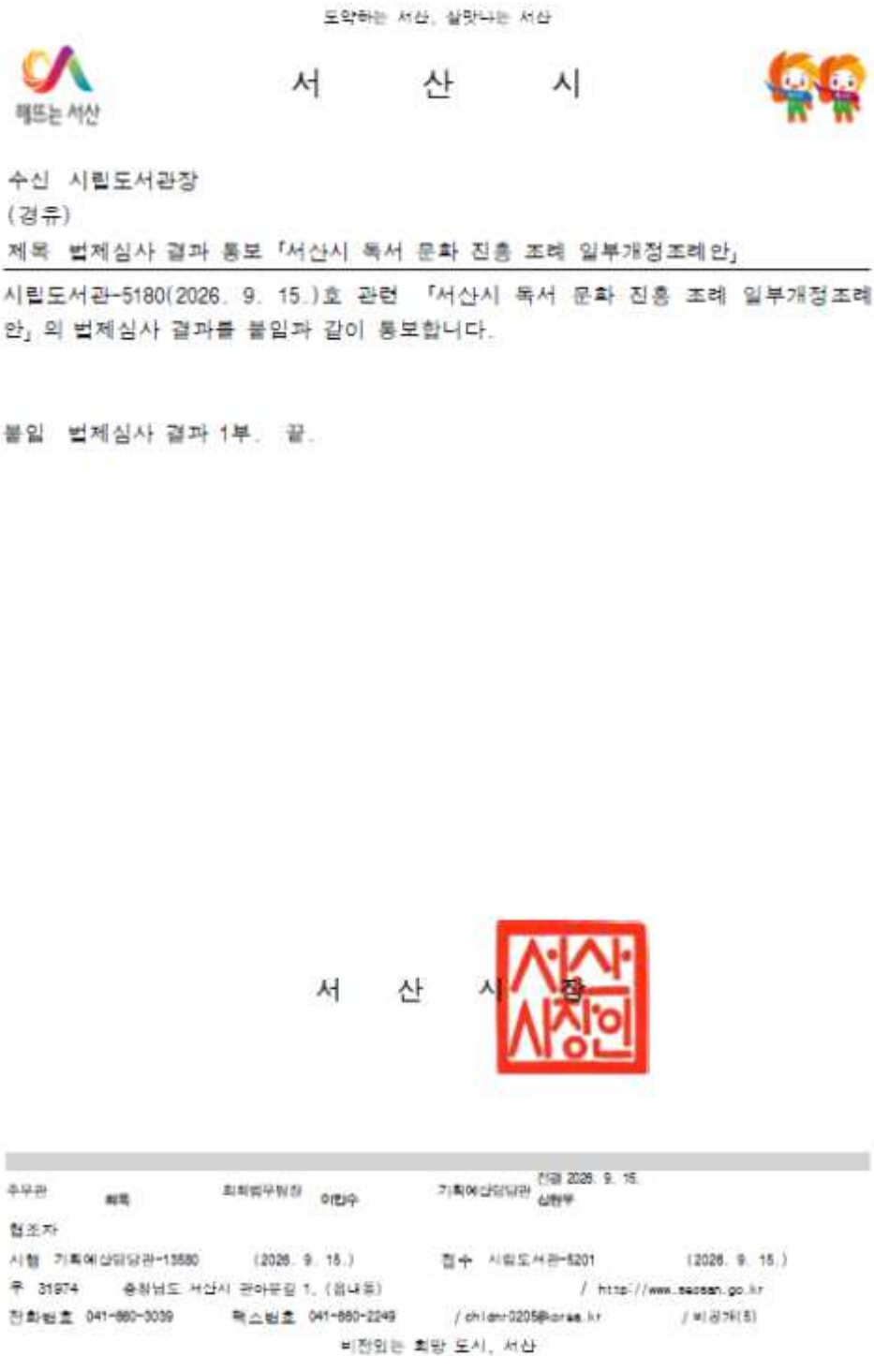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

해뜨는서산

서 산 시

수신 시립도서관장
(경유)
제목 법제심사 결과 통보「서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립도서관-5180(2026. 9. 15.)호 관련 「서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법제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붙임 법제심사 결과 1부. 끝.

서 산 시 장

주무관 최목 최희범무팀장 이한수 기획예산담당관 전결 2026. 9. 15. 심현우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담당관-13580 (2026. 9. 15.) 접수 시립도서관-5201 (2026. 9. 15.)

우 31974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 1. (읍내동) / http://www.seosan.go.kr

전화번호 041-660-3039 팩스번호 041-660-2249 / chlen0205@korea.kr / 비공개(5)

비전있는 희망 도시, 서산

자치입법안 심사조서

□ 서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사항	심사항목	심 사 세 부 내 용	심 사 결 과
선행 절차	사전협의	관련기관, 단체, 부서와 사전협의 여부	적 정
	소비자 정책심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여부	해당없음
	성별영향 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 및 관련부서 검토	적 정
	비용추계	예산비용 수반시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해당없음
	규 제	규제 해당 여부	해당없음
입법 내용	필 요 성	①새로운 자치입법 제·개정의 필요성 ②시행에 따른 문제점 여부	적 정
	적 법 성	①상위법령 위배 또는 타 자치법규와 모순 여부 ②주민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제정 시 상위법령의 근거 여부	적 정
	타 당 성	①다른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중복규정 여부 ②조 또는 항간 상치되는 부분의 존재 여부 ③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위임근거 규정 여부	적 정
입법 형식	표현방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이행 여부	적 정
	조문배열	전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의 배열 여부	적 정
	작성형식	제·개정이유, 조례안 및 관련법령 첨부 여부	적 정
부칙 규정	시 행 일	소급적용 규정 여부	해당없음
	표기요령	①권리제한, 의무부과 시 30일 이상 유예기간 규정 여부 ②경과조치규정으로 기득의 권리, 지위침해 방지 여부	해당없음
기타	행정규칙 예산관련	①관련 하위법규, 행정규칙 등을 함께 검토 여부 ②예산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재원문제 고려 여부	적 정
종합검토의견		- 민간단체 및 독서동아리 등의 독서활동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문제점 없음.	

심사를마침	심사일	2026. 9. 15.(제1329호)
	심사자	지방행정서기 최 욱
	확인자	지방행정사무관 신현우

의사일정 제13항



제3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2026. 10. 29.(목)
제 5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10. 21.
행정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10. 8.

나. 제 출 자 : 서산시장(시립도서관)

다. 회부일자 : 2026. 10. 13.

라. 심사일자 : 2026. 10. 21.

2. 제안설명 요지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과제에 따라 시립도서관 시설물 사용료 징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현행 조례는 시설물 사용 신청의 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사용료 반환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의 정당한 사용료 반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계약 해제·취소 권리를 제한할 소지가 있음

○ 이에 시설물 사용 취소·해제 시 사용료 반환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이용 제한을 개선함으로써 공공시설 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에 대한 구체적 기준 추가 (안 제8조)

나. 각 반환 조항에 “전액 반환” 추가 (안 제8조제1호, 제2호, 제3호)

다. 명시되지 않은 반한 조건에 대하여 준용할 수 있는 반환 기준 추가 (안 제8조제4호)

4. 검토의견 요지

가. 본 개정안은 시립도서관 시설물의 사용료 반환기준을 구체화하여 기존의 포괄적인 반환 제한을 완화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사항임

나. 도서관의 사정 또는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사용자의 허가취소에 따른 반환 제한을 완화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의 개선과제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개정하였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제 66 호
의결연월일	

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6. 10. 7.

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66 호

제출연월일 : 2026. 10. 7.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과제에 따라 시립도서관 시설물 사용료 징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현행 조례는 시설물 사용 신청의 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사용료 반환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의 정당한 사용료 반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계약 해제·취소 권리를 제한할 소지가 있음

○ 이에 시설물 사용 취소·해제 시 사용료 반환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이용 제한을 개선함으로써 공공시설 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에 대한 구체적 기준 추가 (안 제8조)

나. 각 반환 조항에 “전액 반환” 추가 (안 제8조제1호, 제2호, 제3호)

다. 명시되지 않은 반한 조건에 대하여 준용할 수 있는 반환 기준 추가 (안 제8조제4호)

3. 단계별 추진사항

가. 입법계획 결재 : 2026. 8. 20. (시립도서관-4692호)

나. 성별영향평가 : 2026. 8. 27. (가족지원과-27408호)

- 결　　과 : 별도 개선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2026. 8. 25. (시립도서관-4780호)

- 기　　간 : 2026. 8. 26. ~ 9. 15. (20일간)

- 공고번호 : 서산시 시립도서관 공고 제2026-13호

- 결　　과 : 의견없음

라. 법제심사 : 2026. 9. 15. (기획예산담당관-13579호)

마. 조례·규칙심의회 : 2026. 9. 22.(원안가결)

바. 시의회 의결 : 2026. 10월 중

사. 공포·시행 : 2026. 11월 중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라. 범제심사 결과

서산시 조례 제 호

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용료의 전부”를 “납부된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때”를 “경우: 전액 반환”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를 “허가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전액 반환”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4. 그 외 사용료 반환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의 체육시설업 해결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 시 必)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 ---------- 납부된 사용료----------.
1. 도서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1. ---------- 경우: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도서관 사용이 불가능 할 때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3. 신청자가 사용 5일 이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3. ---------- 허가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전액 반환
<신 설>	4. 그 외 사용료 반환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의 체육시설업 해결기준을 준용한다.

《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 「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8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도서관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신청자가 사용 5일 이전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나.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안」은 소비자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료 반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정비하는 내용으로 직접적인 예산 지출 및 수입변동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4. 작성자 : 서산시시립도서관장 박 성 삼

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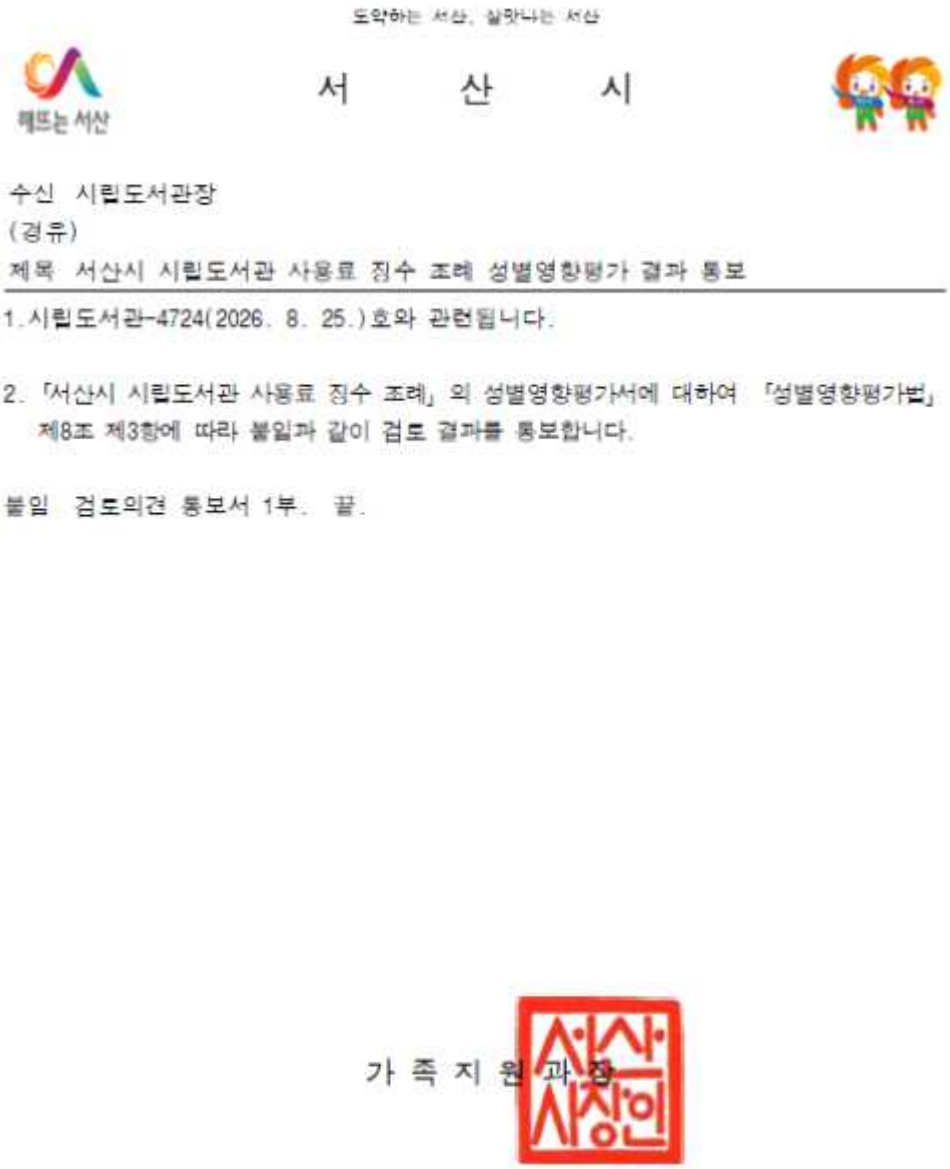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

서 산 시

수신 시립도서관장
(경유)
제목 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1. 시립도서관-4724(2026. 8. 25.)호와 관련됩니다.

2. 「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가족지원과장

서산시장인

우무관 김지영 여성정책팀장 대결 2026. 8. 27. 김영석

협조자

시행 가족지원과-27408 (2026. 8. 27.) 접수 시립도서관-4821 (2026. 8. 27.)

우 31974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 1, 가족지원과 (읍내동) / http://www.seosan.go.kr

전화번호 041-660-3021 팩스번호 041-660-2055 / coconut700@korea.kr / 비공개(5)

비전있는 희망 도시, 서산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6A충남서산042			
정 책 명	**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부서명	시립도서관		
	담당자명	안효준	전화번호	041-661-806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6년 8월 2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시립도서관)	○ 서산시 시립도서관 시설물 사용료 징수 관련 규정 정비 -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에 대한 구체적 기준 추가(안 제8조) - 각 반환 조항에 "전액 반환" 추가(안 제8조제1항,제2항,제3항) - 명시되지 않은 반환 조건에 대하여 준용할 수 있는 반환기준 추가(안 제8조제4항)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8월 27일

서산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영/041-660-3021)

시립도서관장 귀하

마. 법제심사 결과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

서 산 시

수신 시립도서관장
(경유)
제목 법제심사 결과 통보 「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립도서관-5190(2026. 9. 15.)호 관련 「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법제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붙임 법제심사 결과 1부. 끝.

서 산 시 장

주무관	최목	최목법무팀장	이한수	기획예산담당관	전결 2026. 9. 15. 심현우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담당관-13579 (2026. 9. 15.) 접수 시립도서관-5200 (2026. 9. 15.)
우 31974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 1, (읍내동) / http://www.seosan.go.kr
전화번호 041-660-3039 팩스번호 041-660-2249 / chldnr0205@korea.kr / 비공개(5)

비전있는 희망 도시, 서산

자치입법안 심사조서

□ 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사항	심사항목	심 사 세 부 내 용	심 사 결 과
선행 절차	사전협의	관련기관, 단체, 부서와 사전협의 여부	적 정
	소비자 정책심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여부	해당없음
	성별영향 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 및 관련부서 검토	적 정
	비용추계	예산비용 수반시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해당없음
	규 제	규제 해당 여부	해당없음
입법 내용	필 요 성	①새로운 자치입법 제·개정의 필요성 ②시행에 따른 문제점 여부	적 정
	적 법 성	①상위법령 위배 또는 타 자치법규와 모순 여부 ②주민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제정 시 상위법령의 근거 여부	적 정
	타 당 성	①다른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중복규정 여부 ②조 또는 항간 상치되는 부분의 존재 여부 ③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위임근거 규정 여부	적 정
입법 형식	표현방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이행 여부	적 정
	조문배열	전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의 배열 여부	적 정
	작성형식	제・개정이유, 조례안 및 관련법령 첨부 여부	적 정
부칙 규정	시 행 일	소급적용 규정 여부	해당없음
	표기요령	①권리제한, 의무부과 시 30일 이상 유예기간 규정 여부 ②경과조치규정으로 기득의 권리, 지위침해 방지 여부	해당없음
기타	행정규칙 예산관련	①관련 하위법규, 행정규칙 등을 함께 검토 여부 ②예산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재원문제 고려 여부	적 정
종합검토의견		-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받아들여 사용자가 기 납부한 사용료에 대한 반환 기준을 구체화하여 사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문제점 없음.	

심사를마침	심사일	2026. 9. 15.(제1330호)
	심사자	지방행정서기 최 욱
	확인자	지방행정사무관 신현우

의사일정 제14항



제3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2026. 10. 29.(목)
제 5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6. 10. 21.
행정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10. 8.

나. 제 출 자 : 서산시장(자치행정과)

다. 회부일자 : 2026. 10. 13.

라. 심사일자 : 2026. 10. 21.

2. 제안설명 요지

○ 대한민국 주재 교황대사 조반니 가스파리(Giovanni Gaspari)는 서산시 해미국제성지 기반 확충에 있어 교황청과 서산시 간 지속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하였음.

○ 해미국제성지 교황 재방문을 지속 추진하며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 과정 속 각국의 방문객이 해미 국제성지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음.

○ 세계청년대회 성공 개최와 교황청과의 협력 채널을 격상할 필요가 있으며, 명예시민 예우는 이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될 것임. 또한 향후 교황 방문 추진에 있어 교섭력 강화를 위해서도 서산시 명예 시민증 수여 대상으로 적합하다 판단됨.

3. 주요 내용

가.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조반니 가스파리(Giovanni Gaspari)
○ 생년월일 : 1963. 6. 6.(이탈리아)
○ 직　　책 : 주한 교황대사, 대주교

나. 추천부서 : 문화예술과

다. 추천사유 : 해미국제성지의 국제적 위상 제고

라. 세부공적

- 2024년 3월 대한민국 및 몽골 주재 교황대사로 임명된 이후 교황청과 대한민국 정부 · 한국 천주교회 간 소통과 협력 증진
- 해미국제성지의 역사적 가치와 국제적 의미를 국내외에 알리고, 교황의 해미국제성지 재방문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며, 교황청과의 소통 협력을 강화
- 다가오는 2027년 세계청년대회 준비 과정에서 세계 각국의 청년과 방문객이 해미국제성지를 찾도록 적극 협력

마. 후보자 주요약력

■ 약 력
1963년 6월 6일 이탈리아 페스카라 출생
1987년 7월 4일 이탈리아 페스카라-펜네 대교구 사제 수품
2001년 7월 1일 교황청립 외교관학교 졸업
2001~2020년 이란, 알바니아, 멕시코, 리투아니아 주재 교황대사관과 교황청 국무원 외무부에서 직무 수행
2020~2024년 앙골라와 상투메 프린시페 주재 교황대사
2024년 3월 2일 대한민국 주재 교황대사 임명(몽골 겸임)
⇒ 대한민국 내에서 교황메시지 전달 등 대리 업무 수행

【참고자료 1: 명예시민증 수여 현황】

연번	수여시기	성 명	당시 소속(직위)	공적내용	비고
1	2010. 2.	**껑준팡** (耿尊芳)	중국 안휘성 교육청 외사처장	한서대-허페이시 대학교 간 교류 및 학술·작품 교류전 등 한중 문화교류 증대에 기여	
2	2019. 12.	**정강환**	배재대학교 관광축제대학원 교수	해미읍성축제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 7년 연속 선정에 기여	
3	2021. 11.	**김수연**	(사)작은도서관 만드는사람들 대표	KB국민은행 후원 운산작은도서관 조성 선정 기반 마련에 기여	

4. 검토의견 요지

가. 본 동의안은「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2조에 따라 조반니 가스파리 주한 교황대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나. 후보자는 해미국제성지의 역사적·문화적 가치와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서산시와 교황청 간 교류·협력 기반을 확대하는데 기여함.

다. 또한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세계 각국의 방문객이 해미국제 성지를 찾을 수 있도록 협력함으로써 해미국제성지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와 서산시의 국제 교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라. 이번 명예시민증 수여는 시정 발전에 기여한 인사에 대한 예우인 동시에 향후 교황청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해미국제성지를 중심으로 한 국제 종교·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마. 관련법규와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제 87 호
의결연월일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6. 10. 06.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87 호

제출연월일 : 2026. 10. 06.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제안이유

○ 대한민국 주재 교황대사 조반니 가스파리(Giovanni Gaspari)는 서산시 해미국제성지 기반 확충에 있어 교황청과 서산시 간 지속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하였음.

○ 해미국제성지 교황 재방문을 지속 추진하며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 과정 속 각국의 방문객이 해미 국제성지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음.

○ 세계청년대회 성공 개최와 교황청과의 협력 채널을 격상할 필요가 있으며, 명예시민 예우는 이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될 것임. 또한 향후 교황 방문 추진에 있어 교섭력 강화를 위해서도 서산시 명예 시민증 수여 대상으로 적합하다 판단됨.

2. 주요내용

가.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조반니 가스파리(Giovanni Gaspari)
○ 생년월일 : 1963. 6. 6.(이탈리아)
○ 직 책 : 주한 교황대사, 대주교

나. 추천부서 : 문화예술과

다. 추천사유 : 해미국제성지의 국제적 위상 제고

라. 세부공적

- 2024년 3월 대한민국 및 몽골 주재 교황대사로 임명된 이후 교황청과 대한민국 정부 · 한국 천주교회 간 소통과 협력 증진
- 해미국제성지의 역사적 가치와 국제적 의미를 국내외에 알리고, 교황의 해미국제성지 재방문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며, 교황청과의 소통 협력을 강화
- 다가오는 2027년 세계청년대회 준비 과정에서 세계 각국의 청년과 방문객이 해미국제성지를 찾도록 적극 협력

마. 후보자 주요약력

■ 약 력

1963년 6월 6일 이탈리아 페스카라 출생
1987년 7월 4일 이탈리아 페스카라-펜네 대교구 사제 수품
2001년 7월 1일 교황청립 외교관학교 졸업
2001~2020년 이란, 알바니아, 멕시코, 리투아니아 주재 교황대사관과 교황청 국무원 외무부에서 직무 수행
2020~2024년 앙골라와 상투메 프린시페 주재 교황대사
2024년 3월 2일 대한민국 주재 교황대사 임명(몽골 겸임)
⇒ 대한민국 내에서 교황메시지 전달 등 대리 업무 수행

3. 단계별 추진사항

가.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 추천 : 2026. 9. 28. (문화예술과→자치행정과)

나. 공적심사 의결 : 2026. 10월 중

다. 시의회 의결 : 2026. 10월 중 (제316회 안건)

라. 명예시민증 수여 : 2026. 11월 중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나. 명예시민증 제도 운영 현황

다.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 공적조서

라.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이나 내국인중 출향인사, 관외거주 유공인사에게 수여하는 서산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 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천일 현재 서산시가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시정발전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 <개정 2010.12.31>
2. 서산시민 및 단체 등에 대한 각종 선행이나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사람 <개정 2010.12.31>
3. 과학, 기술, 체육, 문화예술, 기타 창작활동으로 서산시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개정 2010.12.31>
4. 서산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0.12.31>
5. 그 밖에 시장이 명예시민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0.12.31>

제3조(수여절차)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조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여 서산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수여한다.
②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경우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2016. 7. 8.>

제5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6조(명예시민증 서식과 서류보존)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내국인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되, 명예시민증 수여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이를 기록 보존한다.
② 공적에 관한 서류 등 관계서류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나. 명예시민증 제도 운영 현황

○ 근거조례 :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 수여대상(조례 제2조)

- 추천일 현재 서산시가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시정발전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
- 서산시민 및 단체 등에 대한 각종 선행이나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사람
- 과학, 기술, 체육, 문화예술, 기타 창작활동으로 서산시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 서산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사람
- 그 밖에 시장이 명예시민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수여절차

추천	⇨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	시의회 동의	⇨	수여
각 부서		자치행정과		의회		각 부서

○ 수여내용 : 명예시민증 및 서산시 기념품

○ 명예시민 예우 : 시민의 권리 행사,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

○ 명예시민증 수여 현황 : 현재까지 총 3명에게 수여

연번	수여시기	성명	당시 소속(직위)	공적내용	비고
1	2010. 2.	**껑준팡** (耿尊芳)	중국 안휘성 교육청 외사처장	한서대-허페이시 대학교 간 교류 및 학술·작품 교류전 등 한중 문화교류 증대에 기여	
2	2019. 12.	**정강환**	배재대학교 관광축제대학원 교수	해미읍성축제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 7년 연속 선정에 기여	
3	2021. 11.	**김수연**	(사)작은도서관 만드는사람들 대표	KB국민은행 후원 운산작은도서관 조성 선정 기반 마련에 기여	

○ 수여취소 : 수여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음.

다.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 공적조서

공 적 개 요 서

소 속 (주 소)	직 급 (직 위)	성 명 (연령)	근속년수	공 적 개 요
주한 교황대사관 (Apostolic Nunciature in Korea)	주한 교황대사 / 대주교	Giovanni Gaspari 조반니 가스파리 (63세)	2년 6월	○ **교황청과 대한민국 간 가교 역할 수행** - 2024년 3월 대한민국 및 몽골 주재 교황 대사로 임명 - 외교사절로 대한민국 정부와 교황청 간 긴밀한 소통 및 우호협력 관계 증진에 기여 - 국제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제교류 및 협력 기반 확대에 기여 ○ **해미국제성지의 국제적 위상 제고** - 2021년 교황청 국제순례지 선포 이후 세계적 역사·문화교류 거점으로서 위상 강화에 기여 - 해미국제성지의 역사적 가치와 국제적 의미를 국내외에 알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교류 확산에 기여 - 해미국제성지를 매개로 서산시와 교황청 간 교류·협력 여건 조성 ○ **서산시의 국제교류 및 도시 위상 강화에 기여**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해미국제성지의 세계적 인지도 확산 및 국제교류 활성화에 노력 - 교황의 해미국제성지 방문을 위한 교황청과의 소통과 협력에 함께 노력 - 해미국제성지의 세계적 인지도 향상과 서산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성공 개최 지원** - 교황청과 한국 조직위원회 간 소통·조정 - 세계청년대회 준비 및 국제협력체계 구축에 기여 - 세계 각국의 참여 확대와 교황 방한 등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국제협력 지원

공 적 조 서

| | | |

주 요 학 력 및 경 력			
⑲ 년 월 일	⑳ 학 력	㉑ 년 월 일	㉒이 력
1963.6.6	이탈리아 페스카라 출생	1987.7.4	이탈리아 페스카라-펜네 대교구 사제 수품
2001.7.1	교황청 외교업무 수행	2020. 10. 17	대주교 서품
2024. 3. 2.~현재	대한민국 및 몽골 주재 교황대사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㉓ 년 월 일	㉔ 내 용	㉕ 년 월 일	㉖ 내 용

㉗ 공 적 사 항

상기인은 교황청 외교관으로서 오랜 국제외교 경험을 바탕으로 2024년 대한민국 및 몽골 주재 교황대사에 임명된 이후 교황청과 대한민국 및 한국 천주교회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있으며, 특히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제협력과 교황청과의 소통·조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과 교황청의 국제순례지 인정으로 세계적인 천주교 순례지로 성장하고 있는 서산 해미국제성지와 2027 세계청년대회를 연계하여 서산시가 국제적인 종교·문화교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있는바 그 공적은 다음과 같음

1. 교황청과 대한민국 간 교류·협력 증진

○ 2024년 3월 대한민국 및 몽골 주재 교황대사로 임명된 이후 교황을 대리하는 외교사절로서 교황청과 대한민국 정부 및 한국 천주교회 간 주요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함

㉘ 공 적 사 항
○ 한국 교회의 주요 현안과 활동을 교황청과 공유하는 등 교황청과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함 ○ 이란・알바니아・멕시코・리투아니아 주재 교황대사관과 교황청 국무원, 앙골라 및 상투메 프린시페 주재 교황대사 등을 거친 풍부한 국제외교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과 교황청 간 우호 관계 및 종교・문화교류 확대에 기여함 **2. 해미국제성지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세계청년대회 연계 기반 강화** ○ 서산 해미국제성지는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방문한 역사적인 장소로, 이후 교황청으로부터 국제순례지로 공식 인정되어 세계적인 역사・문화교류 거점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곳임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세계 각국의 청년과 방문객이 해미국제성지를 찾을 수 있도록 그 역사적・문화적 가치와 국제적 의미를 널리 알리는 데 적극 협력하고 있음 ○ 특히 세계청년대회 기간 중 해미국제성지가 주요 방문・교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관심과 참여 확대에 노력하고, 서산시의 세계청년대회 연계사업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함 ○ 서산시가 해미국제성지를 중심으로 순례방문자센터, 문화교류센터 등 국제 방문객 수용 기반을 확충하고 있는 가운데 교황청과 서산시 간 지속적인 협력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공 적 사 항
3. 서산시의 국제교류 및 도시 위상 강화에 기여 ○ 해미국제성지를 매개로 서산시와 교황청 간 지속적인 교류·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서산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함 ○ 2027 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해미국제성지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세계 각국 청년과 방문객의 서산 방문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의사를 밝힘 ○ 특히 교황의 해미국제성지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황청과의 소통과 협력에 함께 노력할 뜻을 밝히는 등, 해미국제성지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서산시의 국제교류 확대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함 **4.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 과정에서 교황청과 한국 조직위원회 간 상시 소통 창구로서 교황청의 지침과 국내 준비 상황을 긴밀히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함 ○ 대회 프로그램 구성과 국제 청년 참여, 세계 각국과의 협력 등 세계청년대회의 주요 준비사항을 교황청 및 국내 조직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제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함 ○ 2026년 중남미·유럽 25개국 주한 외교단을 초청한 세계청년대회 국제설명회를 주관하여 세계 각국의 대회 참여와 관심을 높이고 국제 참가자들의 원활한 방한 준비를 지원함

㉘ 공 적 사 항
○ 교황청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황 방한과 국제 의전, 안전·경호 등 세계적인 규모의 행사에 필요한 준비를 지원하는 등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와 같은 공적과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바탕으로 서산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해미국제성지를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 확대에 기여하고 있어 서산시 명예시민으로 추천하고자 함

라.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명예시민증 제작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임.

4. 작성자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최 신 득

의사일정 제15항



제3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2026. 10. 29.(목)
제 5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6. 10. 21.
행정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10. 8.
나. 제 출 자 : 서산시장(세정과)
다. 회부일자 : 2026. 10. 13.
라. 심사일자 : 2026. 10. 21.

2. 제안설명 요지

○ 본 동의안은「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용) 1항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임

3. 주요 내용

가. 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2항에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조례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와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2항 1호에서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절깁 및 용도 등)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나. 지방세 연구의 필요성

-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법정 의무 출연금임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되었으며, 지방세 제도의 발전, 세원 확충 방안 연구 등 지방 재정의 근간인 지방세 분야의 전문성을 제공하는 핵심 기관임

다. 출연금 산정의 적정성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1항 1호에서 출연비율을 1만분의 1로 규정함
- 해당 법령에서 정한 출연 규모로 2027년 출연금을 19,737천원으로 책정함
- 출연 비율(1.2% ⇒ 1%)과 보통세 세입결산액이 감소함에 따라 출연금이 감소함

【기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1항 1호의 비율(1.2/10,000⇒ 1/10,000) 개정(2026. 1. 1.)】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절깁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0

라. 서산시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출연금	16,779	18,978	24,304	30,104	31,465	25,999	20,938	20,731	27,302	26,827	17,964	19,737

* 2027년도 출연금 산출내역 : 2025년도 결산 보통세 197,367,692 * 1/10,000

* 2026년도 출연금 산출내역 : 2024년도 결산 보통세 179,641,674 * 1/10,000

* 2025년도 출연금 산출내역 : 2023년도 결산 보통세 223,554,608 * 1.2/10,000

* 2024년도 출연금 산출내역 : 2022년도 결산 보통세 227,514,958 * 1.2/10,000

4. 검토의견 요지

가. 본 동의안은 서산시가 부담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나.「지방세기본법」등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출연금 산출 또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루어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제 67 호
의결연월일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6. 10. 7.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67 호

제출연월일 : 2026. 10. 7.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10,000 해당 금액을 지방세연구기관에 출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할 의무

※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에는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3항)

2.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지방재정법」 제18조

3. 주요내용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2027년도 예산에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10,000인 19,737천원을 편성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함

4. 한국지방세연구원 현황

○ 설립년월: 2011. 4월 개원

○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설립목적: 지방세·재정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

○ 인력현황

(2026. 8. 기준)

구 분	계	원장	연구관련직				사무직 시설직
			연구위원직	연구원직	조사분석직	전문직 등	
정 원	78	1	24	18	8	10	17
현 원	61	1	16	10	8	9	17
총인원	91	정원외 인원 30명 (파견공무원 12, 위촉직 연구·전문·행정원 등 18)					

5. 서산시 출연금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출연금 (351,404천원)	8,809	11,000	17,237	17,556	15,674	16,779	18,978	24,304	30,104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31,465	25,999	20,938	20,731	27,302	26,827	17,964	19,737	

※ 2027 출연금 산출: 2025년 결산 보통세 197,367,692천원 × 1.0/10,000

6. 향후계획

○ 2026. 10.: 서산시의회 의결

○ 2026. 12.: 2027년 본예산 편성 확정

참고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의사일정 제16항



제3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2026. 10. 29.(목)
제 5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6. 10. 21.
행정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10. 8.

나. 제 출 자 : 서산시장(경로장애인과)

다. 회부일자 : 2026. 10. 13.

라. 심사일자 : 2026. 10. 21.

2. 제안설명 요지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2027년 3월 종료 되고,
본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 26년 광역 10개(인천, 부산, 광중 등), 기초 34개(서산, 군산, 경주 등) 참여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체계를 갖추고자, 본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 시범사업은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 업무 대행을 하였으며,
계약 만료 기간 도래하여 위탁 기관을 재선정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위탁추진계획

- 위탁사무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 위탁예산 : 금324,000천원(국 50%, 도 15%, 시 35%)

(인건비) 자립지원 인력(5명) 기본급, 제수당, 4대보험, 퇴직적립금

(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자산취득비, 회의비, 여비 등

(사업비) 주거환경개선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보조기기 구매 지원, 건강검진비

- 위탁기간 : 2027. 4. 1 ~ 2030. 3. 31.(3년)
- 선정방법 : 수탁자 공개모집 ⇒ 사무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서산시에 소재하고 있고,「민법」제32조,「사회복지사업법」제16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의거 허가·등록된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 및 단체

○ 위탁사무내용

- 장애인의 자립조사 및 자립욕구조사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기반 조성, 자립 및 주거 전환 준비·전환·정착 과정 지원
-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의 수립 및 이행 지원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상황에 대한 평가와 사후관리
- 장애인 주거생활 서비스 지원 상황 평가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관련 상담·교육과 정보제공
- 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자립 관련 상담·교육, 복지지원 정보제공, 관련 기관 간 연계
- 그 밖에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4. 검토의견 요지

가. 본 동의안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고 자립조사,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이행 지원, 주거 전환 지원, 지역사회 정착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또한 같은법에서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 사회서비스원,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타당함

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은 대상자별 욕구에 따른 상담, 사례관리, 자립지원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마.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써 사업의 전문성 효율성 및 지속성이 확보될 것으로 사료됨

바. 2024년, 2025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평가 결과 B등급을 받음

사. 다만 관련부서에서는 위탁 이후에도 장애인의 자립 유지 여부와 서비스 연계 실적, 당사자 만족도 등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아. 상위법령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사일정 제17항



제3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2026. 10. 29.(목)
제 5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장애인 일자리센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장애인 일자리센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6. 10. 21.
행정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10. 8.

나. 제 출 자 : 서산시장(경로장애인과)

다. 회부일자 : 2026. 10. 13.

라. 심사일자 : 2026. 10. 21.

2. 제안설명 요지

○ 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 및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센터의 체계적인 운영 필요

○ 장애인일자리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참여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전문역량 활용 필요

○ 장애인복지 및 직업재활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일자리 제공에서 취업연계·사후관리까지 연계되는 통합적 장애인 고용지원체계 구축

3. 주요 내용

○ 위탁추진계획

- 위탁사무 : 장애인 일자리센터 사업
- 위탁예산 : 금77,930천원(시 100%)
  (인건비) 일자리전담인력(1명) 기본급, 제수당, 4대보험, 퇴직적립금
  (사무운영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사업비) 취업자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취업기회 확대), 바리스타 직업개발훈련
-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 선정방법 : 수탁자 공개모집

○ 위탁사무내용

- 장애인 일자리 상담 및 취업지원
- 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및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구직자 및 구인업체 발굴·연계
- 장애인 취업 후 적응 및 사후관리
- 장애인 고용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 그 밖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검토의견 요지

가. 본 동의안은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나. 「장애인복지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훈련, 취업 알선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 「서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도 시장은 장애인 일자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라. 또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서도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와 장애인 등 복지시설 및 직업훈련과 관련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등은 위탁사무로 정하고 있고, 민간 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동의안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마. 장애인의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연계, 취업 후 적응 지원 등은 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정도, 직업적 욕구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분야로, 장애인복지 및 직업재활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

바. 다만 수탁기관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및 수행체계를 갖춘 기관을 선정하고, 위탁 이후에도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와 자립 기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성과 및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사. 상위법령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제 69 호
의결연월일	

장애인 일자리센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6. 10. 6.

장애인 일자리센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69 호

제출연월일 : 2026. 10. 6.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 및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센터의 체계적인 운영 필요

○ 장애인일자리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참여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전문역량 활용 필요

○ 장애인복지 및 직업재활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일자리 제공에서 취업연계·사후관리까지 연계되는 통합적 장애인 고용지원체계 구축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 서산시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위탁사무의 내용

○ 장애인일자리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장애인 일자리 상담 및 취업지원
- 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및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구직자 및 구인업체 발굴·연계
- 장애인 취업 후 적응 및 사후관리
- 장애인 고용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 그 밖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위탁 추진 계획

○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2027년 예산액 : 금77,930천원(시 100%)

- (인건비) 일자리전담인력(1명) 기본급, 제수당, 4대보험, 퇴직적립금
- (사무운영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 (사업비) 취업자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취업기회 확대), 바리스타 직업개발훈련

▢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장애인 취업상담·직업훈련·취업연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과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적정함

○ 민간기관의 전문인력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 장애인의 안정적인 취업 및 직업생활 지원을 위한 공익적 사무로, 민간위탁 후에도 시의 지도·감독을 통해 공공성과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위탁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

▢ 그동안 추진현황

○ 2025. 9. 서산시 장애인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

○ 2025. 12. 서산시 장애인일자리센터 개소

○ 장애인복지관 내 직업지원팀을 조직개편하여 통합운영중

▢ 의회 동의사항

○ 장애인 일자리 센터 사업 민간위탁 여부

관 련 법 규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 · 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서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장애인 일자리센터 설치 · 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 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한다.

1. 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직업재활 등 일자리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2.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 제공 및 관련 전산망 구축 등 취업 지원 · 알선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체에서의 현장훈련 등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4. 취업 후 적응 지원 등 직업적응훈련과 사후지원에 관한 사항
5.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관내 기관, 지역 내 교육기관, 민간단체, 사업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고용현황 및 취업 욕구 등에 대한 조사 · 연구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홍보 · 교육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적합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센터 관리 · 운영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거 허가 · 등록된 단체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관리 ·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 받는 기관의 장이 센터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 ·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의사일정 제18항



제3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2026. 10. 29.(목)
제 5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서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서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6. 10. 21.
행정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10. 8.

나. 제 출 자 : 서산시장(가족지원과)

다. 회부일자 : 2026. 10. 13.

라. 심사일자 : 2026. 10. 21.

2. 제안설명 요지

○ 서산시가족센터의 위탁 기간(2022. 1. 1. ~ 2026. 12. 31.)이 만료됨에 따라 가족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 위탁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 위탁시설개요

- 시 설 명 : 서산시가족센터
- 위　　치 : 서산시 석림1로 85
- 수 탁 자 : (재) 서산시복지재단
- 위탁기간 : 2022. 1. 1 ～ 2026. 12. 31.(5년)

- 위탁시설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 2,247.26㎡ (680평)
- 위탁시설현황

구 분	면 적(㎡)	세 부 시 설
지하	2,247.26	환경미화원실(1), 창고(2), 서고(1), 방재실(1), 기계실(1)
1층		언어발달교실(1), 동아리실(1), 공동육아나눔터(1), 장난감도서관(1), 수유실(1), 북카페(1)
2층		요리실(1), 다이닝테라스(1), 북카페라운지(1), 사무실/센터장실/회의실/직원휴게실/탕비실(각1), 상담실(2), 다함께돌봄센터(1)
3층		프로그램실(4), 유아쉼터(1), 휴게테라스(1), 옥상

- 공동육아나눔터현황

구 분	면적(㎡)	소 재 지	개소일	비 고
동문동 공동육아나눔터	54.94	서산시 서령로 136, 2층 (서산문화복지센터)	18.3.23.	27.1.1. 폐점예정
성연면 공동육아나눔터	70.5	서산시 성연3로 76, 1층 (힐스테이트 서산 커뮤니티센터)	19.7.10.	
석남동 공동육아나눔터	76.3	서산시 동서1로 130, 2층 (센스빌아파트 관리동)	19.7.24.	
석림동 공동육아나눔터	87.21	서산시 석림1로 85 (서산시가족센터 내 1층)	22.11.28.	

○ 예산지원현황

연도별	계	보조금			비 고
		국비	도비	시비	
2022	2,283,146	924,349	248,819	1,109,978	
2023	2,455,886	982,366	276,082	1,197,438	
2024	4,409,912	2,234,882	488,240	1,686,790	
2025	5,553,749	3,024,133	619,599	1,910,017	
2026	6,636,253	3,800,075	690,586	2,145,592	

○ 위탁추진계획

- 위탁사무 : 서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 위탁기간 : 2027. 1. 1 ~ 2031. 12. 31.(5년)
- 선정방법 : 수탁자 공개모집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

○ 위탁사무내용

- 서산시가족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가족문화 운동의 전개
-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
-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
-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관계·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4. 검토의견 요지

가. 본 동의안은 서산시가족센터의 기존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27년부터 5년간 가족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건강가정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등에 따라 가족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타당함

다. 또한「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서도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와 장애인 등 복지시설 및 직업훈련과 관련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등은 위탁사무로 정하고 있고, 민간 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동의안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라. 가족센터는 가족상담, 교육. 다문화가족 지원, 돌봄 및 통역·번역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

마. 상위법령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제 70 호
의결연월일	

서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6. 10. 6.

서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70 호

제출연월일 : 2026. 10. 6.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제안이유

○ 서산시가족센터의 위탁 기간(2022. 1. 1. ~ 2026. 12. 31.)이 만료됨에 따라 가족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 위탁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추진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가족센터의 설치)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가정센터의 위탁운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 서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6조(위탁운영)
○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4조(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및 제8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3. 위탁사무의 내용

○ 위탁사무명 : 서산시가족센터 관리 운영
- 서산시가족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가족문화 운동의 전개
-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
-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
-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관계·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4.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 서산시가족센터
○ 위　　치 : 서산시 석림1로 85
○ 수 탁 자 : (재)서산시복지재단
○ 위탁기간 : 2022. 1. 1 ~ 2026. 12. 31.(5년)
※위탁 대상기간 : 2027. 1. 1. ~ 2031. 12. 31.(5년간)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위　　치 : 서산시 석림1로 85
○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 / 2,247.26㎡ (680평)
○ 시설현황

구 분	면 적(㎡)	세 부 시 설
지하	2,247.26	환경미화원실(1), 창고(2), 서고(1), 방재실(1), 기계실(1)
1층		언어발달교실(1), 동아리실(1), 공동육아나눔터(1), 장난감도서관(1), 수유실(1), 북카페(1)
2층		요리실(1), 다이닝테라스(1), 북카페라운지(1), 사무실/센터장실/회의실/직원휴게실/탕비실(각1), 상담실(2), 다함께돌봄센터(1)
3층		프로그램실(4), 유아쉼터(1), 휴게테라스(1), 옥상

○ 공동육아나눔터현황

구　분	면적(㎡)	소 재 지	개소일	비 고
동문동 공동육아나눔터	54.94	서산시 서령로 136, 2층 (서산문화복지센터)	18.3.23.	27.1.1. 폐점예정
성연면 공동육아나눔터	70.5	서산시 성연3로 76, 1층 (힐스테이트 서산 커뮤니티센터)	19.7.10.	
석남동 공동육아나눔터	76.3	서산시 동서1로 130, 2층 (센스빌아파트 관리동)	19.7.24.	
석림동 공동육아나눔터	87.21	서산시 석림1로 85 (서산시가족센터 내 1층)	22.11.28.	

❍ 직원현황 : 27명



❍ 예산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계	보조금			비 고
		국비	도비	시비	
2022	2,283,146	924,349	248,819	1,109,978	
2023	2,455,886	982,366	276,082	1,197,438	
2024	4,409,912	2,234,882	488,240	1,686,790	
2025	5,553,749	3,024,133	619,599	1,910,017	
2026	6,636,253	3,800,075	690,586	2,145,592	

❍ 그동안 위탁 현황

- 2008. 2. 1. ~ 2009. 12. 31. : 서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
- 2010. 1. 1. ~ 2012. 12. 31. : 서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
- 2013. 1. 1. ~ 2015. 12. 31. : 서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
- 2016. 1. 1. ~ 2018. 12. 31. : (재)서산시복지재단
- 2019. 1. 1. ~ 2021. 12. 31. : (재)서산시복지재단
- **2022. 1. 1. ~ 2026. 12. 31. : (재)서산시복지재단**

5. 민간위탁 추진 계획

○ 기　　간 : 2027. 1. 1. ~ 2031. 12. 31.(5년)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0조 >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무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6. 향후 추진사항

○ 2026. 10.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안 가결

○ 2026. 10.　수탁자 모집 공고

○ 2026. 11.　수탁자 선정 심사

○ 2026. 12. 위·수탁 협약 체결

○ 2027.　1.　민간위탁 실시

가. 【관련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 ·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25. 10. 1.>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 · 가정학 · 여성학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④ 센터의 조직 · 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 ·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센터의 운영은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2025. 10. 1.>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제35조의2(가족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가정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가정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6. 7., 2025. 10. 1., 2025. 10. 23.>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5. 19.>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위탁·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의 사업수행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지원센터 설치 · 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8.>

○ 서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시설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시장은 소관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1. 8. 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8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7조의 위탁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8. 1.>

②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종료일 90

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8. 1.>

③ <삭제 2021. 8. 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제출하는 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

1. 위탁사무명
2.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개정 2021. 8. 1.>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개정 2021. 8. 1.>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6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개정 2021. 8. 1.>
9.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8. 1.>

의사일정 제19항



제3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2026. 10. 29.(목)
제 5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서산시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서산시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6. 10. 21.
행정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10. 8.

나. 제 출 자 : 서산시장(가족지원과)

다. 회부일자 : 2026. 10. 13.

라. 심사일자 : 2026. 10. 21.

2. 제안설명 요지

○ 서산시 청소년수련시설(서산문화복지센터, 성연청소년문화의집, 해미청소년문화의집)의 위탁기간이 2026.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위탁을 재계약 및 갱신하여 청소년 대상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 위탁시설개요

- 시 설 명 : 서산문화복지센터, 해미청소년문화의집, 성연청소년문화의집(3개소)
- 수 탁 자 : (재)서산시복지재단 (이사장 김원균)

- 위탁시설현황

구 분	서산문화복지센터	해미청소년문화의집	성연청소년문화의집
위 치	서령로 136(동문동)	성지3길 33(해미면)	성연5로 92-33(성연면)
개관일	2012. 12. 07.	2006. 04. 07.	2024. 12. 14.
직원수 (정원)	27명	6명	9명
위탁기간	24.1.1.~ 26.12.31.		24.3.13.~ 26.12.31.
시설 면적	대지 24,618㎡ / 건평 6,928.9㎡ A동(지하1~지상2), B동(지상3층)	대지 1,626㎡ / 건평 1,122㎡ 지상4층	대지 3,846.7㎡/ 연면적1,435,79㎡ 지하1층 ~ 지상3층
2026 예산 (위탁금)	2,410,180천원	539,996천원	846,298천원

※ 청소년카페: 2027년 초록광장 내 신규 청소년카페 조성 예정, 서산문화복지센터
위탁사무에 포함하여 통합 운영

○ 위탁추진계획

- 위탁사무 : 서산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 위탁방법 : 재계약 및 갱신
- 선정방법 : 성과평가 및 사무위탁심의위원회 심의

○ 위탁사무내용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청소년 참여활동 및 자치활동 지원
- 청소년카페 운영 및 관리 ※ 신규 청소년카페 포함(초록광장 내)

- 시설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 시설 대관 및 이용관리
- 그 밖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업무

○ 수탁자 선정방법
- 심의방법 : 서산시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서면심의
- 심 의 일 : 2026. 9. 21. ~ 10. 6
- 심의결과

위탁 시설명	법인명	평 점	비 고
서산문화복지센터	(재)서산시복지재단	95.7	
해미청소년문화의집	(재)서산시복지재단	94	
성연청소년문화의집	(재)서산시복지재단	93	

※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 산출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재위탁

4. 검토의견 요지

가. 본 동의안은 서산시 청소년 수련시설 3개소의 기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대상 서비스의 연속성과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나.「청소년활동 진흥법」「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소년단체에 위탁 할 수 있고

다.「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단에 우

선하여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라.「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도 수탁자의 성과를 평가한 후 두 차례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바. 청소년 수련시설은 시설 관리 뿐만 아니라 청소년 지도, 자치활동, 동아리 및 문화 활동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관련 전문인력과 운영경험을 갖춘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행정의 전문성 및 서비스의 연속성 측면에서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

사. 또한 서산시 청소년 수련시설 3곳의 민간위탁 성과 평가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함

아. 상위법령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제 71 호
의결연월일	

서산시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6. 10. 6.

서산시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71 호

제출연월일 : 2026. 10. 6.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제안이유

○ 서산시 청소년수련시설(서산문화복지센터, 성연청소년문화의집, 해미청소년문화의집)의 **위탁기간이 2026.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위탁을 **재계약 및 갱신**하여 청소년 대상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추진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운영의 위탁)
○ 서산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재단의 사업) 및 제13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및 제19조(재계약)

3. 위탁사무의 내용

○ 위탁사무명: 서산시 청소년수련시설(서산문화복지센터, 성연청소년문화의집, 해미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청소년 참여활동 및 자치활동 지원

- 청소년카페 운영 및 관리 ※ 신규 청소년카페 포함(초록광장 내)
- 시설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 시설 대관 및 이용관리
- 그 밖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업무

나. 4. 위탁시설 개요

○ 대상시설: 3개소(서산문화복지센터, 해미청소년문화의집, 성연청소년문화의집)
○ 수 탁 자: 서산시복지재단 / 설립일 2011. 12. 22.
○ **위탁기간: 2027. 1. 1. ~ 2029. 12. 31.(3년)**
○ 위탁방법: 재계약 및 갱신
○ 선정방법: 성과평가 및 사무위탁심의위원회 심의
○ 시설현황

구 분	서산문화복지센터	해미청소년문화의집	성연청소년문화의집
위 치	서령로 136(동문동)	성지3길 33(해미면)	성연5로 92-33(성연면)
개관일	2012. 12. 07.	2006. 04. 07.	2024. 12. 14.
직원수 (정원)	27명	6명	9명
위탁법인	(재)서산시복지재단(이사장 김원균)		
위탁기간	24.1.1.~ 26.12.31.		24.3.13.~ 26.12.31.
시설 면적	대지 24,618㎡ / 건평 6,928.9㎡ A동(지하1~지상2), B동(지상3층)	대지 1,626㎡ / 건평 1,122㎡ 지상4층	대지 3,846.7㎡/ 연면적1,435,79㎡ 지하1층 ~ 지상3층
2026 예산 (위탁금)	2,410,180천원	539,996천원	846,298천원

※ 청소년카페: 2027년 초록광장 내 신규 청소년카페 조성 예정, 서산문화복지센터 위탁사무에 포함하여 통합 운영

4. 수탁자 선정방법

○ 심의방법: 서산시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서면심의(위원 6명)

○ 심 의 일: 2026. 9. 21.(월) ~ 10. 6.(화)

○ 심의결과

위탁 시설명	법인명	평 점	비 고
서산문화복지센터	(재)서산시복지재단	95.7	
해미청소년문화의집	(재)서산시복지재단	94	
성연청소년문화의집	(재)서산시복지재단	93	

※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 산출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재위탁

5. 그동안 추진사항

○ 2026. 8. 시설별 성과평가 실시

○ 2026. 8. 민간위탁 재계약 및 갱신 추진계획 수립

○ 2026. 9. 재위탁심의위원회 서면 심의(4개 지표 8개 항목)

6. 향후 추진일정

○ 2026. 10. 시의회 동의안 의결

○ 2026. 11. 위수탁 협약 체결

○ 2027. 1. 위탁 운영 개시

다. 【관련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계약의 기간·조건·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되,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청소년 문화의 집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청소년 문화의 집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와 인력을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한 경우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두 차례 이상 갱신할 수 있다.

○ 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시설 운영
2. 지역사회복지정책조사・연구・개발
3. 복지시설 간 연계 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프로그램 개발 운영
4. 취약계층 및 재난 재해 가정을 위한 긴급 지원사업 등
5.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6.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초등학생돌봄센터 운영
7. 재단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부대사업
8. 그밖에 서산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나 대행하는 사업

제13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②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위탁기간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연장계약은 1회에 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7조에 따른 처리상황의 감사 및 시정조치 결과, 제28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의사일정 제20항



제3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2026. 10. 29.(목)
제 5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6. 10. 21.
행정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10. 8.

나. 제 출 자 : 서산시장(가족지원과)

다. 회부일자 : 2026. 10. 13.

라. 심사일자 : 2026. 10. 21.

2. 제안설명 요지

○ 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 10.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역 내 육아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써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 위탁시설개요

- 시 설 명 : 서산육아종합지원센터
- 위　　치 : 서산시 석림1로 81 (석림동)
- 수 탁 자 : (재) 서산시복지재단 (이사장 김원균)
- 위탁기간 : 2021. 11. 1 ~ 2026. 10. 31.(5년)
- 위탁시설규모 : 지상3층 / 1,638㎡
- 위탁시설현황

구 분	면적(㎡)	내 용
1층	545.35	시간제 보육실, 수면실, 상담실, 의무실, 임산부 휴게실, 영아·유아 놀이터, 장난감 보관실 등
2층	545.35	프로그램 체험실, 장난감 보관실, 육아 북카페, 놀이 체험실, 용역원실 등
3층	548.29	사무실, 센터장실, 세미나실, 공연장 등

○ 위탁추진계획

- 위탁사무 :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 위탁예산 : 금942,947천원(시 100%)

(단위 : 천원)

총 계	인건비	사무운영비	활성화 사업비
942,947천원	515,170	147,679	280,098

- 위탁기간 : 2026. 11. 1 ~ 2031. 10. 31.(5년)
- 선정방법 : 서산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위원 8명)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보호자, 공익대표로 구성)
- 심의결과 : 심의 결과 94.5점으로 재위탁 적정 심의 의결

○ 위탁사무내용

- 시설의 사용 및 유지, 안전관리
-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
- 보육에 관한 정보수집 · 제공
-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제공
-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 · 상담 · 치료연계 지원
- 보호자 및 보육 교직원 교육 지원

-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
-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4. 검토의견 요지

가. 본 동의안은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영유아보육법」「서산시 영유아 보육조례」및「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민간 위탁의 법적 근거가 있어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 또한「서산시 영유아 보육조례」에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또한 동의안의 취지와 일치함

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 및 육아 지원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 어린이집·보호자·보육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상담·교육·컨설팅 및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마. 상위법령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제 72 호
의결연월일	

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6. 10. 6.

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72 호

제출연월일 : 2026. 10. 6.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제안이유

○ 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 10.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역 내 육아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써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3(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3조(기능)
○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7조(위탁계약)

라. 3. 위탁사무의 내용

○ 위탁사무명 : 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 운영
- 시설의 사용 및 유지, 안전관리
-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
- 보육에 관한 정보수집・제공
-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제공
-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연계 지원
- 보호자 및 보육 교직원 교육 지원

마. 4.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 서산육아종합지원센터

○ 위　　치 : 서산시 석림1로 81 (석림동)

○ 수 탁 자 : 재단법인 서산시복지재단(대표 김원균)

○ 위탁기간 : 2021. 11. 01. ~ 2026. 10. 31.(5년간)

※재위탁 대상기간 : 2026. 11. 01. ~ 2031. 10. 31.(5년간)

○ 운영재원 : 시비 100%

○ 예산액 : 금942,947천원

- 인건비 : 515,170천원 (55%)
- 운영비 : 147,679천원 (16%)
- 사업비 : 280,098천원 (30%)

○ 시설현황

- 종사자 : 10명(센터장 1, 보육전문요원 3, 상담전문요원 1, 행정원 1,
시설직 1, 운영요원 2, 미화원 1)

＊ 기타 종사자 : 시간제교사 5, 대체교사 4, 사회복무요원 2

- 연면적 : 1,638㎡
- 주요시설

구 분	면적(㎡)	내　　용
1층	545.35	시간제 보육실, 수면실, 상담실, 의무실, 임산부 휴게실, 영아·유아 놀이터, 장난감 보관실 등
2층	545.35	프로그램 체험실, 장난감 보관실, 육아 북카페, 놀이 체험실, 용역원실 등
3층	548.29	사무실, 센터장실, 세미나실, 공연장 등

5. 수탁자 선정방식

○ 심의방법 : 서산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위원 8명)

-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보호자, 공익대표 구성

○ 심 의 일 : 2026. 8. 31.(월)

○ 심의결과 : 심의 결과 94.5점으로 재위탁 적정 심의 의결

※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 산출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재위탁

바. 6. 그동안 추진사항

○ 기존위탁 세부내역

- 2021. 3. 17.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의결
- 2021. 9. 15.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 2021. 10. 21. 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
  - 2026. 7. 22. 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성과평가 실시
    (8개분야 21개지표 평가점수 91.5점 ⇒ 적합)
- 2026. 8. 13. 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수립
  - 2026. 8. 31. 서산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실시
    (5개분야 7개항목 평가점수 94.5점 ⇒ 선정 의결)

○ 위탁금 지원내역(최근 5년)

(단위 : 천원)

지원연도	지원액	지원연도	지원액
2021년	42,606	2024년	913,948
2022년	588,407	2025년	911,298
2023년	865,572	2026년	942,947

사.

아. 7. 재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매년 1회 감사 실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27조 및 제28조)

- 2022. 5. 12. 민간위탁금 정산 및 연간 운영실적 점검(⇒양호)
- 2023. 5. 12. 민간위탁금 정산 및 연간 운영실적 점검(⇒양호)
- 2024. 4. 30. 민간위탁금 정산 및 연간 운영실적 점검(⇒양호)
- 2025. 4. 17. 민간위탁금 정산 및 연간 운영실적 점검(⇒양호)
- 2026. 3. 19. 민간위탁금 정산 및 연간 운영실적 점검(⇒양호)

○ 서산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3조)

- 2026. 8. 31. 서산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점수 94.5점으로 민간 재위탁 적합으로 심의 의결

자. 8. 향후 추진일정

○ 의원정책간담회 동의안 의결 : 2026. 10. 2.(금)

○ 위·수탁 협약 체결 : 2026. 10월 중

○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운영 : 2026. 11. 1. ~ 2031. 10. 31.

차.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3.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제공
4.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연계 지원
5. 제9조의2에 따른 보호자 교육 지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교직원 교육 제공

가.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나. 제23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

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6의2.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

7.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8.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

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제2호의2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

1의2. 제9조의3에 따른 보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

2의2. 어린이집에 임면되는 보육교직원의 제16조·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결격기간에 관한 정보(보육교직원의 제46조·제47조에 따른 자격정지,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자격재교부금지기간 및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의 관리 지원

3.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업무

4.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

5.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

②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3(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①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육아종합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표자의 경력사항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 · 단체 등의 보육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 · 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
7. 향후 5년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도서 · 벽지 · 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조례 제17조(운영의 위탁)

①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수탁내용, 선정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위탁기관은 영 제26조의2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의사일정 제21항

마음을 따뜻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제3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2026. 10. 29.(목)
제 5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서산생활문화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서산생활문화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6. 10. 21.
행정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10. 8.

나. 제 출 자 : 서산시장(문화예술과)

다. 회부일자 : 2026. 10. 13.

라. 심사일자 : 2026. 10. 21.

2. 제안설명 요지

○ 서산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기간이 2026.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현재 수탁기관인 (재)서산문화재단에 재위탁하고자 함

○ 이에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 내용

○ 위탁시설개요

- 시 설 명 : 서산생활문화센터 (2014. 9. 18. 개관)
- 위　　치 : 서산시 호수공원 1로 22, 동방빌딩 6층
- 임차기간 : 2014. 9. ~ 2027. 6. (보증금 450백만원, 월임차료 247천원)

【전세권 설정 등기 완료 후 공유재산으로 등록되어 관리됨】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 위탁시설규모 : 연면적 264㎡
- 근무인원 : 2인(교대근무)
- 운영시간 : 평일 09:00 ～ 21:00(토・일・공휴일 휴관)
- 위탁시설현황

구 분	면적(㎡)	내 용
6층	264	다목적실 및 무대(70㎡), 동아리연습실 1(24㎡), 동아리방 2(28㎡), 북카페 및 홀(142㎡)

- 누적 방문 인원 현황

기 간	일평균	월평균	누 계	비 고
계			58,143	
2024. 1. 1. ~ 2024. 12. 31.	90	1,800	21,600	
2025. 1. 1. ~ 2025. 12. 31.	100	2,078	24,940	
2026. 1. 1. ~ 2026. 06. 30.	96	1,933	11,603	

○ 재위탁 추진 계획

- 위탁사무 : 서산생활문화센터 재위탁
- 위탁예산 : 금133,573천원

(단위 : 천원)

총 계	인건비	사무운영비	활성화 사업비
133,573천원	79,893	37,680	16,000

-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 위탁방법 : 공공위탁(수의계약)

○ 위탁사무내용
- 서산생활문화센터 운영 전반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4. 검토의견 요지

가. 본 동의안은 서산생활문화센터의 기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문화시설의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재)서산문화재단에 시설과 관리사무를 재위탁하여 시민의 생활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시설 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지방자치법」「지방출자·출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산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조례」「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등에 명시된 공공위탁의 법적 근거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 서산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 출연기관으로 문화시설 운영 및 문화진흥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존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경험과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라. 또한 2019년 6월에 실시한「서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에서 생활문화센터의 업무는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음

마. 상위법령 및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제 73 호
의결연월일	

서산생활문화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6. 10. 06.

서산생활문화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73 호

제출연월일 : 2026. 10. 06.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제안이유

○ 서산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기간이 2026.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현재 수탁기관인 (재)서산문화재단에 재위탁하고자 함

○ 이에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7조의 위탁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 서산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사업의 위탁 대행)

3. 위탁시설 현황

○ 시 설 명 : 서산생활문화센터 (2014. 9. 18. 개관)

○ 소 재 지 : 서산시 호수공원 1로 22, 동방빌딩 6층

○ 임차기간 : 2014. 9. ~ 2027. 6. (보증금 450백만원, 월임차료 247천원)

○ 규 모 : 연면적 264㎡

○ 주요시설 : 다목적실 및 무대(70㎡), 동아리연습실 1(24㎡), 동아리방2(28㎡), 북카페 및 홀(142㎡)

○ 위탁범위 : 서산생활문화센터 운영 전반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 근무인원 : 2인 ※ 교대근무

○ 운영시간 : 평일 9:00 ~ 21:00 ※ 토·일·공휴일 휴관

○ 누적 방문인원

카.

기 간	일평균	월평균	누 계	비 고
2024. 1. 1. ~ 2024. 12. 31.	90	1,800	21,600	
2025. 1. 1. ~ 2025. 12. 31.	100	2,078	24,940	
2026. 1. 1. ~ 2026. 6. 30.	96	1,933	11,603	
총 계			58,143	

4. 재위탁 계획

○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 수탁업체 : (재)서산문화재단

○ 위탁방법 : 공공위탁(수의계약)

○ 소요예산(안) : 133,573천원

※ (인건비) 79,893천원, (사무관리비) 37,680천원, (사업비) 16,000천원

5. 적정성 검토

○ **위탁 조건 부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위탁 가능
- 시민의 권리·의무 등에 직접 관련된 사무가 아니므로 직영보다는 위탁 운영이 적정

○ **위탁 지속 필요성**

-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관리를 전문기관에 일원화함으로써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출연기관인 (재)서산문화재단에 대한 시의 지도·감독을 통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함

○ **수탁기관의 적정성**

- (재)서산문화재단은 문화예술 관련 사업 및 시설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조직 기반을 갖추고 있음

-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 사업의 통합·연계 운영을 통해 사업 간 시너지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객관적 성과평가 결과**

- 생활문화센터는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과 생활문화 참여를 지원하고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시설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음
- 기존 운영성과와 업무의 연속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서산문화재단에 재위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6. 참고사항 (수탁기관 선정방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서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서도 시장이 문화예술 관련 사업 등을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서산시 출연기관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재)서산문화재단에 서산생활문화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 사무를 재위탁하는 것이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및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서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2019.6월), 생활문화센터 업무는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정

타. ※ 참고자료(관련법령)

구 분	내 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5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지방출자 출연법	제2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시장은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위탁 대상사무) 제4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제8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7조의 위탁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산 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사업의 위탁 대행) 재단은 국가, 충청남도 또는 시의 문화시설운영 또는 문화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 부담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의사일정 제22항

마음을 따뜻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제3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2026. 10. 29.(목)
제 5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문화교류플랫폼 공공위탁 동의안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문화교류플랫폼 공공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6. 10. 21.
행정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10. 8.

나. 제 출 자 : 서산시장(문화예술과)

다. 회부일자 : 2026. 10. 13.

라. 심사일자 : 2026. 10. 21.

2. 제안설명 요지

○ 문화교류플랫폼 준공 및 이관 예정에 따라 효과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재)서산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 위탁시설개요

- 시 설 명 : 문화교류플랫폼
- 위　　치 : 서산시 번화3길 6-4 (동문동 958-1)
- 임차기간 : 2014. 9. ~ 2027. 6. (보증금 450백만원, 월임차료 247천원)
- 위탁기간 : 2021. 11. 1 ~ 2026. 10. 31.(5년)
- 위탁시설규모 : 연면적 1,254㎡ / 지상4층
- 근무인원 : 4인(교대근무)

- 운영시간 : 월 ~토 09:00 ~ 21:00 (일・공휴일 휴관)
- 위탁시설현황

구 분	면적(㎡)	내 용
1층	1,254㎡	사무실, 레지던시 작업실
2층		전통문화 프로그램실, 생활문화 교육실
3층		소공연장, 다목적실
4층		소방시설(물탱크)

○ 위탁 추진 계획

- 위탁사무 : 문화교류플랫폼 위탁
- 위탁예산 : 금275,796천원

(단위 : 천원)

총 계	인건비	사무운영비	활성화 사업비
275,796천원	157,922	87,874	30,000

-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 위탁방법 : 공공위탁(수의계약)

○ 위탁사무내용

- 문화교류플랫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시설물 관리 등

4. 검토의견 요지

가. 본 동의안은 준공 후 이관 예정인 문화교류플랫폼의 관리·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재)서산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나.「지방자치법」「지방출자·출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산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조례」「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등에 명시된 공공위탁 및 위탁방법등의 법적 근거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 문화교류플랫폼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되어 도시과에서 이관될 예정으로, 2027년부터 운영할 계획임

라. 문화예술 창작과 레지던시 운영, 각종 프로그램등이 진행될 예정으로

마. 유사 시설의 운영 경험이 있고 전문성을 갖춘 (재)서산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바. 또한 문화교류풀랫폼은 위탁 운영이 적정하다는 운영관리 원가산정 용역 결과가 있었음

사. 상위법령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제 74 호
의결연월일	

문화교류플랫폼 공공위탁 동의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6. 10. 06.

문화교류플랫폼 공공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74 호

제출연월일 : 2026. 10. 06.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제안이유

○ 문화교류플랫폼 준공 및 이관 예정에 따라 효과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재)서산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제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7조의 위탁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 서산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사업의 위탁 대행)

3. 운영계획

○ 시 설 명 : 문화교류플랫폼
○ 소 재 지 : 서산시 번화3길 6-4(동문동 958-1)
○ 규 모 : 연면적 1,254㎡ 지상4층
○ 주요시설 : 레지던시 작업실, 프로그램실, 생활문화 교육실, 소공연장 등
○ 위탁내용 : 문화교류플랫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시설물 관리 등
○ 근무인원 : 4인 ※ 교대근무
○ 운영시간 : 월 ~ 토 9:00 ~ 21:00 ※ 일·공휴일 휴관

○ 공간별 운영계획

구 분		운영계획
1층	사무실	운영 및 시설관리
	레지던시 작업실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및 시민 참여 프로그램
2층	전통문화 프로그램실	전통문화 전승·교육 프로그램 (중고제, 내포제시조, 승무, 앉은굿 등)
	생활문화 교육실	생활문화 프로그램(수공예, 문학, 댄스 등)
3층	소공연장	공연·전시·문화행사
	다목적실	회의·워크숍 및 문화예술 네트워크

※ 4층 소방시설(물탱크) 보관으로 일반이용 불가

4. 위탁 계획

○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 수탁업체 : (재)서산문화재단

○ 소요예산(안) : 275,796천원 ※ 2027년 본예산 심의·의결에 따라 변경가능

※ (인건비) 157,922천원, (사무운영비) 87,874천원, (사업비) 30,000천원

5. 적정성 검토

○ **위탁사무의 적정성**

- 문화교류플랫폼 운영은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문화서비스 제공 및 시설관리 사무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함

○ **전문기관 위탁 필요성**

- 문화교류플랫폼은 레지던시, 생활문화, 공연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로, 시설관리 뿐만아니라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역량이 요구됨
-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문화예술인과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설의 효율적·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함

○ **수탁기관의 적정성**

- (재)서산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산시 출연기관으로, 문화예술 사업의 기획·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조직 기반을 갖추고 있음
- 기존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 사업과의 연계·통합 운영을 통해 사업 간 시너지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운영방안 검토결과**

- 「문화교류플랫폼 원가산정 및 운영방안 용역」(2026. 9.) 결과,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문화예술 사업 간 연계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재)서산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 설립 목적과 시설의 특성, 전문성 및 운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공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6. 수탁기관 선정방법 검토

○ 문화교류플랫폼은 서산시가 조성한 공유재산으로,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전문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나, 다른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서산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재)서산문화재단은 서산시의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위탁·대행할 수 있음

○ 따라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재)서산문화재단에 문화교류플랫폼의 시설관리 및 운영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전문성, 공공성 및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함

※ 문화교류플랫폼 원가산정 운영용역 결과(2026년 9월) 문화재단 추진 적정

파. ※ 참고자료(관련법령)

구 분	내 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5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시장은 소관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23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지방출자 출연법	제2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출자 · 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서산 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사업의 위탁 대행) 재단은 국가, 충청남도 또는 시의 문화시설운영 또는 문화 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 부담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의사일정 제23항



제3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2026. 10. 29.(목)
제 5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서산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서산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6. 10. 21.

행정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10. 8.

나. 제 출 자 : 서산시장(문화예술과)

다. 회부일자 : 2026. 10. 13.

라. 심사일자 : 2026. 10. 21.

2. 제안설명 요지

○ 2027년 서산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 (재)서산문화재단 출연금 예정금액 : 1,340,648천원

(단위 : 천원)

회계연도	계	인건비	사무운영	사업비	안견문화제
2027년	1,340,648	575,412	325,236	290,000	150,000

○ 출연근거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서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4. 검토의견 요지

가. 본 출연 동의안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설립된 서산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해「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출연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서산문화재단의 설립 및 사업내용 역시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서산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사업과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출연기관으로서 지역축제, 안견문화제, 생활문화센터 운영 등 시의 문화정책과 밀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라. 특히 문화예술 분야는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시민 수요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 및 관련 단체와의 네트워크, 사업기획 및 현장 운영 경험등이 요구되는 분야라는 점에서 전문기관을 통한 사업 수행의 필요성은 인정됨

마. 따라서 서산문화재단의 기존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바. 다만 사업 추진 시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는 없는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제 75 호
의결연월일	

(재)서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6. 10. 06.

(재)서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75 호

제출연월일 : 2026. 10. 06.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제안이유

○ 2027년 서산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기관현황

○ 기 관 명 : (재)서산문화재단
○ 설 립 일 : 2020. 11. 9.
○ 위 치 : 서산시 성연면 성연3로 161 서산시공공서비스센터 (3층)
○ 임원현황 : 15명(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11, 감사 2)
○ 직원현황 : 12명(공무원 파견 1명 포함)
○ 사업내용 : 서산해미읍성축제, 안견문화제, 생활문화센터 2개소 운영, 문화사업 추진 등

3. 출연금 편성계획

○ **출연금(예정) : 1,340,648천원**

(단위:천원)

회계연도	계	인건비	사무운영	사업비	안견문화제
2027년	**1,340,648**	575,412	325,236	290,000	150,000

※ 2026년 본예산(969,079천원) 대비 371,569천원 증액
주요증액사유 : 사업비(자체사업 확대추진), 인건비(공무원 파견 종료)
※ 2027년 본예산 심의 · 의결 시 변동될 수 있음

4. 기대효과

○ 지역별 특색에 맞는 문화사업 추진 및 시민들의 문화생활 참여 확대

○ 문화예술 공간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으로 지역 활성화 및 문화역량 강화

5. 출연금 운용계획 및 관리대책

○ 출연금 교부 시 사업의 적합성, 사업 목적의 공익성, 집행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 검토

○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통해 불법·부당사례 사전 예방

6. 관련 법령

구 분	내 용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서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 진흥 및 정책 개발 2. 문화예술의 창작, 콘텐츠 개발 및 보급 3. 문화예술의 교육 및 조사 연구 4. 지역축제 및 행사지원 5. 지역문화사업 발굴 및 추진 6.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의사일정 제24항



제3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2026. 10. 29.(목)
제 5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6. 10. 21.
행정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10. 8.

나. 제 출 자 : 서산시장(문화예술과)

다. 회부일자 : 2026. 10. 13.

라. 심사일자 : 2026. 10. 21.

2. 제안설명 요지

○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의 민간위탁 계약종료 시기가 도래함(2026. 12. 31.) 에 따라,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기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제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 위탁시설개요

- 시 설 명 :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 위　　치 : 서산시 학동3로 53 (구. 동문1동 행정복지센터 2층)
  당초위치 : 서산시 부춘공원2로 11(서산문화원 내 2~3층)
- 임차기간 : 2014. 9. ~ 2027. 6. (보증금 450백만원, 월임차료 247천원)

- 위탁기간 : 2021. 11. 1 ~ 2026. 10. 31.(5년)
- 위탁시설규모 : 대지면적 1947.2㎡, 연면적 630㎡ (2층 면적 271㎡)
  지상 3층
- 근무인원 : 2인(행정지원 1, 시설물관리 1)
- 운영방법 : 민간위탁
- 위탁시설현황

구 분	면적(㎡)	내 용
2층	271	영상·라디오 스튜디오, 스튜디오 부스, 강의실 등

- 운영현황 : 2021. 1. 1 ~2026. 12. 31 (서산문화원에 위탁 운영)

연 도	운영예산 (천원)	사용횟수 (대여+대관)	사용자수 (대여+대관)	사용료* (천원)	수탁기관	위탁기간
계	539,192	482	7,871	74,354		
2024	167,000	179	2,843	34,435	서산문화원	2024. 1. 1. ~ 2026. 12. 31. (1회 재계약)
2025	204,801	157	3,100	28,234		
2026. 8.	167,391	146	1,928	11,685		

○ 위탁 추진 계획

- 위탁사무 :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 위탁예산 : 금167,981천원

(단위 : 천원)

총 계	인건비	사무운영비	활성화 사업비
167,981천원	84,880	43,101	40,000

*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 직원(2명) 고용 승계 조건*

-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 위탁방법 : 공개모집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 위탁사무내용
-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전반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 영상미디어센터 대관업무
- 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사업 운영

4. 검토의견 요지

가. 본 동의안은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의 기존 위탁 기간이 2026. 12.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나.「지방자치법」「행정재산의 관리위탁」「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영상미디어센터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타당함

다.「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서도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동의안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라. 영상미디어센터는 영상 및 라디오의 콘텐츠 제작·편집 등 미디어 활용을 위한 교육을 통해 시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이고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마.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제 76 호
의결연월일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6. 10. 06.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76 호

제출연월일 : 2026. 10. 06.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제안이유

○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의 민간위탁 계약종료 시기가 도래함(2026. 12. 31.)에 따라,

○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기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2. 위탁 추진근거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관리 및 운영) 및 제11조(수탁자의 자격)

3. 위탁 추진 필요성

○ 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한 위탁 운영으로 시설·장비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 강화

○ 다양한 미디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시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

○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활성화

4. 위탁 사무의 내용

○ 위탁기간: 2027. 1. 1. ~ 2029. 12. 31. (3년간)

○ 운영예산: (2027년) 167,981천원 ※ 변동가능

총 계	인건비	사무운영비	활성화 사업비
167,981천원	84,880	43,101	40,000

-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 직원(2명) 고용승계 조건

○ 위탁방법: 공개모집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 위탁내용: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전반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5. 위탁 시설 개요

○ 시 설 명: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 위　　치: (2027년)서산시 학동3로 53 (㈜동문1동 행정복지센터 2층)

※ 당초위치: 서산시 부춘공원2로 11 (서산문화원 내 2~3층)

○ 건물현황

- 면　　적: 대지면적 1947.2㎡, 연면적 630㎡ (2층 면적 271㎡)
- 구　　조: 지상 1~3층,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시설: 영상·라디오스튜디오, 스튜디오부스, 강의실 등

○ 기 자 재: 캠코더 등 191점

○ 직원구성: 2명(행정지원 1, 시설물관리 1)

○ 운영방법: 민간위탁

○ 운영현황: 2021. 1. 1. ~ 2026. 12. 31. 서산문화원 위탁 운영

연 도	운영예산 (천원)	사용횟수 (대여+대관)	사용자수 (대여+대관)	사용료* (천원)	수탁기관	위탁기간
계	539,192	482	7,871	74,354		
2024	167,000	179	2,843	34,435	서산문화원	2024. 1. 1. ~ 2026. 12. 31. (1회 재계약)
2025	204,801	157	3,100	28,234		
2026. 8.	167,391	146	1,928	11,685		

※ 사용료: 시 세외수입 처리

❍ 2026년 프로그램 운영현황

연번	사업명	운영기간	누적 참여인원	사업내용
계	11개		1,619명	
1	보이는 라디오	3. 5. ~ 3. 30.	64명	- 라디오 스튜디오를 활용한 음성·영상 융합 콘텐츠 제작 및 방송 체험
2	AI활용교육	4. 3. ~ 4. 29.	144명	- 인공지능(AI) 툴의 기초 이해 및 실생활 적용 방법 습득
3	영상편집기초반	5. 6. ~ 5. 29.	100명	- 편집 프로그램의 기본 기능 습득을 통한 영상 편집 기초 소양 함양
4	스피치교육	6. 10. ~ 7. 3.	64명	- 올바른 발성·발음 훈련 및 논리적인 의사전달 능력 향상
5	AI뮤직비디오 제작	7. 8. ~ 8. 12.	100명	- AI를 활용한 음원·영상 생성 및 뮤직비디오 제작 실습
6	항공촬영기초반	3. 4. ~ 3. 27.	96명	- 드론 촬영 기법 습득
7	스마트폰 브이로그반	8. 19. ~ 9. 11.	220명	- 스마트폰을 활용한 일상 기록 영상 촬영 및 편집 기술 습득
8	나만의 음악 만들기	10. 12. ~ 11. 11.	200명	- 작곡·편곡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음원 제작 체험
9	맞춤형 미디어 교육	4. 6. ~ 10. 16.	195명	- 수요자 맞춤형 미디어 활용·제작 교육 프로그램 제공
10	찾아가는 작은 영화관	8. 13. ~ 9. 29.	243명	- 문화 소외계층 또는 지역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영화 상영회 운영
11	보훈테마활동	5. 21. ~ 11. 5.	193명	- 보훈 역사를 소재로 한 미디어 체험활동 및 관련 영상 제작

6.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구 분	검토의견
① 위탁이 아닌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영 또는 위탁 방식의 운영이 가능하나, 직영 운영 시 영상미디어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와 시설·장비 관리 등에 별도의 행정적·인력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통한 위탁 운영이 효율적임.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영상미디어센터의 소유권 및 결정권은 서산시에 있으며, 조례로 사용료 등을 정하고 있고, 서산시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므로 공공성 및 안정성이 확보됨.
③ 경제적 효율성	• 시설 운영과 프로그램 기획·운영을 전문기관이 일괄 수행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입되는 비용 대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④ 수탁기관의 전문 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는 영상 제작·편집, 미디어 교육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므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적정함.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직영 방식은 운영과 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므로 감독 기능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성과 측정에 한계가 있음. • 위탁 방식은 운영과 감독 주체가 분리되어 있어 사무(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가 용이함.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위탁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대상이며, 위·수탁 협약을 통해 수탁기관의 업무수행 및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 의무를 부여할 수 있어 관리·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

○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이 가능하며,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및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상미디어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및 조례,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영상미디어센터의 위탁 운영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7. 추진일정 및 향후계획

- ❍ 2026. 10.: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안 의결
- ❍ 2026. 10.: 수탁기관 모집 공고
- ❍ 2026. 11.: 사무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 2026. 12.: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협약 체결
- ❍ 2027. ~ 2029.: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 위탁 운영

8.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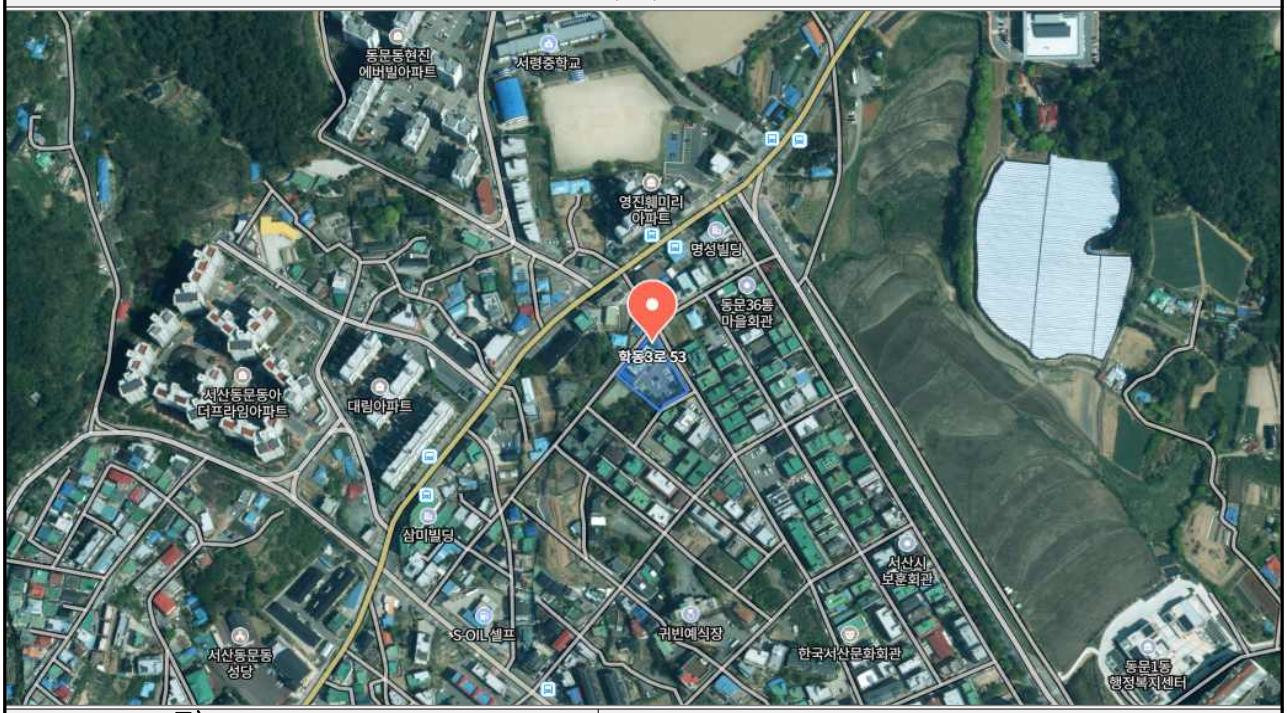

구)동문1동 청사



2층



9.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 ·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위탁 승인 및 의회동의)

① 시장은 제7조의 위탁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21. 8. 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제출하는 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6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직접운영하거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디어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기관과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 및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자격) 수탁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미디어교육 및 영상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그 밖의 단체의 기금을 지원받아 3년 이상 미디어센터 관련 사업을 실시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미디어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의사일정 제25항



제3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2026. 10. 29.(목)
제 5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서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서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10. 21.
산 업 건 설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10. 8.

나. 제 출 자 : 서산시장(교통과)

다. 회부일자 : 2026. 10. 13.

라. 심사일자 : 2026. 10. 21.

2. 제안설명 요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산시 택시 수급을 원활히 하고 택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상속 (안 제3조)

4. 검토의견 요지

○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양도·상속을 허용하고, 상속 신고기간을 180일로 정하여 사업의 원활한 승계와 택시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은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였으나, 2009년 5월 27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양도·상속 제한 규정이 신설되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었음.

○ 다만, 시행 전에 면허를 받은 사업자에게는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면허 취득 시점에 따른 양도·상속 가능 여부에 차이가 발생하였음.

○ 이에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임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받은 사업자에게도 양도·상속을 허용하고, 해당 사업자의 상속인에 대한 상속 신고기간을 180일로 정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대상과 기간의 범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면허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상속 신고기간을 180일로 적용하도록 한 부분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후단을 삭제하여 적용 대상을 명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수정안 붙임

서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조문대비표

제 정 안	개 정 안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① (생 략)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상속 신고기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신고기간은 피상속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후단 삭제>

의 안 번 호	제 78 호
의결연월일	

서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6. 10. 8.

서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78 호

제출연월일 : 2026. 10. 8.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개정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한 사항을 규정

○ 서산시 택시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택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타시군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위임조례 제정

- 충남 8개 시군 제정(천안, 아산, 당진, 홍성, 논산, 계룡, 청양, 부여)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상속 (안 제3조)

3. 단계별 추진사항

○ 방침결정 : 2026. 7. 28. (교통과-84087호)

○ 성별영향평가 : 2026. 8. 3 (가족지원과-24808호)

- 결 과 : 별도의 개선의견 없음

○ 규제심사 : 2026. 8. 21. (기획예산담당관-11840호)

- 결　　과 : 원안의결

○ 입법예고

- 2026. 8. 7.(금) ~ 2026. 8. 27.(목) / 20일간

- 공고번호 : 서산시 공고 제2026-2100호

- 결　　과 : 의견 없음

○ 법제심사 : 2026. 9. 2. (기획예산담당관-12598호)

○ 조례・규칙심의회 : 2026. 9. 21.(월)

○ 시의회 의결 : 2026. 10월 중

○ 공포·시행 : 2026. 11월 중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관련법규 발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 기타 : 조례 개정 관련 협조 요청 공문(충청남도)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규제심사 결과 통보

○ 법제심사 결과서

서산시 조례 제 호

서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산시 택시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택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의 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동일하게 그 사업의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한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상속 신고기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신고기간은 피상속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제3항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9. 5. 27., 2015. 6. 22.>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제1항 및 제4항

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 대한 상속 신고기간은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2015. 6. 22., 2025. 12. 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5. 6. 22., 2017. 3. 21.>

부칙 <법률 제9733호, 2009. 5. 27.> 제1항, 제3항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 그 양도·양수 및 상속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제3조2호의라목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8. 11. 26., 2009. 11. 27., 2011. 12. 8., 2011. 12. 30., 2012. 11. 23., 2013. 3. 23., 2015. 1. 28., 2016. 1. 6., 2016. 1. 22., 2019. 2. 12., 2021. 4. 6., 2023. 10. 10., 2024. 12. 31.>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제10조의2(운송사업의 양도·상속의 제한) 제2항

② 법 제14조제3항 본문 및 제15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각각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14. 7. 28., 2015. 11. 30., 2022. 1. 28.> [본조신설 2009. 11. 27.]

부칙 <대통령령 제21854호, 2009. 11. 27.> 제1조, 제3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의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사유

○ 본 개정안은 규제 완화를 위한 절차적 개정으로, 별도의 재정 지출이나 예산 수반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시장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안에 그 사유를 명시하거나 미첨부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작성자: 건설교통국 교통과장 조 완 호

다. 기타

볼거리는 충남, 즐길거리는 충남, 먹거리는 충남, "충남이면 충분해!"

충청남도

충 청 남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상속 및 양도기간 관련 조례 제정시 협조 요청

1. 관련사항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180호(2025.12.2.일부개정, 시행 2026.6.3)
 2)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3932(2026. 5. 21.)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시 그 면허의 상속 및 양도에 교통안전교육 이수, 양수 수요 부족 등으로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상속인의 상속신고 및 양도기간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2026.6.3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현행	개정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 대한 상속 신고기간은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3. 해당 조항은 '제4항 단서에 따라' 라는 표현으로 인해 지자체 조례를 통해 상속이 가능한 대상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ㅇ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1항의 개정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시 상속 및 양도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하고자 추진된 사항으로, 피상속인의 개인택시면허 취득시점과 무관하게 상속 대상자 전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따라서, 상기 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는 2009.11.28. 이전 발급된 개인택시면허를 상속하는 자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시어 법 개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table>
<tr><th colspan="5">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th></tr>
<tr><td>관리번호</td><td colspan="4">2026A충남서산033</td></tr>
<tr><td>정 책 명</td><td colspan="4">서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td></tr>
<tr><td rowspan="3">소관부서</td><td>기관명</td><td colspan="3">충청남도 서산시</td></tr>
<tr><td>부서명</td><td colspan="3">교통과</td></tr>
<tr><td>담당자명</td><td>엄지은</td><td>전화번호</td><td>041-660-2128</td></tr>
<tr><td>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td><td colspan="4">2026년 7월 30일</td></tr>
<tr><td>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교통과)</td><td colspan="4">○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한 사항을 규정하여 택시사업 발전 도모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 ~ 제2조)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제3조)</td></tr>
<tr><td rowspan="2">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td><td colspan="4">■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td></tr>
<tr><td colspan="4">’서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td></tr>
<tr><td>검토의견
반영계획서</td><td colspan="4">해당 없음</td></tr>
</table>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8월 02일

서산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영/041-660-3021)

교통과장 귀하

마. 규제심사 결과 통보서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

해뜨는서산

서 산 시



수신 교통과장
(경유)
제목 규제심사 결과 통보(「서산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1. 교통과-84151(2026. 7. 30.)호와 관련됩니다.

2. 서산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중 신설규제에 대한 규제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붙임 2026년 서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1부. 끝.

기획예산담당관

주무관	김선미	인구청년정책 팀장	정재원	기획예산담당 전결 2026. 8. 21. 관	신현우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담당관-11840 (2026. 8. 21.) 접수 교통과-92468 (2026. 8. 21.)

우 31974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로길 1, 서산시청 (음내동) / http://www.seosan.go.kr

전화번호 041-660-2149 팩스번호 041-660-2249 / skysm@korea.kr / 대국민 공개

비전있는 희망 도시, 서산

3 심의결과

연번	심의대상	심의결과	비 고
제1호	안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 상속 신고기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로 한다. - 신고기간은 피상속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원안가결**	15명 可

○ 별도 의견: 없음

바. 법제심사 결과서

자치입법안 심사조서

□ 서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심사사항	심사항목	심 사 세 부 내 용	심 사 결 과
선행 절차	사전협의	관련기관, 단체, 부서와 사전협의 여부	적 정
	소 비 자 정책심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여부	해당없음
	성별영향 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 및 관련부서 검토	적 정
	비용추계	예산비용 수반시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해당없음
	규 제	규제 해당 여부	해당없음
입법 내용	필 요 성	①새로운 자치입법 제·개정의 필요성 ②시행에 따른 문제점 여부	적 정
	적 법 성	①상위법령 위배 또는 타 자치법규와 모순 여부 ②주민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제정 시 상위법령의 근거 여부	적 정
	타 당 성	①다른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중복규정 여부 ②조 또는 항간 상치되는 부분의 존재 여부 ③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위임근거 규정 여부	적 정
입법 형식	표현방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이행 여부	적 정
	조문배열	전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의 배열 여부	적 정
	작성형식	제・개정이유, 조례안 및 관련법령 첨부 여부	적 정
부칙 규정	시 행 일	소급적용 규정 여부	해당없음
	표기요령	①권리제한, 의무부과 시 30일 이상 유예기간 규정 여부 ②경과조치규정으로 기득의 권리, 지위침해 방지 여부	해당없음
기타	행정규칙 예산관련	①관련 하위법규, 행정규칙 등을 함께 검토 여부 ②예산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재원문제 고려 여부	적 정
종합검토의견		- 상위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문제점 없음.	

심사를 마침	심사일	2026. 9. 2.(제1322호)
	심사자	지방행정서기 최 욱
	확인자	지방행정사무관 신현우

의사일정 제26항



제3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2026. 10. 29.(목)
제 5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한서대 글로컬대학 사업 투자협약 체결 동의안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한서대 글로컬대학 사업 투자협약 체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6. 10. 21.
산 업 건 설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10. 8.

나. 제 출 자 : 서산시장(미래전략담당관)

다. 회부일자 : 2026. 10. 13.

라. 심사일자 : 2026. 10. 21.

2. 제안설명 요지

○ 2025년 한서대 글로컬대학 선정에 따라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산업 육성을 위한 '부남호 K-항공 특화연구센터(가칭)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3자(市, 한서대학교, 현대건설) 간 투자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투자협약 개요

○ 협 약 명 : 한서대 글로컬대학 사업 투자협약
(부남호 K-항공 특화연구센터(가칭) 건립)

○ 당 사 자 : 서산시, 한서대학교, 현대건설

○ 목 적 : 특화연구센터 위치 및 부지 매입 조건 합의

○ 역할분담

- 서 산 시 : 특화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수행
  * 총 50억 원을 3년에 걸쳐'민간자본보조'로 지원
- 한 서 대: 부남호 K-항공 특화연구센터(가칭) 건립
- 현대건설: 특화연구센터 부지 매각(3년 할부), 특구 내 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

<부남호K-항공 특화연구센터(가칭) 건립 개요>

○ 기 간 : 2026. ~ 2029.

○ 위 치 :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일원(서산시 부석면 갈마리)
*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인근

○ 사업규모 : 대지면적 33,057㎡, 연면적 2,560㎡(1개 시험동)

○ 총사업비 : 185억 원(시비 50, 한서대 135) *수행기관: 한서대학교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26	2027	2028	2029
계	**185**	**1**	**20**	**80**	**84**
서산시	50	-	10	20	20
한서대 (글로컬사업비)	135	1	10	60	64

○ 사업내용 : 한서UAM실증센터(항공교통체계 및 기체 실증·운용·관제 테스트), 부품 국산화 및 재활용연구소(핵심 항공부품 기술 연구개발) 운영

4. 검토의견 요지

○ 본 동의안은 한서대학교의 글로컬대학 선정에 따라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내에 부남호 K-항공 특화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서산시·한서대학교·현대건설 간 투자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으로, 협약에 따른 시의 재정적 의무부담에 대하여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한서대학교의 항공 분야 교육·연구 역량을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하고, 인근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실증·기업지원·인재양성 기반을 확충하려는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됨.

○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관련 재정상 사전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됨

○ 2025년 한서대학교 글로컬대학 지정 공모 신청 시 제출한 지자체 지방비 지원 확약을 이행함에 있어, 시비를 소모성 경비나 감가상각이 큰 자산의 취득보다 토지 매입 등 장기 활용이 가능한 자산 확보에 지원하는 것은 재정지원 효과의 지속적 관리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에 부기등기와 처분 제한을 적용함으로써,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활용을 유도하고 보조재산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협약서안 제3조의 당사자별 역할과 관련하여, 서산시와 한서대학교는 글로컬대학 선정에 따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각각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특화연구센터 건립을 담당하도록 하고 현대건설 또한 기 조성된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인근으로 기반시설 조성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시험 연구센터 건립으로 서산시 산업과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학교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관련 사업 발전과 서산시의 신사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제 79 호
의결연월일	

한서대 글로컬대학 사업 투자협약 체결 동의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6. 10. 8.

한서대 글로컬대학 사업 투자협약 체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79 호

제출연월일 : 2026. 10. 8.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제안이유

2025년 한서대 글로컬대학 선정에 따라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산업 육성을 위한 '부남호 K-항공 특화연구센터(가칭)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3자(市, 한서대학교, 현대건설) 간 투자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투자협약 개요

- 협 약 명: 한서대 글로컬대학 사업 투자협약
  -부남호 K-항공 특화연구센터(가칭) 건립-
- 당 사 자: 서산시, 한서대학교, 현대건설
- 목 적: 특화연구센터 위치 및 부지 매입 조건 합의
- 역할분담
  - 서 산 시: 특화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수행
    *총 50억 원을 3년에 걸쳐 '민간자본보조'로 지원
  - 한 서 대: 부남호 K-항공 특화연구센터(가칭) 건립
  - 현대건설: 특화연구센터 부지 매각(3년 할부), 특구 내 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

【 부남호 K-항공 특화연구센터(가칭) 건립 개요 】

- 기 간: 2026. ~ 2029.
- 위 치: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일원(서산시 부석면 갈마리)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인근
- 사업규모: 대지면적 33,057㎡, 연면적 2,560㎡(1개 시험동)

- 총사업비: 185억 원(시비 50, 한서대 135) *수행기관: 한서대학교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26	2027	2028	2029
계	185	1	20	80	84
서산시	50	-	10	20	20
한서대 (글로컬사업비)	135	1	10	60	64

- 사업내용: 한서UAM실증센터(항공교통체계 및 기체 실증·운용·관제 테스트), 부품 국산화 및 재활용연구소(핵심 항공부품 기술 연구개발) 운영

3. 그동안 추진사항

○ 2025. 7.: 2025년 한서대학교 글로컬대학 지정 공모 신청에 따른 의원 개인별 방문 설명*

*공모신청 기한과 의원 정책간담회 일정 차이 발생

○ 2025. 8.: 한서대 글로컬대학 지원 계획 수립(지자체 지방비 확약서 제출)

○ 2025. 9.: 한서대 글로컬대학 선정

○ 2025. 12.: 한서대 글로컬대학 비전 선포식

○ 2026. 1.: 한서대 글로컬대학 추진 사업단 구성

○ 2026. 6.: 한서대 글로컬대학 추진위원회 회의

○ 2026. 9.: 2026년 정기 제3차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통과(도 심사)

4. 앞으로 추진계획

○ 2026. 11.: 한서대 글로컬대학 사업 투자협약 체결(市, 한서대, 현대건설)

○ 2027. 1.: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028. 1.: 공사 착공

○ 2029. 3.: 공사 준공

5. 기대효과

- ○ 국가-지자체-대학 간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세계적 글로컬 대학 육성
- ○ 부품개발, 기체실증, 창업보육, 인력양성 등을 포괄하는 전주기형 지원체계 구축으로 항공모빌리티 거점 도시로 도약
- ○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와 연계하여 市 전략산업인 미래항공모빌리티(AAM) 경쟁력 향상

6. 참고사항

- ○ 위치도
- ○ 투자협약서(안)
- ○ 관련법령

참고1 위치도


현대모비스 서산주행시험장
부남로(중로2류-폭 15m~20m)
부남대교
그린 UAM·AAV 시험평가센터
부남호
현대모비스 서산주행시험장(직선코스)
SITE


근린생활시설
공원
농수로
가스공급시설
청정수소
특화단지
연구시설
(한서대학교) 글로컬대학 사업
UAM 실증센터, 부품 국산화 연구소
청정수소
특화단지
자동차
연구시설

참고2 투자협약서(안)

한서대 글로컬대학 사업 「부남호 K-항공 특화연구센터(가칭) 건립」

투 자 협 약 서

서산시, 한서대학교(이하 "한서대") 및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는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이하 "특구") 내 부남호 K-항공 특화연구센터(가칭)(이하 "특화연구센터") 건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및 미래 항공 모빌리티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특구 내 특화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각 당사자의 역할과 협력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개요)

1. 사업기간: 2026~2029년(4년간)
2. 위　　치: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일원(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갈마리)
3. 부지면적: 약 33,057㎡(약 1만 평)
4. 총사업비: 185억 원(지방비, 한서대 글로컬대학 사업비 등 포함)
5. 주요시설: 1개 시험동(한서UAM실증센터 및 부품 국산화/재활용연구소)

제3조 (당사자별 역할)

1. **서산시**: 특화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수행한다.
2. **한서대**: 특구 내 부지 매입 후 특화연구센터를 건립하고, 항공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기업지원 및 인재양성에 힘쓴다.
3. **현대건설**: 특구 조성 사업자로서 특화연구센터 구축 부지를 적기에 공급하고,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단지 내 도로,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급에 최선을 다한다.

제4조 (부지 매입 및 사용 승낙)

1. **(재원 조달)** 서산시는 특화연구센터 부지매입비 등 50억 원을 2027년부터 3년간 분할하여 한서대에 지급하며, 한서대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집행한다.
   ※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시 "사업완료 후 30년간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교부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부기등기에 포함한다.
2. **(매매 계약)** 한서대와 현대건설은 서산시의 부지매입비 지급 일정을 반영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되, 대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방식은 별도로 합의한다.
3. **(사전 사용 승낙)** 현대건설은 대금 완납 전이라도 한서대가 2027년 설계 및 공사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계약 체결 직후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행한다.
4. **(협력 의무)** 한서대는 사업 부지 내 안전관리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현대건설의 특구 조성 공사에 협조한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각 기관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와 자료를 상호 공유한다.

제6조 (효력 및 준수)

본 협약은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각 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약 내용을 준수하고, 세부 사항은 별도의 합의서나 계약에 의한다.

2026년 11월 일

해뜨는 서산	한서대학교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서 산 시	한 서 대 학 교	현 대 건 설
시장 이 완 섭	총장 함 기 선	대표 이 한 우

참고3 관련 법령

□ 고등교육법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지역의 산업·사회와 연계하여 교육·연구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방대학을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서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직업교육 고도화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 연계 사업
2. 지역인재 육성·채용 촉진 및 시정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
3. 지역인재의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
4. 정부기관 또는 충청남도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지원사업
5. 대학에서 수행 중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연계 사업
6. 그 밖의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서산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핵심기수에 관한 연구개발, 실증, 인증, 상용화 지원
2.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기반시설 조성 지원
3.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지원
4.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창업 및 기업유치 지원
5.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산업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의사일정 제27항

마음을 따뜻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제3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2026. 10. 29.(목)
제 5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6. 10. 21.
산 업 건 설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10. 8.

나. 제 출 자 : 서산시장(도시과)

다. 회부일자 : 2026. 10. 13.

라. 심사일자 : 2026. 10. 21.

2. 제안설명 요지

○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에 의하여 의회의 재계약(갱신)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 내용

■ 위탁 개요

○ 대상시설: 지정게시대 151개소, 609면

○ 재위탁기간: 2027. 1. 1. ‘ 2029. 12. 31.(3년간)

○ 위탁내용

- 현수막의 게시 및 철거 대행
- 추첨을 통한 게시장소, 위치 선정 및 현수막 설치·신고 업무
-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유지관리
-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캠페인

○ 위 탁 비 : 연40,000천원(예산범위 내에서 정산 지급)

○ 수탁기관 자격조건 :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현재 위탁 현황>

시 설 명	주요시설	위탁기간	위탁방법	수 탁 자	비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게시대 151개소, 609면	2025. 1. 01. ~ 2026. 12. 31.	공개모집	충남옥외 광고물협회 서산시지부	

4. 검토의견 요지

○ 본 동의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는 현수막의 게시 및 철거, 게시위치 배정, 시설물 유지관리 등 지속적인 현장 관리가 필요한 사무로, 관련 업무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 편의 증진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현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재위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제 80 호
의결연월일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6. 10. 8.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80 호

제출연월일 : 2026. 10. 8.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제안이유

○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에 의하여 의회의 재계약(갱신) 동의를 받고자 함

2. 위탁근거

○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재계약)

○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3. 위탁시설 개요 및 주요내용

○ 대상시설: 지정게시대 151개소, 609면

○ 재위탁기간: 2027. 1. 1. ~ 2029. 12. 31.(3년간)

○ 위탁내용

- 현수막의 게시 및 철거 대행
- 추첨을 통한 게시장소, 위치 선정 및 현수막 설치·신고 업무
-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유지관리
-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캠페인

○ 위 탁 비: 연40,000천원(예산범위 내에서 정산 지급)

○ 수탁기관 자격조건

-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위탁현황

시 설 명	주요시설	위탁기간	위탁방법	수 탁 자	비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게시대 151개소, 609면	2025. 1. 01. ~ 2026. 12. 31.	공개모집	충남옥외 광고물협회 서산시지부	

4. 위탁 적정성 검토

검토기준	검토의견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 관내 주요노선에 설치되어 있는 지정게시대에 대해 직영관리하는 것보다, 전문인력인 옥외광고협회 회원 및 장비를 활용하여 민간위탁 관리함이 유리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지정게시대의 안정적인 관리 및 정시·수시 예찰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고려 시 체계적인 인력구성이 가능한 민간단체 위탁이 적정
③ 경제적 효율성	- 관내 여러곳에 산재되어 있는 지정게시대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위탁관리자 선정을 통해 신속한 조치와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이 적정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옥외광고업 등록업체 등 관련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수탁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효율성 및 작업 안정성 확보 가능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 게시대 이용에 따른 옥외광고신고처리건수 및 안전점검 횟수 등 이용현황 및 사업성과 평가가 용이함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사업계획 검토, 사업비 교부 및 정산, 사무에 대한 정기·수시점검 등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5. 그 동안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24. 10.: 수탁자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 심의

○ 2024. 12.: 민간위탁 협약 체결(서산시↔충남옥외광고협회 서산시지부)

○ 2025. 1.~: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및 관리

○ 2026. 10.: 재계약 동의안 시의회 의결

○ 2026. 10.: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의

○ 2026. 12.: 민간위탁 협약 체결(재계약)

6. 관련법령

○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연장계약은 1회에 한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① 옥외광고사업자는 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의 품위 향상을 위하여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2.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시·도지사와 시장 등이 위탁하는 업무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의사일정 제28항



제3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2026. 10. 29.(목)
제 5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202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단독주택 단지 집단개발 사유도로 기부채납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202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단독주택 단지 집단개발 사유도로 기부채납 -

심 사 보 고 서

2026. 10. 21.

산 업 건 설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10. 8.

나. 제 출 자 : 서산시장[회계과 (원스톱허가과 소관)]

다. 회부일자 : 2026. 10. 13.

라. 심사일자 : 2026. 10. 21.

2. 제안설명 요지

○ 단독주택 단지 집단개발 관련 대지와 도로의 소유권이 일치하지 않아, 소유권 분쟁 등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기부채납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분쟁을 최소화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사업개요

- 취득대상 : 운산면 거성리 144-4 외 9필지
- 기 부 자 : 한상연 외 1인
- 취득시기 : 2026. 11.
- 취득규모 : 10필지, 도로, 3,165.0㎡
- 기준가격 : 40,328천원

소재지	지목	취득면적	공시지가	기준가격(천원)	소유자
계	10필지	3,165.0		40,328	
운산면 거성리 144-4	도로	229.0	15,100	3,457	한상연
운산면 거성리 145-24	도로	236.0	12,500	2,950	한상연
운산면 거성리 144-3	도로	258.0	12,500	3,225	한상연
운산면 거성리 145-51	도로	67.0	15,100	1,011	한상연
운산면 거성리 143-18	도로	817.0	12,500	10,212	한상연 이난희
운산면 거성리 143-22	도로	31.0	12,500	387	이난희
운산면 거성리 143-16	도로	71.0	12,500	887	이난희
운산면 거성리 143-12	도로	130.0	12,500	1,625	이난희
운산면 거성리 143-9	도로	437.0	12,500	5,462	한상연
운산면 거성리 145-14	도로	889.0	12,500	11,112	이난희

4. 검토의견 요지

○ 본 안건은 운산면 거성리 단독주택 단지 내 사유도로를 기부채납 받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려는 사항임.

○ 주택 대지와 도로의 소유권 불일치로 발생하는 도로 이용 및 소유권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도로 관리를 통해 주민의 통행 편의와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취득 대상 도로가 해당 주택단지 주민의 이용에 주로 제공되는 도로인 만큼, 공공용재산으로 취득할 경우 일반 주민의 통행에 제약이 있는지 등 확인이 필요함.

○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재산 등의 기부채납을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은 재산가액 대비 유지·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를 이에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취득 전 도로 및 부속시설의 상태를 확인하고, 취득 직후 보수비용과 향후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제86호
의결연월일	

-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6. 10. 8.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의 안 번 호	제86호

제출연월일 : 2026. 10. 8.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2. 제안이유

상기 법령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확정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세부사업: 1건

연번	심의안건	소관부서
1	단독주택 단지 집단개발 사유도로 기부채납	원스톱허가과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건수	수량(면적)	기준가격	건수	수량(면적)	기준가격	건수	수량(면적)	기준가격	
취득	계	토지	36	227,944	14,474,322	46	231,109	14,514,650	10	3,165	40,328	
		건물	9	7,509	31,981,900	9	7,509	31,981,900	-	-	-	
		기타	1	-	514,000	1	-	514,000	-	-	-	
	1. 매입	토지	36	227,944	14,474,322	36	227,944	14,474,322	-	-	-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10	3,165	40,328	10	3,165	40,328	
		건물	9	7,509	31,981,900	9	7,509	31,981,900	-	-	-	
		기타	1	-	514,000	1	-	514,000	-	-	-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각	토지										
		건물										
		기타										
	5.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6. 기타처분	토지										
		건물										
		기타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토목공사비포함)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합계 : 10필지		3,165	40,328			
1	운산면 거성리 144-4	도로	229.0	3,457	2026.11.	기부채납	
2	운산면 거성리 145-24	도로	236.0	2,950	2026.11.	기부채납	
3	운산면 거성리 144-3	도로	258.0	3,225	2026.11.	기부채납	
4	운산면 거성리 145-51	도로	67.0	1,011	2026.11.	기부채납	
5	운산면 거성리 143-18	도로	817.0	10,212	2026.11.	기부채납	
6	운산면 거성리 143-22	도로	31.0	387	2026.11.	기부채납	
7	운산면 거성리 143-16	도로	71.0	887	2026.11.	기부채납	
8	운산면 거성리 143-12	도로	130.0	1,625	2026.11.	기부채납	
9	운산면 거성리 143-9	도로	437.0	5,462	2026.11.	기부채납	
10	운산면 거성리 145-14	도로	889.0	11,112	2026.11.	기부채납	

회계명: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단위 : ㎡, 천원)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건수	수량(면적)	기준가격	건수	수량(면적)	기준가격	건수	수량(면적)	기준가격	
취득	계	토지	1	1,121	430,464	1	1,121	430,464	-	-	-	
		건물										
		기타										
	1. 매입	토지	1	1,121	430,464	1	1,121	430,464	-	-	-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각	토지										
		건물										
		기타										
	5.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6. 기타처분	토지										
		건물										
		기타										

단독주택 단지 집단개발 사유도로 기부채납

연번	1

소관부서: 원스톱허가과

1. 제안이유

○ 단독주택 단지 집단개발 관련 대지와 도로의 소유권이 일치하지 않아, 소유권 분쟁 등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기부채납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분쟁을 최소화 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취득대상 : 운산면 거성리 144-4 외 9필지
○ 기 부 자 : 한상연 외 1인
○ 취득시기 : 2026. 11.
○ 취득규모 : 10필지, 도로, 3,165.0㎡
○ 기준가격 : 40,328천원

소재지	지목	취득면적	공시지가	기준가격(천원)	소유자
계	10필지	3,165.0		40,328	
운산면 거성리 144-4	도로	229.0	15,100	3,457	한상연
운산면 거성리 145-24	도로	236.0	12,500	2,950	한상연
운산면 거성리 144-3	도로	258.0	12,500	3,225	한상연
운산면 거성리 145-51	도로	67.0	15,100	1,011	한상연
운산면 거성리 143-18	도로	817.0	12,500	10,212	한상연 이난희
운산면 거성리 143-22	도로	31.0	12,500	387	이난희
운산면 거성리 143-16	도로	71.0	12,500	887	이난희
운산면 거성리 143-12	도로	130.0	12,500	1,625	이난희

운산면 거성리 143-9	도로	437.0	12,500	5,462	한상연
운산면 거성리 145-14	도로	889.0	12,500	11,112	이난희

3. 그동안 추진현황

○ 2021. 6. ~ 2024. 11.: 건축신고 수리(의제처리 : 개발행위 허가 등)

- 대지위치: 운산면 거성리 146번지 일원
- 건 축 주: 장익기 외 35인
- 건축개요: 대지면적 19,536㎡, 도로면적 3,165㎡, 단독주택 25단지

○ 2021. 6. ~ 2025. 3.: 착공신고 수리

○ 2022. 5. ~ 2025. 6.: 건축물 사용승인(25단지)

○ 2026. 8.: 기부채납 요청서 접수(한상연 외 1인)

4. 향후계획

○ 2026. 10.: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 2026. 11.: 소유권 이전

5. 의결을 요하는 사항

○ 주택단지 소유자들은 사유도로를 기부채납 받아 마을 주민들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 우리시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부채납을 받아 관리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치도, 현장사진, 관련법규 등

❑ 위치 및 사진현황

(단위 : 천원, ㎡)

대상지	소재지	운산면 거성리 144-4 외 9필지	지목	도로	지적면적	3,165.0
	신청면적	3,165.0	용도	도로	기준가격	40,328





대상지	소재지	운산면 거성리 144-4 외 9필지	지목	도로	지적면적	3,165.0
	신청면적	3,165.0	용도	도로	기준가격	40,328





❑ 관련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다음 연도 예산 의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참고] 사유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추진계획[주택과-706(2021.1.7.)호]

- 건축 인허가 관련 -

사유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추진계획



- 건축인허가 관련 -

사유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추진계획

Ⅰ 추진배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규모 미만으로 개발된 건축물의 진입로는 대부분 사유도로로서 준공 이후에 도로의 이용과 관련, 소유권리 관계로 여러 가지 유형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기부채납을 통한 체계적 관리와 분쟁을 최소화 하고자함.

⇒ 관계부서 협업 및 적극행정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민원발생유형

○ 건축물 건축행위 시 상·하수도시설, 가스시설 등을 설치하려면 사유도로를 이용하여 매설해야 하는 경우, 토지주의 과도한 사용료 요구, 부동의 등으로 인하여 건축을 포기하는 사례

○ 사유도로가 경·공매 되는 경우 낙찰을 받아 도로 통행 차단 및 이용자들에 대한 과다한 사용료 요구 등으로 인한 잦은 분쟁

○ 공공기관 등에서 주민 편의를 위해 사유도로 구간에 덧씌우기 포장, 배수로정비, 상·하수도시설, 가스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토지주의 비협조로 사업추진의 어려움

○ 사유도로 토지주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및 사망 시 상속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사업진행 지연 및 불가

Ⅱ 현 황

(단위:㎡)

연도별	주택 인·허가 건수	사유도로를 이용한 인·허가 현황 (5호 이상)		사용승인 시 사유도로 기부채납 현황		비 고
		건수	도로면적	건수	도로면적	
계	1,045	18	9,824	2	4,613	
2018	440	14	6,237	1	2,098	
2019	366	1	1,661			
2020	239	3	1,926	1	2,515	

Ⅲ 문제점

○ 사유도로의 기부채납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음

○ 사유도로를 기부채납 하려고 해도 토지 및 시설물 관리부서가 지정되어 있지 않음

Ⅳ 추진계획

○ 대상 사업(지구단위계획 규모 미만 사업)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주택과)

- 공동주택 및 5호 이상 단독주택(건축허가과)

※ 신청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며, 5호 미만도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 기부채납

○ 내 용

- **건축인허가 관련 사유도로 기부채납에 따른 협업부서를 지정하여 관리**

○ 부서별 업무분담

부서명	협업 내용	비 고
건 설 과	- 건축인허가 시 도로시설 사전 설계 협의 및 사용검사·승인 전 시설물 준공 협의 - 사용검사·승인 시 도로시설물 기부채납 및 사후관리(토지 포함)	
주 택 과 건축허가과	-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신고 시 기부채납 확약서 징구 - 사용검사·승인 시 기부채납 토지 소유권 정리 후 건설과 이관	
민원봉사과	- 건축관련 인허가시 보안등시설 기준 검토 협의 - 사용검사·승인 시 도로에 설치된 보안등 기부채납 및 사후관리	

○ **시행일 : 2021. 2. 1.부터 시행**

Ⅴ 기대효과

○ 사유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로 건축 인허가 및 공공사업 추진 관련 불편사항 해소

○ 관계부서 협업 및 적극행정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의사일정 제29항

마음을 따뜻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제3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2026. 10. 29.(목)
제 5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서산시 희망공원 주차장 및 쉼터 조성을 위한 연접 토지매입
- 농업기계 안전 교육장 조성
- 수소충전소 구축(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

서산시의회

[행복위/산건위 소관]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서산시 희망공원 주차장 및 쉼터 조성을 위한 연접 토지매입 -

심 사 보 고 서

2026. 10. 21.
행정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10. 8.
나. 제 출 자 : **서산시장**[회계과(경로장애인과 소관)]
다. 회부일자 : 2026. 10. 13.
라. 심사일자 : 2026. 10. 21.

2. 제안설명 요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확정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사 업 명 : 서산시 희망공원 연접토지 매입
○ 위　　치 : 서산시 인지면 산동리 산26 외 3필지
○ 면　　적 : 6,203㎡
○ 소요예산 : 450,000천원, 부대비용 포함

○ 활용계획 : 희망공원 주차장 및 쉼터 등 공공편의시설 설치 및 추모객 편의 제공

○ 취득대상 재산(토지)

(단위 : 천원, ㎡)

소재지	지목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비용 (추정가격)	비고
계		6,203	78,023	433,976	
인지면 산동리 산26	임야	1,983	15,805	128,895	
인지면 산동리 산27	임야	2,760	21,776	179,400	
인지면 산동리 575-4	전	643	17,811	57,870	
인지면 산동리 575-5	전	817	22,631	67,811	

4. 검토의견 요지

- 본 승인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예산 편성 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산시 희망공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 매입(안))은 서산시 인지면 산동리 산26, 산27, 575-4, 575-5번지 총 4필지 6,203㎡의 부지를 매입하여 추가적인 주차면수 및 쉼터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총 소요예산 4억5천만원의 재원은 시비 100%로 충당할 계획임

- 현재 희망공원은 봉안당 증축으로 인해 추모객이 증가하였고 성묘객이 몰리는 설·추석 등 명절기간에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교통혼잡 및 이용객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연접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공편의시설(주차장, 쉼터 등)을 확충하여 시민친화공간으로 추모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임

-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서산시 희망공원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현재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농업기계 안전 교육장 조성, 수소충전소 구축(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 -

심 사 보 고 서

2026. 10. 23.
산 업 건 설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10. 8.

나. 제 출 자 : **서산시장**[회계과(농업지원과·기후환경대기과 소관)]

다. 회부일자 : 2026. 10. 13.

라. 심사일자 : 2026. 10. 23.

2. 사업별 심사내역

가. 농업기계 안전 교육장 조성

1) 제안설명 요지

○ 농업기계 안전사고 증가에 따라 안전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농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농업기계 안전교육장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 농업기계 안전 교육장 조성
○ 위　　치 : 인지면 무학재1길 99(서산시농업기술센터 내)
○ 용　　도 : 농업기계 안전 교육 및 교육장비 보관

○ 사업기간 : 2026. 6. ~ 2027. 11.

○ 소요예산 : 1,000,000천원(국비 500,000, 시비 500,000)

- 실시설계비 : 50,000천원
- 공 사 비 : 920,000천원(건축, 전기, 통신, 소방)
- 감 리 비 : 25,000천원(건축, 전기)
- 시설부대비 : 5,000천원

○ 사업규모 : 1개동 1층 / 건축 연면적 650㎡ 내외

(단위: 천원, ㎡)

소재지	건축물 주구조	연면적	층수	용도	기준가격	비고
인지면 모월리 408-1	철골샌드위치판넬	650	1	안전 교육장	1,000,000	

3) 검토의견 요지

○ 본 사업은 농업기계 안전교육과 교육장비 보관을 위한 전용시설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안전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농업기계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영농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2026년 7월 7일 개정·공포된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제3항(2027년 1월 8일 시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 및 농업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등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서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은 시장이 농어업기계 안전 등 작업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사업은 관련 법령과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농업의 기계화와 신기술을 적용한 농업기계의 보급 확대에 따라 안전수칙과 올바른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본 사업은 기존 교육장의 공간이 협소한 문제를 보완하고, 기존 시설과 연계한 교육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실습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사업소 및 기존 교육장과 연계하여 장비와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 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 ~ ② (생 략)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농업기계 전문인력 및 농업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농업기계 교육과정의 개발·운영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2026. 7. 7.>

(이하생략)

[본조신설 2009. 4. 1.] [시행일: 2027. 1. 8.] 제8조의2

■ **「서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예방 교육) ①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어업기계 안전·개인보호장비·편이장비·인식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이하생략)

나. 수소충전소 구축(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

1) 제안설명 요지

○ 수소충전소 구축(확장)을 위한 토지매입과 사업을 추진하여 충전 인프라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수소차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고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상기 법령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확정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 수소충전소 구축(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

○ 위　　치 : 서산시 음암면 상홍리 916-12 / 1필지

○ 사업기간 : 2026. 2. ~ 2027. 1.

○ 소요예산 : 1,450백만원(전액 시비)

○ 사업면적 : 2,335㎡(임야)

○ 매입방법 : 협의취득(사유지)

○ 취득대상

(단위 : 천원, ㎡)

소재지	지목	취득면적	기준가격[1]	취득비용 (추정가격)[2]	비고
서산시 음암면 상홍리 916-12	임야	2,335	115,115	1,450,000	

· 2026. 4. 감정평가액(1차): 602,000원/㎡ × 2,335㎡ = 1,405,670,000원

1) 공시지가 × 취득면적

2) 토지가격 및 기타 부대경비(등기 등록비, 감정수수료 등)를 포함

3) 검토의견 요지

○ 현 수소충전소는 2020년 12월 준공 이후 연중무휴로 운영되면서 주요 설비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소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 수요 증가로 기존 시설의 단독 운영에 따른 부담도 가중되고 있어 충전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 자체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산정 시 동일한 목적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은 토지·건물·시설물(공작물) 등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생 략(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 ⑤ (생 략)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4. 20.>

1. (생 략)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 7. (생 략)

⑦ (생 략)

■ **「202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행안부)**

7. 공유재산관리계획 상 "1건"의 의미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5년 이내 사용(취득) 또는 처분하기로 결정한 재산 또는 해당 자치단체 사업계획에 따라 5년 이상에 걸쳐서 사용(취득) 또는 처분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사업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취득·처분하는 재산 전체를 의미한다.

예 해당연도(2023년)에 토지 매입, 다음연도(2024년)에 건물신축, 이후년도에 조경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그 사업 전체를 1건으로 처리

○ 본 건은 단순히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이 아니라 ‘수소충전소 확장 구축’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이후 해당 토지에 충전소 및 관련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인 만큼, 토지 취득과 시설 구축이 하나의 사업으로 연계되는 경우라면 토지 매입비뿐만 아니라 향후 시설 구축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공유재산 취득 규모 등을 종합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토지 취득 사항만 반영한 사유와 향후 수소충전소 건축 및 관련 시설물의 취득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것인지, 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반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집행부의 추가적인 설명과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4.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5. 심사결과

『수정가결』 ※ 수정안 붙임 (수소충전소 구축(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 제외)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77호

제안년월일 : 2026. 10. 29.

제 안 자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수소충전소 구축(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 건은 신중한 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수소충전소 구축(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을 제외함.

○ 수정내역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소관부서	심 사 결 과
수소충전소 구축(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	기후환경대기과	제 외

의 안 번 호	제77호
의결연월일	

- 2027년도 정기분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6. 10. 8.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의 안 번 호	제77호

제출연월일 : 2026.10.8.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2. 제안이유

상기 법령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확정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세부사업

연번	심의안건	소관부서
1	서산시 희망공원 주차장 및 쉼터 조성을 위한 연접 토지 매입	경로장애인과
2	농업기계 안전 교육장 조성	농업지원과
3	수소충전소 구축(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	기후환경대기과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202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고
			건수	수량(면적)	기준가격	건수	수량(면적)	기준가격	건수	수량(면적)	기준가격	
취득	계	토지	5	8,538	193,138							
		건물	1	650	1,000,000							신축
		기타										
	1. 매 입	토지	5	8,538	193,138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1	650	1,000,000							신축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6. 기타처분	토지										
		건물										
		기타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토목공사비 포함)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합계 : 5필지		8,538	1,883,976			
1	인지면 산동리 산26	임야	1,983	128,895	2027.	희망공원 공공편의시설	매입
2	인지면 산동리 산27	임야	2,760	179,400	2027.	희망공원 공공편의시설	매입
3	인지면 산동리 575-4	전	643	57,870	2027.	희망공원 공공편의시설	매입
4	인지면 산동리 575-5	전	817	67,811	2027.	희망공원 공공편의시설	매입
5	음암면 상홍리 916-12	임야	2,335	1,450,000	2027. 1.	現 수소충전소확장(구축)	매입

취득대상 재산목록(건물)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소재지	연면적				
	합 계 : 1 동		1,000,000			
1	인지면 무학재 1길 99	650	1,000,000	2027.11.	농업기계 안전 교육장 조성	신축

서산시 희망공원 주차장 및 쉼터 조성을 위한 연접토지 매입

연번	1

소관부서: 경로장애인과

1. 제안이유

○ 서산시 희망공원 연접토지 매입 후 공공편의시설 설치

2. 사업개요

○ 사 업 명: 서산시 희망공원 연접토지 매입

○ 추진배경: 희망공원 규모의 확대(봉안당 신축·자연장 안치 증가) 및 명절 추모객 집중으로 현 희망공원 주차장 수용 곤란

*현 주차장 주차대수: 230대

❍ 위　　치: 서산시 인지면 산동리 산26 외 3필지

❍ 면　　적: 6,203㎡

❍ 소요예산: 450,000천원 ※ 부대비용 포함

❍ 사업내용: 서산시 희망공원 연접토지 매입하여 주차장 및 쉼터 등 공공편의시설 설치 추모객 편의 제공

(단위: 천원, ㎡)

소재지	지목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비용 (추정가격)	비고
계		6,203	78,023	433,976	
인지면 산동리 산26	임야	1,983	15,805	128,895	
인지면 산동리 산27	임야	2,760	21,776	179,400	
인지면 산동리 575-4	전	643	17,811	57,870	
인지면 산동리 575-5	전	817	22,631	67,811	

3. 향후계획

❍ 2026. 12.: 2027년 본예산 확정

❍ 2027. ~: 토지 매입

4. 의결을 요하는 사항

❍ 연접 토지 매입을 통해 주차장 확대하고 쉼터 등 공공편의시설 조성 추모객 편의 제공 쾌적한 추모 분위기 제고하고자 함

❍ 이에 서산시 희망공원 연접토지 매입사업에 관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치 및 사진현황 1부
2. 관련법규 1부. 끝.

❑ 위치 및 사진현황

(단위 : ㎡, 천원)

대상지	소재지	인지면 산동리 산26 외 3필지	지목	임야 전	면적	6,203
	용도	공공편의시설 조성	기준가격		78,023	



❑ 관련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다음 연도 예산 의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농업기계 안전 교육장 조성

연번	2

소관부서: 농업지원과

1. 제안이유

○ 농업기계 안전사고 증대에 따른 안전 교육 강화의 필요성 증대

○ 농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농업기계 안전 교육장 조성이 요구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농업기계 안전 교육장 조성

○ 위　　치 : 인지면 무학재1길 99(서산시농업기술센터 내)

○ 용　　도 : 농업기계 안전 교육 및 교육장비 보관

○ 사업기간 : 2026. 6. ~ 2027. 11.

○ 소요예산 : 1,000,000천원(국비 500,000, 시비 500,000)

- 실시설계비 : 50,000천원
- 공　사　비 : 920,000천원(건축, 전기, 통신, 소방)
- 감　리　비 : 25,000천원(건축, 전기)
- 시설부대비 : 5,000천원

○ 사업규모 : 1개동 1층 / 건축 연면적 650㎡ 내외

(단위: 천원, ㎡)

소재지	건축물 주구조	연면적	층수	용도	기준가격	비고
인지면 모월리 408-1	철골샌드위치판넬	650	1	안전 교육장	1,000,000	

3. 그동안 추진현황

○ 2026. 4. : 2027년 농촌지도기반조성 국비사업 선정

○ 2026. 6. : 2027년 농업기계 안전 교육장 조성 계획 수립

4. 향후계획

○ 2026. 10.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2027. 1. ~ 4. : 농업기계 안전 교육장 기초 및 실시설계 용역

○ 2027. 5. ~ 6. : 행정절차 이행(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 2027. 7. : 농업기계 안전 교육장 공사 착공

○ 2027. 11. : 농업기계 안전 교육장 공사 준공

5. 의결을 요하는 사항

○ 농업기계 안전 교육장 조성 사업에 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치도, 현장사진, 관련법규 등

❑ 위치 및 사진현황

(단위 : 천원, ㎡)

대상지	소재지	인지면 무학재1길 99	지목	대	지적면적	87,363
	신청면적	650	용도	농업기계 안전교육장	기준가격	1,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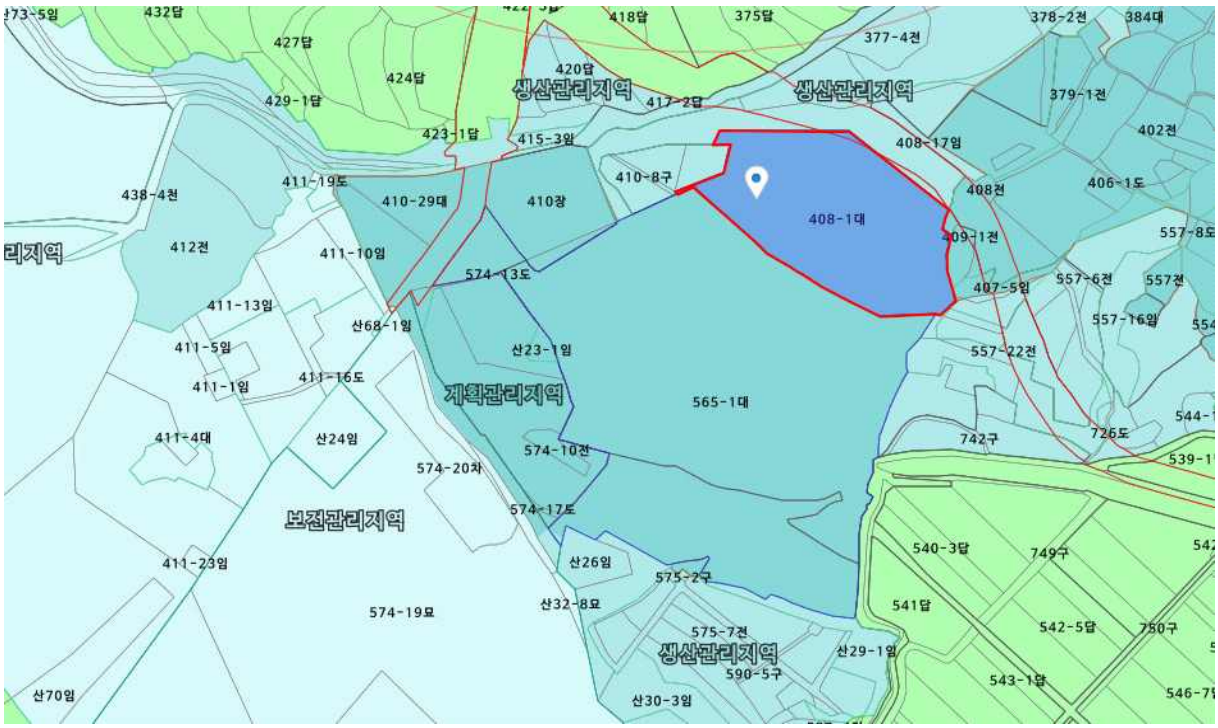



❑ 관련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다음 연도 예산 의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의2(안전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서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예방 교육) ①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어업기계 안전・개인보호장비・편이장비・인식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수소충전소 구축(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

연번	3

소관부서: 기후환경대기과

1. 제안이유

○ 수소충전소 구축(확장)을 위한 토지매입과 사업을 추진하여 충전 인프라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수소차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고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상기 법령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확정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수소충전소 구축(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

○ 위　　치 : 서산시 음암면 상홍리 916-12 / 1필지

○ 사업기간 : 2026. 2. ~ 2027. 1.

○ 소요예산 : 1,450백만원(전액 시비)

○ 사업면적 : 2,335㎡(임야)

○ 매입방법 : 협의취득(사유지)

○ 취득대상

(단위 : 천원, ㎡)

소재지	지목	취득면적	기준가격[1]	취득비용 (추정가격)[2]	비고
서산시 음암면 상홍리 916-12	임야	2,335	115,115	1,450,000	

· 2026. 4. 감정평가액(1차): 602,000원/㎡ × 2,335㎡ = 1,405,670,000원

1) 공시지가 × 취득면적

2) 토지가격 및 기타 부대경비(등기 등록비, 감정수수료 등)를 포함

3. 그동안 추진현황

○ 2026. 2. ~ 6. : 토지주 사전 미팅 및 협의
○ 2026. 4. : 취득 대상 토지 감정평가(1차) 실시
○ 2026. 7. : 서산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26. 10. : 의원정책간담회 설명

4. 향후계획

○ 2026. 10. :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서산시의회)
○ 2026. 12. ~ : 토지 매입비 예산 확보
○ 2027. 1. : 토지 매입 완료

※ 토지 매입 완료 후, 일자리경제과 수소도시 조성사업 기 확보 예산을 활용하여 수소충전소 구축(확장) 사업 본격 추진

5. 의결을 요하는 사항

○ 現 수소충전소 준공(2020. 12.) 이후 현재까지 연중무휴 운영·가동으로 인해 주요 설비의 부하 지속 및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최근 유지 보수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등 운영상, 정비상 불안정성 및 리스크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 지속적인 수소차 보급 확대로 인하여 충전 수요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기존 수소충전소 1개소의 단독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수소충전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수소충전소 구축(확장)이 시급하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 수소충전소 구축(확장)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토지 매입에 관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위치도, 현장사진, 관련 법규 등

❑ 위치도 및 사진 현황

(단위 : 천원, ㎡)

대상지	소재지	서산시 음암면 상홍리 916-12	지목	임야	면적(㎡)	2,335
	용도	수소충전소	기준가격		115,115	





❑ 관련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다음 연도 예산 의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